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수준 향상방안 연구

김선자

2005-R-36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 방안 연구

Improving Service Quality in Private Child Care Center

200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진

연구책임	김 선 자	• 도시사회부 부연구위원
연구원	김 찬 동	• 도시경영부 부연구위원
	양 주 연	• 도시사회부 위촉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 보육사업은 초기에는 선별주의적인 개념에 기초하여 저소득층 및 소외 계층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구빈적 성격이 강하였으나, 1970년대를 전후하여 보육에 대한 요구와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육 대상이 모든 영유아에게 확대되었음.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보육정책이 국가의 우선정책으로 추진되면서 취업모의 아동뿐 아니라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들의 보편적인 권리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임.
- 보육사업은 단순히 아동의 보육이라는 단선적 차원에서 다루어질 문제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보다 다차원적인 접근과 파생효과를 폭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여성들의 사회참여 증가와 가족가치관의 변화,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한 저출산 현상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임.
-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후, ‘보육시설 확충 3개년(1995~1997)’과 함께 보육사업이 크게 확대되었음. 그러나 보육시설 확충이 재정문제로 인해 정부지원 시설보다는 민간시설의 설립·운영에 크게 의존한 결과 이 기간동안 설립된 민간보육시설은 계획 3,000개소 대비 실적 17,128개소로 570.9%의 실적비율을 보였음.
- 2005년 6월 현재 전국보육시설 중 민간 보육시설(가정보육시설 포함)의 비율이 8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보육시설에서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은 전체 보육아동의 76.3%를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단기간 내의 보육사업의 확대

는 보육시설의 양적확대에만 치중,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지도감독의 부족 등으로 인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보장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특히 민간시설의 정원초과 행위, 저급한 시설환경과 질 낮은 서비스, 자질이 부족한 종사자 채용 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며, 양심적인 민간시설인 경우 오히려 재정악화와 무임봉사가 강요되는 구조적 문제점들 역시 보다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시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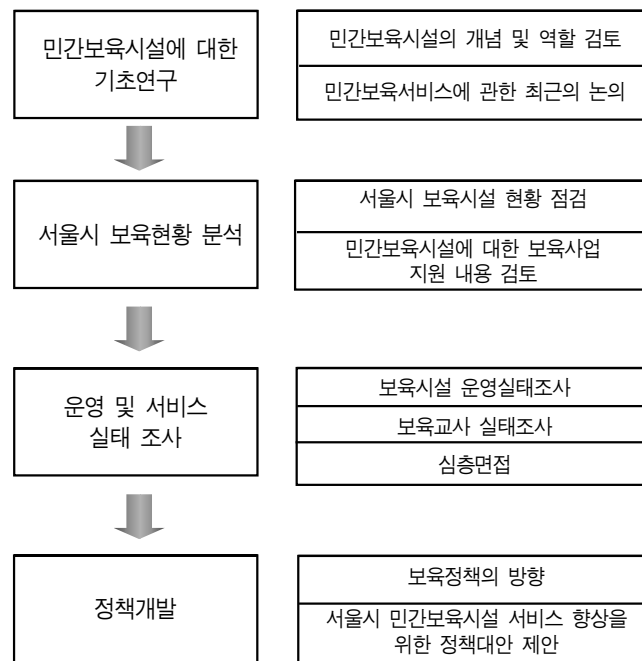
- 이처럼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제고가 주요 관심사로 부각됨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 향상,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영유아보육법이 2004년 1월에 전면 개정되기에 이르렀고, 2004년 6월부터는 보육정책 주관부서가 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며, 보육사업에 대한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음.
- 그러나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공보육 증대를 내용으로 하는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에 기반한 보육서비스의 질적향상은 중단기적인 지원과 개입을 병행한 점진적인 공공화가 진행될 때 보육시스템의 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또한 무엇보다 민간보육시설이 실제로 보육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운영실태와 문제점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근거한 정책개발이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됨.
- 서울시의 경우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역점을 둔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시행해오고 있으나 보다 효과적인 민간보육시설의 지원과 관리를 위해서는 서울시내 민간보육시설에 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이해가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내 민간보육시설의 운영 및 서비스 실태를 분석하고,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기초한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2. 연구범위 및 내용

1) 연구의 범위

영유아보육법상 민간보육시설은 민간개인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을 모두 포함하지만 시설의 실태와 정책적 접근방법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보육시설을 제외한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민간개인시설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였음.

2) 연구내용 및 구성체계



〈그림 1〉 연구내용 및 구성체계

II. 연구결과 및 정책건의

1. 서울시 민간보육시설 현황

- 2005년 6월 현재 서울시 민간개인보육시설은 2,364개소로 전체 보육시설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보육아동의 52%를 보육하고 있음.
- 시설수에 있어서는 서울시에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은 전체보육시설의 10.2%에 불과하며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 민간시설이 87.2%를 차지하고 있음.
-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의 정원충족률은 큰 차이를 보여서 국공립시설의 정원충족률은 약 96%이나 민간개인시설은 86%정도에 머무르고 있음(<표 1>참조).
- 시설 1개소 당 아동수는 국공립시설이 개인시설보다 두 배나 많아 민간시설 규모가 국공립시설에 비해 상당히 작음을 알 수 있음. 시설규모와 서비스 수준이 반드시 비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규모 시설의 경우 운영상에 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표1> 서울시 보육시설 현황

구 분		계	국·공립	법인	민간		부모협동	가정 (놀이방)	직장
					법인의외	개인			
시설수	개소	5,323	544	65	198	2,364	7	2,079	66
	%	100.0	10.22	1.22	3.72	44.41	0.13	39.06	1.24
아동정원	명	209,319	49,509	4,650	9,702	107,306	203	33,914	4,035
	%	100.0	23.65	2.22	4.64	51.26	0.10	16.20	1.93
아동현원	명	176,995	47,348	4,288	8,027	92,081	166	21,752	3,333
	%	100.0	26.76	2.39	4.54	52.04	0.09	12.29	1.88
정원충족률	%	84.6	95.7	92.2	82.7	85.8	81.8	64.1	82.6
종사자수	명	25,704	5,888	500	972	12,775	37	5,017	517
시설1개소당 아동수	명	35	79	84	56	43	22	11	50
교사1인당 아동수	명	7	8	8	7	8	6	5	7

자료: 여성가족부, 서울시 보육통계(2005년 6. 30 기준)

2. 서울시 민간보육시설의 운영 및 실태조사

1) 조사대상 및 방법

- 본 실태조사는 서울시 민간보육시설의 시설장 650명과 보육교사 8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시설장 222명, 보육교사 267명의 조사표가 최종 수거되어 분석에 사용되었음.
- 회송우편을 동봉한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가 각 조사대상자들에게 전달되었고, 응답자 자기보고형식으로 조사되었음.
- 조사기간은 2005년 7월 25일부터 8월 6일까지 1차 조사가 진행되었고, 2005년 8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2차 조사가 추가로 진행되었음.

2) 실태조사를 통해 본 서울시 민간보육시설의 문제점

- 보육환경의 문제점
 - 조사대상 민간보육시설의 44.7%가 보육시설로서 적합한 환경이라고 할 수 없는 상가건물에 설치되어 있음. 특히 조사된 서울시 민간보육시설의 상가건물비율은 전국조사의 결과(32%)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소규모시설(39인 이하)의 경우 상가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민간 개인보육시설의 과반수 이상이 임대시설임.
 - 민간 개인보육시설의 약 60%가 임대시설로 나타남. 임대시설의 경우 보육환경 선택에 있어 아동위주가 아닌 원아모집과 시설운영의 편리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어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큼.
 -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 시설설비 기준이 강화되었으나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시설설치, 보완조치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음.

○ 재정운영의 어려움

- 현재보육현장에서 민간보육시설과 국공립시설간에 기능이나 역할 상의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에 동일하게 지원되는 아동별 지원금을 제외하면 국공립시설의 경우 정부지원금(종사자인건비)과 부모로부터의 보육료로 보육서비스 생산비용을 충당하고 있으나, 민간시설의 보육비용은 대부분 부모부담분(정부지원금도 대부분 부모에 대한 보육지원금이라 할 수 있음)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임.
- 더욱이 설치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시설은 대출로 충당한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이자와 임대료 등의 추가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공립시설에 비해 재정운영이 어려움. 실제로 조사대상 민간시설의 40%가 채무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음.
- 보육시설 설립인가가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민간보육시설이 급증해 원아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보육료 경쟁 등이 야기되었으며 이는 민간보육시설의 부실운영과 결과적으로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음.

○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수준 높은 보육교사 확보의 어려움

- 조사대상인 서울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의 56%가 1년 과정인 보육교사 교육원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4년제 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교사는 10%에 머무름.
- 서울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의 한 달 평균보수는 100만 5천원이며,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에 이르는 등 시설별로 보수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희망 월보수 평균은 129만 4천원으로 국공립 보육교사의 보수수준(126만 4

천원)정도의 임금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평일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균 10.6시간임. 보수교육이나 승급교육의 기회는 있으나 낮 동안의 보육업무와 병행하기 힘들고 대체교사를 구하기 어려워 보수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민간보육시설 운영상의 애로점

- 민간보육시설의 시설장들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재정관련 문제’(52.3%)와 ‘원아모집’(45.9%), ‘종사자관련 문제’(22.8%)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지적함.
- 39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의 경우 ‘안전문제’와 ‘시설설비 문제’등에서 40인 이상 규모의 시설에 비해 운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시설설비와 환경에 있어서 소규모 시설이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

○ 민간보육시설의 재정적 지원요구

- 민간보육시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재정적 지원(복수응답)은 ‘종사자 인건비 지원’(72.5%)과 ‘보육환경비 개선비 지원’(42.3%) 인 것으로 나타남.

○ 민간보육시설의 행정적 지원요구

- 민간보육시설의 행정적 지원요구 사항(복수응답)에 관해 ‘보육정보 및 자료제공’(68.6%)에 대한 요구와 ‘보수교육 기회 확대’(53.6%)에 대한 지원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적절한 보육정보와 자료를 얻을 기회가 부족하고 보수교육에 대한 요구는 높는데 반해 실제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임.

3. 심층인터뷰와 간담회를 통한 민간보육시설의 문제점과 대안

- 표준화된 설문지를 통한 조사의 한계 보완 및 보육현장의 목소리 반영을 위한 실무자 10인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와 간담회를 실시함.

1) 재정문제 관련 의견

- 경쟁적 원아모집으로 인한 보육서비스 질 저하
 - 보육시설 설립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많은 시설의 난립하게 됨으로써 원아모집을 위한 경쟁적인 보육료 단가 인하, 영아반 교사의 인건비 확보를 위해 일부 영아를 무료로 받는 식 등의 무질서한 운영사례가 빈번히 발생, 보육의 질 저하의 원인이 됨.
- 차등보육료 지원문제
 -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 시설의 보육료 이원화 체계를 아동별 지원방식으로 전환하여 보육료 일원화가 달성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보육료 차액은 정부에서 부담해야 하며, 예산 미확보로 어려울 경우는 종전처럼 부모가 부담하도록 해야 함.
- 표준보육단가 내 시설설치비용의 반영
 - 보육료 지원의 근거가 되는 표준보육단가에 시설설치비용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함, 현재 토지구입 및 건축물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 전무, 최소한 건물개보수비 및 감가상각비가 정부예산으로 지원되어야 민간보육시설의 과도한 임대료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 가능.

2) 인력관리 관련 의견

- 교사지원의 확대 필요

-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교사교육의 기회 제공
- 서울시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의 긍정적 효과 감안, 지속적 확대 요.
- 초과근무시간에 필요한 대체인력 지원 및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 지원.
- 자긍심 고취를 위한 포상제도 마련 예) 우수교사표창, 연수기회 확대 등

3) 운영 및 인가기준의 현실화에 관한 의견

- 출산율이 저하되고, 영아전담시설이 있으며, 시설별로 운영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영아반과 유아반의 비율을 맞추어 아동정원의 인가기준을 결정하는 것을 불합리, 지역과 시설의 특성이 반영된 현실적 운영 및 인가기준이 필요.

4)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련 의견

- 보육시설과 지역사회의 연계 및 협력은 시설장의 개별적인 능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음.
- 협력프로그램의 종류와 수준도 제한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소방서,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또한 연계나 의존의 방향이 대개 보육시설에서 지역사회에 도움을 제공하는 형태(불우이웃돕기, 바자회, 경로당 방문 등)로 이루어져 보육시설의 아동들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로 활동영역을 넓히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줌.

4. 서울시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정책제안

○ 민간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지원 방안 모색

- 현재 민간보육시설의 재정운영 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시설보수비용과 차등보육료 차액에 대한 부담이 지적되고 있음. 차등보육료 차액부담에 대한 대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시

설보수비용에 대한 지원은 서울시의 현재 정책을 확대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음.

- 즉, 평가인증제 참여를 조건으로 한 시설개선비의 일부지원을 통해 인증제 참여 유도 및 시설지원의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음.
-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은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일정기준을 갖춘 보육시설에 제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다른 보육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공립, 민간 구분없이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시설개선비, 교사인건비 지원 등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확대는 민간시설이 정부지원시설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함.
-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제도적 관리, 감독이 반드시 따라야 하며 체계적이고 투명한 운영관리를 통해 민간시설에 대한 신뢰감 형성이 필수적임.

○ 민간보육시설의 표준비용 현실화를 위한 추가지원방안 모색

- 현재의 보육비용은 1999년 표준보육단가체계에 기초하고 있어 실제 보육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발표된 표준보육단가에서는 시설의 유형과 상관없이 일정수준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 모두에게 적용되는 표준보육비용을 산출하였음. 그러나 민간시설의 설치비용과 임대료가 포함되지 않은 표준보육비용은 실제로 민간시설에서의 보육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민간보육시설이 투자한 시설설치비용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보존해줌으로써 민간시설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민간보육시설의 시설투자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 혹은 임대료를 ‘시설설치 및 유지비’로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

음. 일본의 경우 인가시설인 경우 국공립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보육료지원과 더불어 민간시설의 시설설치 투자분에 대해 4.0%에서 12%의 가산분이 지원되고 있음.

○ 평가인증제 참여 유도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관리

-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최근 도입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는 보육시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임. 특히 민간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행정력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서비스 수준을 점검, 관리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
- 평가인증제가 도입된 지 얼마 안돼 민간시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므로 이들이 인증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 인증신청 시설에 대한 소요비용 보조, 시설 개보수비의 우선적인 지원 등 재정적인 지원을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음.
- 시설을 대상으로 한 홍보뿐 아니라 서비스의 이용자인 보육아동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홍보가 필요함. 평가인증제의 결과가 실제로 부모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시설의 입장에서 인증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임.

○ 보수교육 내실화 및 대체교사 지원체계 확립

- 보육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수교육 실시는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대체교사 지원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실제 보육현장에서는 재정문제와는 별개로 적절한 대체교사를 확보하지 못해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재 보육정보센터에서 대체교사 인력 풀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일고용의 형태로는 책임성이나 전문성을 가진 적

절한 보육교사를 확보하기 어려움.

- 대체교사 수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우선적으로 보육정보센터의 인력 풀을 활성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대체교사의 경력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나아가 보육정보센터에서 일정수의 보육교사를 고용하여 필요한 기관에 파견하거나 보육교사 인턴제를 도입하는 방안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보수교육이 실제로 보육교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보육교사들의 교육참여 가능 시간이 매우 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교육에의 접근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지역보육정보센터와 지역사회 전문기관, 보육관련 협의회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보육정보센터 확충 및 기능 확대

- 자치구 단위의 보육정보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중의 하나인 보육시설지원기능을 확대하여 전문 조력기관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함. 나아가 지역사회내의 보육요구와 보육자원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보육네트워크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보육정보센터의 보육시설 지원기능과 지역사회 네트워크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보육자원 공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규모 민간보육시설의 제한적인 보육자원을 보완함으로써 민간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도록 함.
- 구체적으로 물품이나 보육교구의 공동구매, 특별활동 교사 순회 프로그램, 장애아동 특수교사 순회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의 보육자원 공동 확보 및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또한 보육교재, 교구를 대여함으로써 민간보육시설의 보육자원을 확대할 수 있음.

-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지역사회 보육네트워크 구축 및 보육자원 활용
 - 주민자치센터 내에 지역사회보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중심으로 지역보육공동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을 직접적인 보육시설로 활용하거나 교사교육, 공동수업 공간 등 지역사회 보육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지역의 보육요구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육위원회를 보육예산 결정, 평가인증 과정 등에 참여시킴으로써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 지역사회 내의 욕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지역사회 보육 네트워크는 지역사회 내의 활용 가능한 보육자원을 찾아내고 활용방안을 도출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민간보육시설 내 부족한 보육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노인인력을 활용하거나 지역사회내의 종교시설, 단체들이 가진 인적, 물적 자원을 적절히 활용할 수도 있음.

목 차

제 I 장 연구개요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7
1. 연구내용 및 구성체계	7
2. 연구방법	8
3. 연구의 범위	9
제 II 장 민간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13
제1절 우리나라 민간보육 현황	13
1. 민간보육시설의 변천	13
2. 민간보육 관련 법·제도	14
3. 민간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 규모	16
제2절 민간보육시설에 관한 주요 논의들	21
1. 보육료	22
2.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36
3. 민간보육시설의 법인화	37
제3절 보육의 질 결정요인	39
제 III 장 서울시 보육현황	45
제1절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45
1. 보육시설 현황	45
제2절 서울시 보육사업 현황 - 민간보육시설 관련사업 중심으로	58
1. 시비보조 보육사업	58

2. 자치구별 보육사업	61
3. 보육예산	61
4. 인력관리	64
5. 지도·감독 및 관리	65
6.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66
제IV장 서울시 민간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실태	71
제1절 조사개요	71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71
2. 주요 조사내용	71
3. 조사의 기본설계	73
4. 조사 자료처리	74
5. 조사대상자의 일반특성	74
제2절 실태조사 결과	78
1. 민간보육시설의 설립·운영 특성	78
2. 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	80
3. 보육아동	86
4. 시설운영	89
5. 재정·운영	113
6. 보육정책	126
7. 보육교사	131
제3절 민간보육시설의 문제점과 대안 : 심층인터뷰와 간담회 결과	158
1. 운영상 어려운 점	158
2. 재정 / 보육료 등	161
3. 평가인증제도	166
4. 보육프로그램 - 특별활동	168
5. 보수교육	169

6. 보육시설운영위원회	170
7. 부모/지역사회/협회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	171
8. 보육정보센터	175
제 V 장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 방안	181
제1절 기본방향과 정책목표	181
제2절 핵심정책과제	183
1. 민간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를 통한 보육의 공공성 제고	183
2. 민간시설의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및 근무조건 향상	183
3. 보육교사 보수체계 정비	184
4. 평가인증제 참여 확대	186
제3절 서울시 중점추진과제	187
1. 보육예산 확대와 관리를 통한 공공성 강화	187
2. 보육의 질 향상	190
3. 보육행정 및 전달체계 개선	193
참 고 문 헌	199
부 록	205

표 목 차

<표 2-1>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수 및 아동 정원	17
<표 2-2> 지역 및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수 및 비율	17
<표 2-3> 시설별 정원 정원충족률	18
<표 2-4> 아동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아동 수	19
<표 2-5> 시설유형별 특수보육 실시여부	20
<표 2-6> 1999년 정부의 표준보육단가 구성 항목	22
<표 2-7> 1999년 민간시설 표준보육단가 항목별 구성비율	23
<표 2-8> 2005년 0~4세 법정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 기준	25
<표 2-9> 보육시설의 표준비용 산출 구성항목	26
<표 2-10> 아동1인당 표준보육비	27
<표 2-11> 보육시설 운영비 국고보조금 기준 요약	31
<표 2-12> 영유아보육료 지원	32
<표 2-13> 2005년 보육예산안	35
<표 2-14> 영유아보육의 질적 구성요인에 관한 문헌연구 분석	39
<표 3-1> 서울시 보육시설 일반현황	45
<표 3-2> 구별 시설유형별 보육시설수 현황	46
<표 3-3> 서울시 보육아동 규모별 시설현황	47
<표 3-4> 구별 보육수요	48
<표 3-5> 보육시설 이용률 (0~5세)	49
<표 3-6> 아동연령별 및 시설유형별 아동정원 현황	49
<표 3-7> 구별 및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아동정원 현황	50
<표 3-8> 아동연령별 시설유형별 아동현원 현황	51
<표 3-9> 구별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아동현원 현황	52
<표 3-10> 보육시설 정원충족률	53
<표 3-11> 구별 보육서비스 공급률, 이용률 및 정원충족률	54
<표 3-12> 구별 시설유형별 보육종사자 현황	56
<표 3-13> 시설 1개소당 · 직원1인당 아동수	57
<표 3-14> 2005 시비보조 보육사업	60

<표 3-15> 서울시 보육사업예산	62
<표 3-16> 보수교육과정	64
<표 3-17> 평가대상	65
<표 3-18> 평가항목	66
<표 3-19>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2005 추진사업	68
<표 4-1> 조사표 구성내용	72
<표 4-2> 조사대상(표본수) 및 조사기간	74
<표 4-3> 시설규모별 조사대상 시설장의 일반적 특성	76
<표 4-4> 조사대상 보육교사의 일반적 특성	77
<표 4-5> 시설규모별 설립년도	78
<표 4-6> 시설규모별 보육대상유형	79
<표 4-7> 시설규모	80
<표 4-8> 시설규모별 보육시설 주변의 생활수준	81
<표 4-9> 시설규모별 건물형태	82
<표 4-10> 시설규모별 임대여부	84
<표 4-11> 시설규모별 놀이터 유무(복수응답)	85
<표 4-12> 시설규모별 2층 이상 보육시설 비상대피시설(복수응답)	86
<표 4-13> 시설규모별 정원과 현원	87
<표 4-14>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수	88
<표 4-15> 시설장 전공특성	90
<표 4-16> 시설규모별 시설장 소지자격 특성	91
<표 4-17> 시설규모별 시설장 자격취득 경로	92
<표 4-18> 시설규모별 시설장과 대표자의 일치여부	93
<표 4-19> 시설규모별 시설장 근무경력	93
<표 4-20> 시설규모별 종사자수 : 보육교사	94
<표 4-21> 시설규모별 기타 종사자 현황(복수응답)	95
<표 4-22> 설립유형별 보육교사 초과근무수당 지급여부	96
<표 4-23> 시설규모별(설립유형별) 운영시 고려대상	97
<표 4-24> 시설규모별(설립유형별) 운영 시 고려사항	98
<표 4-25> 시설규모별 시설운영시 어려운 점(복수응답)	99
<표 4-26> 시설규모별 시설 개선점(복수응답)	100
<표 4-27> 시설규모별 재정적 지원요구(복수응답)	101
<표 4-28> 시설규모별 행정적 지원요구(복수응답)	102

<표 4-29> 시설규모별 지역사회와의 관계	103
<표 4-30> 시설규모별 연계가 많은 지역사회기관	103
<표 4-31> 시설규모별 보육시설 간 협력관계	104
<표 4-32> 시설규모별 보육정보센터 이용빈도	105
<표 4-33> 시설규모별 보육정보센터 도움정도	106
<표 4-34> 시설규모별 보육정보센터에서 지원해주기를 희망하는 업무	107
<표 4-35> 시설규모별 보험가입유형- 교사	110
<표 4-36> 시설규모별 영양·건강관리 측면(잘 이루어지고 있다)	111
<표 4-37> 시설규모별 영유아 건강검진 여부	112
<표 4-38> 시설규모별(설립유형별) 보육료 수준	113
<표 4-39> 시설규모별 보육료를 적게 받은 이유	114
<표 4-40> 시설규모별 이용시간에 따른 보육료 수준	115
<표 4-41> 시설규모별 종일제/ 반일제 월평균 보육료	116
<표 4-42> 시설규모별 종일제와 반일제 월평균 보육료 차이	117
<표 4-43> 시설규모별 보육료 미납 아동 유무	118
<표 4-44> 보육료 평균 미납아동수	119
<표 4-45> 시설규모별 수입 내역	120
<표 4-46> 시설규모별 지출 내역	121
<표 4-47> 시설규모별 초기투자비용(부지구입비용+시설설치비용)	122
<표 4-48> 시설규모별 충부채 유무	123
<표 4-49> 시설규모별 부채에 대한 월이자	124
<표 4-50> 시설규모별 임대료	125
<표 4-51> 시설규모별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여부	126
<표 4-52> 시설규모별 향후 운영위원회 설치 여부	127
<표 4-53> 시설규모별 평가인증제 신청 여부	128
<표 4-54> 시설규모별(설립유형별) 평가인증제 신청 시기	128
<표 4-55> 시설규모별(설립유형별) 보육료 자율화에 대한 의견	130
<표 4-56> 보육교사의 전공특성	131
<표 4-57> 보육교사의 소지자격 특성	132
<표 4-58> 보육교사의 자격취득 경로	133
<표 4-59> 보육교사의 재직기간	134
<표 4-60> 보육교사의 현 보육시설 근무연수	134
<표 4-61> 교사 대 아동비율에 대한 의견	135

<표 4-62> 정교사 외 보조교사의 유무, 수	136
<표 4-63>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136
<표 4-64> 보육교사 퇴근시간이 늦는 이유(복수응답)	137
<표 4-65> 보육교사 한달평균보수, 희망 월보수	138
<표 4-66> 보육교사 처우관련제도	139
<표 4-67> 출산휴가 시 급여 및 비상근 교사활용	140
<표 4-68> 복무규정의 유무/ 부당한 서면계약이나 구두계약의 유무	140
<표 4-69> 부당한 서면계약이나 구두계약의 종류	141
<표 4-70> 보육교사의 교사연수 기회	142
<표 4-71> 교사연수 도움정도	144
<표 4-72> 교사연수 참가 횟수	145
<표 4-73> 교사연수에 참가하기 어려운 경우	146
<표 4-74> 교사연수 시 대체교사 채용여부	146
<표 4-75> 희망하는 보수교육(복수응답)	147
<표 4-76>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150
<표 4-77> 교사만족도	152
<표 4-78> 보육교사로서의 직업적 보람의 만족도	153
<표 4-79>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어려움(복수응답)	153
<표 4-80>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복지향상 방안 (복수응답)	154
<표 4-81> 이직을 고려한 경험	155
<표 4-82> 이직희망이유	156
<표 4-83> 보육교사를 그만두고 싶지 않은 이유	157
<표 5-1>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초봉비교(2005년)	185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내용 및 구성체계	7
<그림 2-1> 보육서비스의 질 결정요인	42

제 I 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영유아들의 복지증진에 기초를 두는 보육사업은 초기에는 선별주의적인 개념에 기초하여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구빈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1970년대를 전후하여 보육에 대한 요구와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육의 대상이 모든 영유아에게로 확대되었다. 즉 취업모의 아동뿐 아니라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들의 잘 자랄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세계 각국은 보육정책을 국가의 우선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보편적인 아동 권리에 입각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선진국형 문제 중의 하나인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서 예외가 아니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핵가족화, 이혼율 급증 등으로 가족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남성 혼자 가계를 책임지는 대신 남성과 여성 모두 맞벌이 부부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보장되지 않는 경우 출산을 회피하는 가구가 늘어나 2003년 합계출산율이 1.19명으로 떨어지는 등 이제 가정의 자녀양육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통계청, 2003년 인구동태조사).

우리나라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1990년 이후 보육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정부의 중점적인 보육정책은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1995~1997)’으로 이 시기에 보육시설의 수는 8,928개소가 증가하였고 보육사업도 크게 확대되었다. 2004년 12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약 27,000개소의 보육시설에서 93만여 명의 아동이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단기간 내의 엄청난 보육사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의 양적확대에 치중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측면은 소홀히 하였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특히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에 따른 보육시설의 확충이 재정문제로 인해 정부지원시설보다는 민간시설에 크게 의존함에 따라 2004년 6월 현재 보육시설 중 민간보육시설의 비율이 8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보육시설에서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의 전체 서비스를 받는 아동 중 70%를 차지한다. 이처럼 민간보육시장이 보육사업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지도감독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었다. 그 결과로 민간보육시설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보육현장에서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야기되기 시작하였다. 이윤을 남기려는 일부 민간시설의 정원초과 행위, 이용 아동에 대한 저급한 환경 및 서비스, 자질 낮은 종사자의 채용 등의 문제가 나타났으며, 양심적인 민간시설에게는 재정악화와 무임봉사를 강요하는 형태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의 제고가 주요 관심사로 부각됨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왔으며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 향상, 그리고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새로운 영유아보육법이 2004년 1월에 전면 개정되었다. 여기에 더해 2004년 6월부터 보육정책 주관부서가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보육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은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주요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공공성의 확대는 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와 보육재정의 확대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은 교사에 대한 관리, 보육환경에 대한 기준강화, 평가 인증제와 시설 인가제 등 질 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이러한 보육정책의 변화는 현재 보육현장의 주류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의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 공보육 증대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의 타당성 여부, 지원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동시에 민간보육시설장들은 시설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부모의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다는 것이 최근의 보육환경의 실정이다. 특히 최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된 부적절한 급식과 안전사고 등의 문제들은 민간보육시설의 열악한 서비스 환경과 부실한 운영의 문제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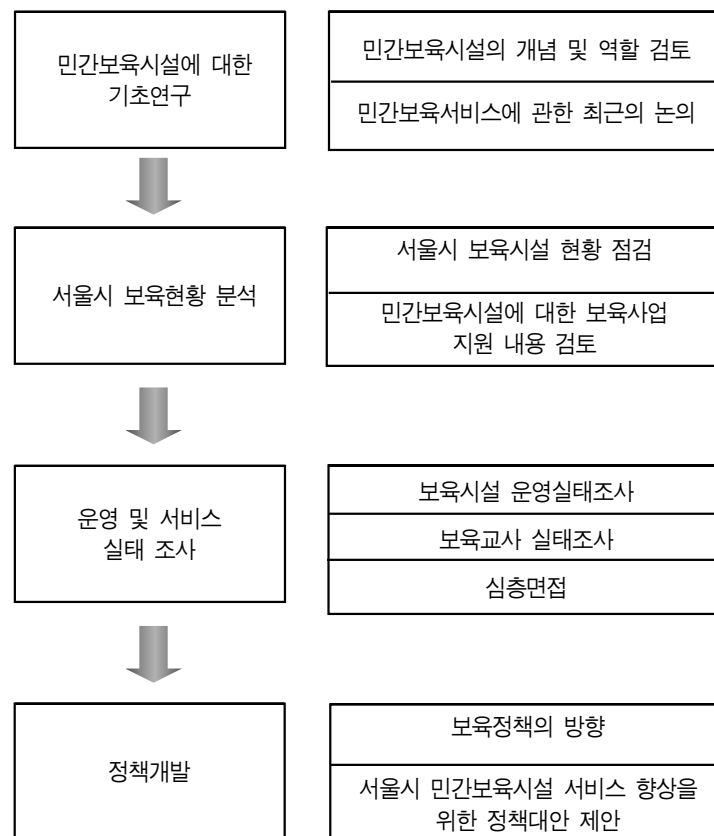
그동안 공보육을 주장해왔던 연구자들은 보육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해왔으나 이제까지 우리나라 보육의 주류역할을 담당해 온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어떠한 지원과 개입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과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 등 최근 보육현장에서의 큰 변화들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이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갑작스러운 보육시스템의 전환은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며 민간보육시설의 점진적인 공공화 과정에서 중, 단기적인 지원과 개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에서도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역점을 둔 보육정책의 일환으로 2003년에는 민간보육시설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과 보육교사 사기고양을 위한 보육교사 처우수당 인상 및 중식비 지원, 우수교사 표창, 보육서비스 평가제 등을 포함한 민간보육시설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2006년까지 매년 50억의 자금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할 것을 발표하는 등 민간보육시설 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계속하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관리는 민간보육시설이 실제로 보육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운영실태와 문제점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서울시의 민간보육시설의 운영 및 서비스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민간보육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지원과 개입이 바람직한가를 살펴보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및 구성체계

주요 연구내용은 크게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의 구성체계를 종합 정리하면 아래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내용 및 구성체계

첫 번째 부분은 민간보육시설의 법적, 개념적 정의와 현 보육서비스전달체계 내에서 민간보육시설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을 검토하고 민간보육시설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였다. 이는 조사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으며, 향후 정책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두 번째 연구내용은 서울시 보육현황과 보육정책을 민간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서울시와 여성부의 통계자료를 기초로 서울시 민간보육시설의 규모와 보육아동, 종사자수 등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서울시 보육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민간보육시설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세 번째 부분은 서울시 민간보육시설의 운영 및 실태조사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사는 크게 2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시설장을 대상으로 민간보육시설의 운영 및 보육환경, 보육서비스 실태 및 문제점을 조사하고, 둘째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보육교사의 특성과 근무환경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마지막 부분은 정책제언으로 문헌연구를 비롯한 기초자료와 조사결과를 기초로 서울시 민간보육시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 보육정책의 정책방향과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및 기초자료 분석

민간보육시설의 개념과 역할, 현황 등을 정리함으로써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재 보육관련 논의 중 민간보육시설에 관련한 주요 이슈들을 검토하기

위해 여성부, 서울시,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의 정책자료 및 시설현황 기초자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성개발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연구자료 및 관련 학계의 연구논문 등을 활용하였다.

2) 민간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서비스 실태 조사

민간보육시설의 운영 및 보육서비스 실태를 파악하고 보육서비스 향상방안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민간보육시설의 시설장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설문조사에서 파악되지 못하는 질적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보육시설의 시설장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과 간담회가 실시되었다. 심층면접과 간담회에서는 개별 민간보육시설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문제점들의 배경과 원인을 파악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설장을 비롯한 보육실무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3) 전문가 및 실무자 자문회의

학계, 보육관련단체, 관련 공무원 등을 포함한 전문가, 실무자 자문회의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민간보육시설 현장조사 및 시설장, 관련협회 실무자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실무자 자문이 이루어졌다.

3. 연구의 범위

현재 보육시설의 유형분류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시설의 유형은 6가지로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정부지원 여부에 근거하였을 때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시설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법인 보육시설은 정부지원시설로 분류되고 영유아 보육료지원

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설별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 민간 개인 보육시설 및 가정 보육시설은 정부비지원시설로 분류된다. 제한적인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간개인 보육시설과 함께 가정보육시설이 포함될 수 있으나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정책과 지원은 민간개인보육시설과 다르게 접근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실무자들의 지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부비지원시설 중 민간개인보육시설만을 포함하였다. 즉, 본 연구의 범위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민간개인보육시설을 연구의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나 이를 위해 직접적으로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의 서비스 실태를 비교하여 서비스 수준의 차이를 밝히는 것 보다는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보육의 질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한 논의로 연구의 내용적 범위가 구성되었다.

제Ⅱ 장 민간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제1절 우리나라 민간보육 현황

제2절 민간보육시설에 관한 주요 논의들

제3절 보육의 질 결정요인

제1절 우리나라 민간보육 현황

1. 민간보육시설의 변천

우리나라에서 보육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61년 아동복지법이 제정·공포되면서부터이다. 1960년대 후반에는 도시화,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보육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시설이 부족하게 되자, 1968년 정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근거한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령』을 공포하여 민간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를 계기로 종전에 법인체만이 설치할 수 있었던 보육시설의 운영주체를 대폭 완화하여 많은 시설들을 인가하였다. 그러나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1977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모든 시설의 법인화를 장려하면서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령』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로 탁아시설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해지면서 1980년대에는 저소득층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인들에 의해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지역사회 탁아소가 자생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지역사회 탁아소는 대부분이 민간 보육시설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1981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하여 지역사회운동의 차원에서 설립·확산되어져 왔다(한국여성개발원, 1990).

1989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시행령에서는 시설설치의 주체가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급증하는 보육수요는 충족할 수 없게 되자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개인, 기업, 단체까지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보육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설치요건을 완화하였다. 그리고 보육시설의 종류를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로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민간보육시설과 놀이방도 법정시설로 포함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시행된 '보육시설 확충에 관한 3개년 계획'에 의해 민간보육시설은 급증하였다. 이 기간동안 민간보육시설은 계획 3,000개소 대비 실적 17,128개소로 570.9%의 실적 비율을 보였다(유희정, 1998).

2. 민간보육 관련 법·제도

1) 민간보육 개념 및 설치

민간보육시설이란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또는 부모협동보육시설이 아닌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민간보육시설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하여 설치할 수 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당시 민간보육시설의 설치에 인가제였으나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 차원에서 1998년 7월부터 신고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보육시설 설치 신고제로 인해 특히 민간보육시설이 과잉 공급되고 보육환경이 저하되고, 또한 보육시설은 아동 이용시설로 규제완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수용하여 2004년 개정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다시 인가제로 변경되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7조 시설기준에 따르면, 보육시설을 설치할 때는 보육
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
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해야 하며, 민간보육시설은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의 특성에 맞도록 하되,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은 영유아 1인당 3.63제곱미터 이
상으로 하고,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놀이터(영유아 52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 한함), 급배수시설, 비상재해 대비시설, 기타 사무실·양호실·수유실 등 영
유아보육에 필요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민간보육시설 규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7조 시설기준에 따르면 민간보육시설의 규모는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이다.

3) 민간보육시설 인력

보육시설 종사자는 시설장을 두도록 하되, 영유아 40인 미만의 시설은 보육교사
가 시설장을 겸할 수 있다. 보육교사는 2세 미만의 영유아 5인당 1인, 2세의 영유아
7인당 1인, 3세 이상 영유아 20인당 1인이고, 영유아 40인당 보육교사 1인은 초·중
등교사법에 의한 유치원교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
로 하고 있다.

보수교육은 정기적 보수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되며, 시설장은 시설장 업무를
맡은 첫해와 매 3년마다, 기존 보육교사는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경과한 자로서
매 3년마다 받도록 하고 있다. 교육시간은 정기 보수교육은 40시간이고, 승급교육은
80시간이다.

4)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및 보육료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199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주로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인건비, 건축비 지원만 있다가, 저소득층 보육료를 지원하면서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이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은 교재·교구비 지원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2000년을 전후로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2005년 현재 민간시설에 대해 영아반 운영비 지원, 교재·교구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장애아전담, 영아전담, 시간연장보육으로 지정된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에서 표준보육단가를 제시한 마지막 년도인 1999도의 3세아 기준의 민간보육시설단가는 148,000원으로 정부지원시설 단가 109,000원의 1.36배였다. 현재는 각 시도에서 보육료 상한선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5년 서울시의 민간개인시설의 보육료 상한선은 2세 미만은 35만원, 2세는 28만8천원, 3세 이상은 19만8천원으로, 국고보조시설에 비해 약 1.3배 높게 책정되어 있다.

3. 민간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 규모

1) 보육시설 현황

2005년 6월말 현재 전국에 설치·운영중인 보육시설은 모두 28,040개이다. 시설 유형별로는 민간개인시설이 45.30%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고 다음으로 가정보육시설이 39.86%이다. 보육시설 아동정원은 총 1,194,720명이며, 민간개인시설은 55.15%를 차지한다<표 2-1>.

<표 2-1>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수 및 아동 정원

단위: 개소, (%)

구분	설립주체별							
	계	국공립	법인	민간시설		부모 협동	가정 (놀이방)	직장
				법인외	개인			
시설수	28,040 (100.0)	1,352 (4.82)	1,559 (5.56)	968 (3.45)	12,701 (45.30)	31 (0.11)	11,178 (39.86)	251 (0.90)
아동정원	1,194,720 (100.0)	113,322 (9.49)	153,358 (12.84)	63,382 (5.31)	658,843 (55.15)	936 (0.08)	189,142 (15.83)	15,737 (1.32)

자료: 여성가족부, 보육통계 (2005년 6. 30 기준)

보육시설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대부분의 시설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설치되어 있었다. 민간개인시설은 42.80%가 대도시, 40.71%가 중·소도시에 설치되어 있다<표 2-2>.

<표 2-2> 지역 및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수 및 비율

단위: 개소, (%)

구분	설립주체별							
	계	국공립	법인	민간시설		부모 협동	가정 (놀이방)	직장
				법인외	개인			
전 체	28,040 (100.0)	1,352 (100.0)	1,559 (100.0)	968 (100.0)	12,701 (100.0)	31 (100.0)	11,178 (100.0)	251 (100.0)
대도시	11,746 (41.89)	747 (55.25)	464 (29.76)	384 (39.67)	5,436 (42.80)	14 (45.16)	4,574 (40.92)	127 (50.60)
중·소도시	11,628 (41.47)	365 (27.0)	500 (32.07)	241 (24.90)	5,170 (40.71)	14 (45.16)	5,251 (46.98)	87 (34.66)
농어촌	4,666 (16.64)	240 (17.75)	595 (38.17)	343 (35.43)	2,095 (16.49)	3 (9.68)	1,353 (12.10)	37 (14.74)

자료: 여성가족부, 보육통계 (2005년 6. 30 기준)

2) 보육아동 규모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수는 총 972,391명이었으며 보육시설의 정원 충족률은 81.4%로 이용아동이 정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보육시설은 정원충족률이 93.9%로 상당히 높은 반면, 민간개인시설은 82.1%로 평균 수준이었다<표 2-3>.

<표 2-3> 시설별 정원 정원충족률

단위: 명, %

구분		설립주체별							
		계	국공립	법인	민간시설		부모 협동	가정 (놀이방)	직장
					법인외	개인			
아 동 수	정원 (%)	1,194,720 (100)	113,322 (9.5)	153,358 (12.8)	63,382 (5.3)	658,843 (55.1)	936 (0.1)	189,142 (15.8)	15,737 (1.3)
	현원 (%)	972,391 (100)	106,443 (10.9)	130,909 (13.5)	54,504 (5.6)	540,588 (55.6)	690 (0.1)	126,740 (13.0)	12,517 (1.3)
	정원충족률	81.4	93.9	85.4	86.0	82.1	73.7	67.0	79.5

자료: 여성가족부, 보육통계 (2005년 6. 30 기준)

3) 보육아동 특성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연령을 살펴보면 만3세아가 23.7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만4세아(22.43%)가 많았다. 민간개인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만3세아 25.11%, 만4세아가 23.41%, 만5세아 21.42%로 만3~5세아가 약 70%정도를 나타냈다<표 2-4>.

<표 2-4> 아동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아동 수

단위: 명, %

구분	설립주체별							
	계	국공립	법인	민간시설		부모 협동	가정 (놀이방)	직장
				법인의외	개인			
계	972,391 (100.0)	106,443 (100.0)	130,909 (100.0)	54,504 (100.0)	540,588 (100.0)	690 (100.0)	126,740 (100.0)	12,517 (100.0)
0세	25,225 (2.59)	1,500 (1.41)	1,620 (1.24)	745 (1.37)	9,871 (1.83)	18 (2.61)	11,287 (8.91)	184 (1.47)
만1세	79,885 (8.22)	7,436 (6.99)	7,088 (5.41)	3,313 (6.08)	33,533 (6.20)	44 (6.38)	27,431 (21.64)	1,040 (8.31)
만2세	176,140 (18.11)	17,057 (16.02)	19,083 (14.58)	8,401 (15.41)	88,135 (16.30)	126 (18.26)	41,012 (32.36)	2,326 (18.58)
만3세	230,737 (23.73)	25,788 (24.23)	31,766 (24.27)	12,648 (23.21)	135,767 (25.11)	194 (28.12)	21,102 (16.65)	3,472 (27.74)
만4세	218,063 (22.43)	26,875 (25.25)	34,630 (26.45)	13,338 (24.47)	126,531 (23.41)	162 (23.48)	13,410 (10.58)	3,117 (24.90)
만5세	194,549 (20.01)	24,240 (22.77)	31,351 (23.95)	11,834 (21.71)	115,815 (21.42)	121 (17.54)	9,104 (7.18)	2,084 (16.65)
만6세 이상	47,792 (4.91)	3,547 (3.33)	5,371 (4.10)	4,225 (7.75)	30,936 (5.72)	25 (3.62)	3,394 (2.68)	294 (2.35)

자료: 여성가족부, 보육통계 (2005년 6. 30 기준)

4) 특수보육 실시 현황

시설유형별 특수보육 실시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시설의 15.81%만 특수보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전체 시설 중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의 비율은 국공립시설의 경우 36.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절대적인 시설수에 있어서는 민간개인시설이 2,144개소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전체 민간개인시설 중 특수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비율은 16.88%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방과후 보육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표 2-5>.

<표 2-5> 시설유형별 특수보육 실시여부

단위: 개소, %

구분	설립주체별							
	계	국공립	법인	민간시설		부모 협동	가정 (놀이방)	직장
				법인의외	개인			
전체	4434 (15.81)	495 (36.61)	647 (41.50)	349 (36.05)	2144 (16.88)	-	794 (7.10)	5 (1.99)
영아전담	961 (3.42)	52 (3.84)	194 (12.44)	49 (5.06)	321 (2.52)	-	345 (3.08)	-
장애아전담	123 (0.43)	15 (1.10)	66 (4.23)	8 (0.82)	33 (0.25)	-	1 (0.0)	-
장애아통합	582 (2.07)	138 (10.20)	65 (4.06)	29 (2.99)	297 (2.33)	-	52 (0.46)	1 (0.39)
방과후전담	266 (0.94)	11 (0.81)	17 (1.09)	147 (15.18)	67 (0.52)	-	24 (0.21)	-
방과후통합	1,213 (4.32)	98 (7.24)	129 (8.27)	67 (6.92)	850 (6.69)	-	66 (0.59)	3 (1.19)
시간연장형	1,176 (4.19)	164 (12.13)	147 (9.42)	45 (4.64)	544 (4.28)	-	275 (2.46)	1 (0.39)
휴일	113 (0.40)	17 (1.25)	29 (1.81)	4 (0.41)	32 (0.25)	-	31 (0.27)	-

자료: 여성가족부, 보육통계 (2005년 6. 30 기준)

제2절 민간보육시설에 관한 주요 논의들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가 급증하고 다양한 보육서비스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제고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보육의 공공화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보육시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0년부터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보육서비스 다양화와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재정을 확충했으며(02~04), 2004년 1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최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보육서비스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들이 활발히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안들은 민간보육시설의 재정확충과 지도감독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민간보육시설과 관련된 주요 이슈 중 하나는 민간보육시설의 열악한 재정이 보육교사의 질과 보육환경의 질을 낮추며 결과적으로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에 맞는 적정보육료 산정이나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재정을 확충하는 것을 시급한 과제로 본다.

또 다른 주요 이슈는 그동안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지도감독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아동의 적절히 보육받을 권리를 고려한다면, 지역이나 시설에 상관없이 아동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평가인증제의 실시가 제기되어 왔으며 2005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될 방침이다.

1. 보육료

1) 적정보육료의 산정

표준보육단가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추산한 금액으로, 보육시설들이 자율적으로 보육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자율을 제공하기 위한 일종의 기준이다(이상현, 1998).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육단가의 산정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초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 처음으로 표준보육단가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정부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을 실시한 이래 표준보육단가는 1999년까지 산정하여 보육사업지침으로 제시하다가 그 이후 표준보육단가 고시는 각 시도에 위임하고 중앙정부에서는 기존의 표준보육단가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정부의 지원기준 보육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보육비용은 1999년 표준보육단가체계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서문희 외, 2003).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9년 정부의 표준보육단가 구성항목을 살펴보면, 종사자 인건비, 보육아동급식비, 교재교구비, 시설관리운영비, 차량운영비의 총 5개 항목으로 구분되었다.

<표 2-6> 1999년 정부의 표준보육단가 구성 항목

구 분	구 성 항 목
종사자 인건비	① 기본급·상여금, ② 퇴직적립금, ③ 교통비, ④ 급식비, ⑤ 보육수당, ⑥ 시간외 수당, ⑦ 장기근속수당, ⑧ 가족수당, ⑨ 직급보조비, ⑩ 영아담당수당
보육아동급식비	① 주부식비, ② 영양급식비
교재교구비	
시설관리운영비	① 난방연료비, ② 공공요금, ③ 수용경비, ④ 건물유지비
차량운영비	

자료: 보건복지부, 「1999년도 보육사업안내」, 1999; 서문희 외(2004)에서 재인용

<표 2-7> 1999년 민간시설 표준보육단가 항목별 구성비율

구 분	2세 미만아반	2세아반	3세 이상아반	79명 시설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66.6	59.6	38.1	50.0
보육아동급식비	21.2	25.7	39.4	31.8
교재교구비	3.3	4.0	6.1	4.6
시설관리운영비	5.3	6.4	9.7	4.7
차량유지비	3.6	4.4	6.7	5.4
계	100.0	100.0	100.0	100.0
연간 보육료 수납 총액	12,815,715	14,836,905	27,638,121	125,403,888
시설별 지원	7,457,745	7,380,560	8,247,674	46,961,887
연간 운영비 총액	20,273,460	22,217,465	35,885,795	172,365,775
민간시설	76.6	73.0	56.2	65.2
종사자 인건비	76.6(42.1)	73.0(39.8)	56.2(29.3)	65.2(34.9)
보육아동급식비	13.4	17.2	30.3	23.0
교재교구비	2.1	2.7	4.7	3.6
시설관리운영비	5.6	7.2	8.8	7.7
차량유지비	2.3	2.9	1.3	2.0
계	100.0	100.0	100.0	100.0
연간 운영비 총액	20,273,460	22,217,465	35,885,795	172,365,775

자료: 보건복지부, 「1999년도 보육사업안내」를 이용하여 산출; 서문희 외(2003)에서 재인용

<표 2-7>는 1999년 표준보육단가의 항목별 구성비율을 나타낸다. 정부의 인건비 지원 및 미지원 시설에 따라 단가 대비 각 항목의 비율이 차이가 나고, 아동연령반별로도 구성비율이 차이가 나는데 연령이 어린 아동반일수록 보육비용 중 인건비의 비율이 높다. 정부의 인건비 지원 및 미지원 시설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인건비 지원 시설의 경우 그 차이만큼을 시설별 인건비 지원으로 충당해 주기 때문이다(서문희 외, 2003).

2005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의해 시·도지사가 연도별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을 산정하여 시달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육료에는 종사자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가 포함

되어 있다. 수납한도액은 시·도지사가 보육시설의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국공립·법인·법인의·영아전담·장애아전담 등 정부지원시설은 정부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그 밖의 시설은 전년 대비 5%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표준보육비용 수준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표준보육비용으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표준보육단가 선정기준에 대한 연구들은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우선 표준보육비용 산정기준이 보육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요인들의 최소한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표준보육단가 구성 항목은 항목 자체도 제한적이며 항목별 단가도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어 현실적인 표준보육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특히 표준보육비용에는 민간시설의 설치 및 임대 등 투자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아 민간보육시설은 높은 재정부담을 안게 된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 실시 시 최초로 산정된 이후 재 산정하지 않고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였는데, 대체로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며, 시간이 지나다보니 교사 경력에 따른 실제 경력에 비하여 낮은 호봉을 보육료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이상현, 1999; 정영숙, 1996; 조홍식, 1995; 서문희 외, 2003에서 재인용).

2005년 여성부가 제시한 아동보육료 지원기준은 만2세 미만이 299,000원, 만2세가 247,000원, 만3~4세가 153,000원 기준이다<표 2-8>참조.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은 국공립시설 및 민간시설들 간의 경쟁으로 낮게 책정된 보육료도 전액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02년 전국보육시설실태조사에서 보육시설에서 실제로 수납하고 있는 보육료를 보면 정부지원 시설은 거의 지원단가를 받고 있으나 민간개인 및 놀이방은 민간개인 및 가정보육시설 3세 이상아 보육료를 서울시 기준 보육료의

81~82% 수준밖에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문희 외, 2002). 이것은 민간보육시설의 재정상태를 훨씬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표 2-8> 2005년 0~4세 법정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 기준
(단위: 명, 개소, 백만원)

연령 구분	법정저소득층
만2세 미만	299,000
만2세	247,000
만3~4세	153,000

자료: 여성부, 2005년도 보육사업안내

표준보육비용은 현실화하는 것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기존의 구성 요인들도 적정 수준으로 개선해야하며, 이 외 필요한 모든 및 각 항목을 반영해서 산정되어야한다. 또한 아동연령별, 지역별, 시설규모별, 대상 아동별로 세부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서문희 외, 2003). 서문희 외(2004)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적절한 보육비용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보육비용 산출과 관련하여 고려해야할 사항들로 다음을 들고 있다. 우선 적용 기준의 조정으로 가장 큰 과제는 보육교사의 인건비 수준을 연차적으로 유치원교사와 동일한 봉급수준으로 인상, 초과근무 수당, 교재교구비의 상향조정, 지역별·시설규모별 다양한 표준보육비용의 산출, 시설의 개·보수비용 등이다. 표준보육비용 재산정은 모두 기존의 보육비용 구성 요인들의 단가를 개선하여 적용하고,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어야 하므로 자연히 보육단가는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경우 정부와 부모의 비용 부담 능력도 고려되어야 한다.

서문희 외(2004)의 연구에서는 새로운 항목의 추가 없이 1999년 당시 표준보육 단가 산출 항목인 종사자 인건비, 보육아동급식비, 교재교구비, 시설관리운영비, 차량유지비 등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 및 개선에 따르는 비용부담의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이들 제시된 항목들에 대한 개선을 모두 반영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보육비용,

즉,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기준은 60.6%,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는 55%가 상승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폭의 대부분은 인건비 개선 및 현실화에 의한 것이다.

최근 한국조세연구원(2005)이 발표한 표준보육단가는 보육비 결정을 위한 현실적인 지표로 기능하기 위해 아동의 보육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비용을 고려하고 영유아 보육서비스와 관련된 제 법령, 시행령, 규칙과 사회적 기준을 충족하는 비용수준을 감안하였고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내용과 질이 일정 정도 이상을 유지하도록 비용을 책정하였다. 보육비용 산출에는 종사자 인건비, 아동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의 다섯 가지 항목이 포함되었다(<표 2-9>참조).

<표 2-9> 보육시설의 표준비용 산출 구성항목

구성항목	내용
종사자 인건비	보육교사, 보육시설장, 취사원, 영양사, 간호사(시설규모별 차이)
아동 급간식비(연령별)	영유아 연령별 칼로리에 따른 식단
교재교구비	교실설비비, 교육재료비 및 소모품, 현장학습비, 실험실습비
관리운영비	난방비,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수용경비
시설설치비	건축비, 건물수선유지비, 놀이터설치비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는 비용 산출시 시설유형별 차이를 고려하였으나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시설유형이나 운영주체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가정 하에 시설유형별 차이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영유아의 연령별 차이와 보육시설의 규모에 따른 차이를 적절히 반영하도록 하였다. 새로 산정된 표준보육단가는 항목별 비용이 구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표 2-10>참조. 이는 표준비용 구

성항목 각각에 대하여 최소와 최대, 두 가지 안을 산정함으로써 두 비용 사이의 구간에서 정부의 재정상태와 부담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부가 보육비 및 교육비 보조금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육시설의 표준보육비는 만0세~만5세의 아동연령 구성을 총망라하여 시설규모에 따른 아동연령 구성을 고려하여 산출한 결과, 97인 시설의 아동 1인당 표준보육 및 교육비는 329,265원과 432,213원 사이에서 결정되었다. 새롭게 계산된 표준보육비용은 정부와 보호자의 부담비율 결정이라는 과제를 남겨놓고 있다.

<표 2-10> 아동1인당 표준보육비

(단위: 원)

구분	20		50		77		97		124		142		169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1안	2안
인건비	334,853	462,550	240,702	328,824	199,787	273,593	205,721	277,474	193,332	261,819	201,017	269,815	188,716	254,079
교재 교구비	19,561	27,444	31,379	42,027	32,863	44,033	32,294	43,249	31,488	42,160	32,582	43,588	33,066	44,254
급식비	40,206	44,007	50,907	55,671	51,363	56,170	52,524	57,558	51,967	56,867	51,936	56,834	52,022	56,928
관리 운영비	38,858	51,791	28,453	37,433	28,040	36,730	27,445	35,455	26,587	34,730	25,945	33,738	26,050	32,056
시설 설치비	11,388	18,889	11,847	20,222	11,436	19,334	11,281	18,478	10,963	18,012	10,640	17,775	10,564	17,511
표준 보육비	444,866	604,681	363,288	484,177	323,489	429,861	329,265	432,213	314,337	413,588	322,121	421,751	310,418	404,827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2005.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2) 보육료 자율화

한편 보육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보육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영유아 양육시장에 대한 가격규제가 서비스 질을 낮추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의 보육정책이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어, 다양

한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국가가 국공립시설을 중심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여 보육을 책임지고, 나머지는 시장경쟁 체제에 맡겨 보육의 질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보육시설은 국공립시설의 가격을 100으로 볼 때, 개인시설의 가격은 최대 약 140수준으로 규제되어 왔다(현진권, 2004). 국공립의 경우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재정기반이 약한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가격을 규제함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같은 민간보육시설들끼리 원생 유치를 위한 경쟁을 함으로써 가격과 서비스 질이 점차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격규제로 인해 국공립 시설보다 낮은 질의 서비스를 창출하는 공급자로서 인식되어 수요자들도 민간사업자들의 서비스보다는 국공립시설의 서비스를 선호하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현진권, 2004).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재정을 확대하는 공적 체계로 전환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보육시장 경쟁체제를 제안하는 쪽에서는 정부주도의 영유아 정책이 정부규제 강화, 관료주의에 의한 행정 상승 등으로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투입된 정부 자원 규모에 비해 서비스 질 상승은 낮아 정부재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현진권, 2004). 민간시장에 대한 가격규제를 철폐하고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서비스 질을 높이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이러한 ‘보육시장 자율화’에 대해 보육계의 대부분은 아직은 시행하기에 이르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아직 저소득층을 위한 무상보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보육의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시점에서 보육료의 자율화는 보육서비스의 양극화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중산층에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나 일반아동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부와 보육계

도 현재 보육서비스는 민간시장에 거의 의존하고 있고 국공립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기 때문에, 국가가 전체 보육시설의 80% 이상을 국공립으로 만들고 나머지에 대해 시장자유화를 논하면 모를까 지금 논하는 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의 평균 경제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즉, 고소득 계층이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전체의 5% 이하인데, 이들을 위한 보육시장을 자유화한다는 것은 오히려 보육비용을 높임으로써 중간계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본다.

3) 보육비용 지원방식의 일원화

우리나라에서 보육예산 지원이 시작된 것은 1967년부터였다. 1981년까지는 주로 지원아동에 대한 급식보조금 명목으로 지원되다가, 1989년 아동복지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990년대 이후 정부의 보육예산은 인건비, 건축비에서 저소득층 보육료, 이후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등의 순으로 책정되어 지원되었다. 2000년을 전후하여 정부의 보육예산 크게 확대되었는데, 특히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정부 비지원 민간 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 방식은 종사자 인건비 중심의 시설별 지원과 아동별 보육료 지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시설별 지원은 보육시설에게 일정부분의 시설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며, 아동별 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분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보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재정지원방식은 시설별 지원과 아동별 지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현재 모두 시설로 지원되고 있다.

<표 2-11> 보육시설 운영비 국고보조금 기준 요약

구 분	지 원 내 용
국·공립 및 법인시설	· 종사자 인건비 지원 - 40인 이상 시설: 원장 인건비 80%, 교사인건비 영아반 80%, 유아반 30% - 40인 미만 시설: 원장 인건비 없음, 교사인건비 영아반 80%, 유아반 30% - 장애아반 편성 운영: 장애아반 교사인건비 80% · 추가지원: 농어촌 등 취약지역 -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1명 인건비 100% 지원 - 차량운영비: 월/개소당 15만원 · 시설기능보강비: 국공립시설 신축 - 개소당 100평(330m²) 기준으로 탄력적으로 적용, 725천원/m²(국비, 지방비 포함) · 중·개축비 - 개소당 132m²(40평)까지, 725천원/m²(국비, 지방비 포함) · 시설 개·보수 - 개소당 30,000천원(국비, 지방비 포함) · 장비비 - 개소당 2,000천원(국비, 지방비 포함)
장애아전담시설	· 원장 및 보육교사 인건비 80% · 추가지원: 치료사 및 취사부 각1명 인건비 100% 지원 · 방과후 보육교사 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80% · 차량운영비: 월/개소당 15만원 · 시설기능보강비: 장애아전담시설 신축 - 개소당 396m²(120평)까지, 725천원/m²(국비, 지방비 포함)
영아전담시설	· 원장 및 보육교사 인건비 80% · 취사부 1명 인건비 100% 지원 · 농어촌 시설인 경우 차량운영비: 월/개소당 15만원
시간연장·휴일 · 방과후 보육지원	· 시간연장보육: 시설당 1인만 지원(별도채용시) - 정부지원시설: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80% - 민간지정시설: 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당 100만원 · 휴일보육: 지정받은 국공립·법인시설 - 휴일보육 5명 이상 5시간 이상 보육시 일일 5만원 · 방과후 보육 - 방과후 20인 이상 보육시 인건비 50%
장애아 통합 보육 지원	· 장애아 3명 이상 통합 보육하는 국공립·법인시설 - 보육교사 1명 인건비 80% 지원
민간(가정) 및 부모협동보육시 설 지원	· 영아반 운영비 지원: 정부지원시설 제외 - 0세반 아동 1인당 15만원(3명까지), 1세반 아동 1인당 9만원(5명까지), 2세반 아동 1인당 6만원(7명까지) · 민간장애아전담시설: 장애아 1인당 9만원 · 교재·교구비 지원: 정부지원시설 제외 - 100~1,200천원/년·개소

자료: 여성부, 2005년도 보육사업안내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국공립 및 법인 중심의 인건비 지원과 프로그램별 지원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장애아전담시설, 영아전담시설, 시간연장보육, 영아반 운영비는 민간시설에도 적용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표 2-11>과 같다.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보육법 제 10조에 의한 국공립, 법인,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수요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설에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저소득층 소득수준별 차등지원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두 자녀이상 보육료, 기타 보육료로 구분된다. 영유아서비스의 수요자를 지원하는 정부정책은 김대중 정부부터 확대되어 2004년부터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2005년 보육료 지원내용은 <표 2-12>와 같다.

<표 2-12> 영유아보육료 지원

구 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아동수	지원액
0-4세아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60%이하	· 272천명 (신규 9만 명, 지원액 증가 138천명)	· 지원계층을 4계층으로 확대 하여 부모 소득에 따라 각각 정부지원 보육료의 100, 80, 60, 30% 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 이하까지	· 95천명 (8천명 증)	· 정부지원단가 보육료 전액 (월/153천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모든 장애아	· 9천명 (5천명 증)	· 정부지원단가 보육료 전액 (월/299천원)
두 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이하까지	· 30천명 (신규)	· 0-1세 6만원, 2세 5만원, 3세 이상 3만원

자료: 여성부 '05년 보육예산안 설명자료 (2004.9.24 보도자료)

그런데 보육시설유형간의 역할이나 기능이 아무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보육료 지원의 이원화는 우리나라 보육 문제의 근원으로 부작용이 많으며, 보육비용 지원 방식을 아동별 지원방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보호자의 비용부담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에 대해 기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농촌에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인건비 지원 액수만큼은 낮은 보육료로 취약계층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특정 기준의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부모의 보육료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보육료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국공립시설을 중심으로 가장 비중이 큰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들 시설이 타 유형의 시설에 비하여 공공성이 강한 시설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보육기능을 하고 있다는 전제로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최근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이 이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차별화하고 있는지가 모호해지면서 지원방식의 변경을 주장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민간 보육시설의 비중이 높아져,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는 시설은 전체 시설의 15%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시설 이용아동은 과반수를 넘지 않고 있다(서문희 외, 2003).

이러한 정부의 재정지원방식에 따라 인건비 지원을 받는 국공립 및 법인시설과 민간시설의 보육료가 이원화되어, 민간시설의 보육료가 정부지원시설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다. 이러한 이원화된 보육료 구조는 시설유형간의 갈등을 야기하며 동시에 이용자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정부지원시설의 기능과 역할이 일반 보육시설과 차별화되지 않고 보호자들은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을 더 선호하므로 민간시설은 불공정 경쟁을 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민간시설이 보육단가를 다 받지 못하고 국공립시설 수준이나 그 이하로 받아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서문희 외, 2003).

보육료를 일원화하는 방식은 현재의 국공립시설과 민간보육시설간의 보육료 차이를 없애서 표준보육단가 수준으로 통일하고 국공립시설도 민간시설과 동일한 보육료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정부지원시설을 이용하던 아동의 보육료가 올라가고 지원금이 표준보육단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추가 요인이 발생하게 되지만, 기존의 국공립 및 법인시설에 지원하던 시설별 지원금을 아동별 지원으로 전환하여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을 확대할 수 있다. 보육료가 일원화된다면 민간보육시설은 국공립과의 불공정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보육료 덤핑 요인이 사라지게 되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서문희 외, 2003).

이러한 지적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보육재정 지원방식을 변경하여 보육재정 지원체계를 시설별 지원에서 수요자(아동)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하고 있다. 시설별 인건비를 축소하고 아동보육료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여, 국공립시설을 포함해서 기존 시설지원으로 가던 비용을 아동별 지원으로 돌려서 국공립과 민간 간의 보육료와 재정지원의 격차를 좁히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간의 서비스 격차를 해소해 나가고 보호자의 보육시설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 여성부는 향후 점진적으로 지원시설에 대한 교사 인건비 지원 비율을 낮추고 수요자 중심의 아동별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보육료 지원대상을 2003년 25%에서 2008년 5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정심, 2004). 2005년도 보육예산안을 살펴보면, 여성부는 2005년 영유아보육예산을 2004년 4,050억원 대비 2,027억원(50.1%) 증가한 6,077억원으로 편성하였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전년 대비 20.1%가 증가한 반면 영유아보육료는 75.9%나 증가하였다. 전체 예산액 대비 비율도 2004년에는 영유아보육료가 37.6%,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56.3%를 차지했던 반면, 2005년 예산액에서는 각 43.9%, 45.0%로 영유아보육료 예산액이 크게 늘어났다<표 2-13>참조. 이에 따라 2005년에는 시설보육 예상 아동(92만명)의 약 45%에 해당하는 41만 명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아동이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3> 2005년 보육예산안

(단위: 명, 개소, 백만 원)

구 분 (총 계)	2004년 예산 (404,998)		2005년 예산안 (607,741)	
구 분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예산액
■ 영유아보육료	273,675	152,444	406,436	267,088
0~4세 차등보육료	182,408	93,693	272,436	169,859
만5세아 무상보육료	86,982	53,449	95,000	76,895
장애아 무상보육료	4,285	5,302	9,000	14,220
두 자녀 이상 보육료	-	-	30,000	6,114
■ 보육시설 운영지원	77,510	227,848	126,249	273,754
국공립/법인 정부지원시설	34,472	153,210	35,676	137,738
영아전담 보육시설	3,600	26,839	5,520	35,376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624	4,723	1,218	8,199
시간연장 보육시설	600	4,389	2,000	12,290
민간시설 영아반	18,410	29,532	57,360	68,640
교재교구비	18,908	8,355	22,828	10,044
차량운영비	896	800	1,647	1,467
■ 보육시설 확충	509	20,281	1,030	58,070
시설신축(국공립, 장애아)	260	16,930	530	51,295
보육시설 기능보강	245	2,985	484	5,815
보육정보센터 설치 등	5	906	16	960
■ 보육인프라 구축	-	3,884	1,200	8,830
평가인증 시범운영	-	100	1,200	600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	-	-	1,479
육아지원정책개발원	-	-	-	1,000
보육시설 실태조사	-	1,200	-	-
기타 청사어린이집운영 등	-	2,584	-	5,751

자료: 기획예산처

2.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육시설의 평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몇 년간 평가인증제 도입의 필요성과 실시방안 등에 검토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평가인증제도는 보육현장을 일정한 지침(평가인증지표)을 기준으로 하여 점검하는 제도이다. 평가인증제는 보육서비스의 효과적인 질적 수준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보육시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보육시설의 환경·인력·프로그램 등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보육수요자(부모)가 보육시설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지원을 유도하려는 것이 도입의 목적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보육에서 민간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행정력이 이에 미치는 못하는 국가에서는 평가인증제도가 보육시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서문희, 2004).

평가인증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가대상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모든 보육시설이다. 평가인증 주기는 3년으로 하고, 평가인증지표는 시설규모 및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평가지표는 21이상 시설은 7개영역 80항목, 21인 미만 시설은 5개영역 60항목이며, 평가영역은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건강·영양,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로 구성된다. 평가과정은 인증신청, 자체점검, 현장관찰평가, 인증결정의 4단계를 거치게 된다. 인증결정은 평가인증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평가인증 결과 인증시설은 공개된다(2005년도 보육사업안내).

평가인증제도의 실시예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한 보육시설은 평가인증 지표 및 지침에 의한 자체점검으로 부족한 부분을 정비·보완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인증

받은 보육시설이 공개되어 학부모들의 시설 선택에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평가인증제도 실시를 통해 보육시설의 자율적인 서비스 개선노력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해 나갈 예정이다.

여성부는 보육서비스 질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제를 보육정책 중 하나로 책정하고 있다.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02년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에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실시」를 제시하고, 2003년 1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동비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2004년 1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실시를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4년 10월에는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범운행을 위탁하여 한국여성개발원에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을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5년에 1,000개소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를 시범운영하고,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3. 민간보육시설의 법인화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비영리보육법인의 설립·지원 안이 제기되기도 한다. 민간보육시설의 재정열악과 운영관리의 미흡이 낮은 서비스 질을 낳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의 재정지원과 운영관리를 할 수 있는 장치로 민간시설의 비영리보육법인화를 제안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보육사업이 시장원리에 맡겨져 민간의존적 보육정책으로 인해 보육의 질적 약화가 가속되어왔기 때문에 정부지원 보육시설의 확대와 적극적인 재정 지원책이 요구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

를 위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법인 보육시설, 비영리 보육법인 시설 등의 정부 지원 보육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며, 보육시장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시설을 일부나마 정부지원 시설로 전환하는 것은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해나간다는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개인소유인 민간 보육시설을 법인화하여 정부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인 소유 민간보육시설을 공공화하는 구체적인 형태로는 비영리 보육사업을 전제로 한 재단법인 형태를 구상할 수 있다. 이 때 개인 민간 보육시설은 비영리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개인 민간 보육시설이 ‘비영리 보육법인’이란 형태로 법적 틀을 갖추고, 공적인 관리와 평가를 받는 시설은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이 과정에서 비영리적으로 운영하고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민간 보육부문의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병호 외, 2003).

그러나 민간보육시설의 법인화 안에 대해 현재 민간시설에서 재정상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설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민간보육시설의 법인화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도 향후 민간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보다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의 법인화는 현재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3절 보육의 질 결정요인

위에서 살펴본 민간보육시설에 관련한 최근의 논의들은 현재 민간시설의 보육서비스의 문제점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하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본 장에서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이전에 논의의 대상인 보육의 질을 구성하는 결정요인은 무엇인지, 즉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질적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영유아보육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확대되면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개념이 바로 ‘발달적 영유아보육’, ‘질적 영유아보육’이다. 이는 영유아보육은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포괄적인 보호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합의에서 도출되어진 개념이다. 이를 위해서 영유아보육에 대한 다양한 효과성 연구가 부각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가장 초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영유아보육의 질적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 향상시킴으로써 영유아보육의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 영유아보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심과 다양한 시도들이 실제로 영유아보육의 전반적인 질 향상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목표로 하는 전체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상존한다.

그렇다면, 영유아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과연 어떤 질적요인들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일까. 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질적요인을 요약해보면, 다음의 <표 2-1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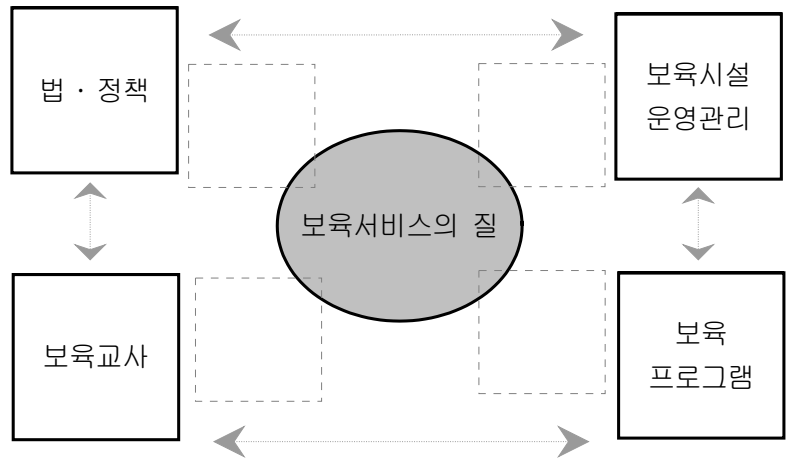
<표 2-14> 영유아보육의 질적 구성요인에 관한 문헌연구 분석

연구자 및 기관	영유아보육의 질적 구성요인
Endsley & Bradbard(1981)	건강과 안전/ 물리적 공간과 프로그램의 운영/사회적 상호작용/ 부모와의 협력관계의 측면
Holloway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상호작용의 질/ 물리적 공간배열/ 공간의 크기/ 놀이자료의 적절성과 다양성/ 실외공간의 질/ 집단크기/ 교사 대 영유아 비율
Mitchell	작은 집단의 크기/ 적절한 성인 대 영유아 비율/ 잘 훈련된 교사/ 영유아 발달이론에 근거한 교육철학을 반영하는 교육과정/ 적극적인 부모참여
Scar등(1994)	건강과 안전에 관한 요구/ 보육교사와 영유아간의 반응적이고 애정적인 상호작용/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 집단 크기의 제한/ 연령에 기준한 교사와 영유아의 비율/ 적절한 실내 실외 공간/ 영유아보육 및 발달에 관한 관계자 훈련
한미라(1995)	▪ 시설의 운영상황과 관련된 변인 : 시설의 주거형태/ 집단크기/ 보육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 ▪ 보육교사의 배경과 관련된 변인 : 연령/ 결혼여부/ 학력/ 전공/ 자격/ 경력/ 교육프로그램 운영 능력
Howes(1992)	▪ 구조적인 질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집단크기/ 보육교사 교육 및 훈련 ▪ 과정상의 질 : 발달적으로 적합한 활동준비/ 애정적, 양육적, 민감한 보육
김영옥(1991)	▪ 질 : 작은 집단의 크기/ 적절한 성인 대 영유아의 비율/ 잘 훈련된 교사/ 분명한 교육철학과 발달이론에 기초한 교육과정/ 적극적인 부모참여 ▪ 연속성: 한해 또는 하루 동안에도 여러 기관들을 옮겨 다니는 영유아의 문제/ 각기 다른 프로그램의 철학이나 교육과정의 문제 ▪ 포괄성: 건강/ 사회복지/ 영양에 관한 서비스 등
'The National Day Care Study' (1979, 미국)	집단의 크기/ 교사훈련 등
NAEYC (1984, 미국전국유아교육협회)	▪ 유아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모형 개발 ▪ 교사-유아의 상호작용/ 교육과정/ 교사-부모의 상호작용/ 교사 자격 및 발달/ 운영관리/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보육시설의 질적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들로는 우선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육관련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육시설들의 구조적인 질과 둘째, 보육시설의 직접적인 운영 혹은 보육서비스를 영유아들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사 관련 요인들이고, 세 번째는 보육프로그램과 관련된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구조적인 요인에 포함되는 사항으로는 집단 크기의 제한, 영유아의 연령에 기준한 적절한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 실내 외 공간의 적절한 크기, 보육교사의 보수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 보육교사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영유아발달 및 보육에 관한 교사훈련 교육(자격), 보육교사의 보수를 포함한 근무조건, 그리고 기타 교사지원이 포함되며, 마지막으로 보육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실내 외 공간의 적절한 배치,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보육(교육)과정 실시, 교사와 영유아간의 반응적이고 애정적이고 민감한 상호작용 실시, 놀이자료의 적절성과 다양한 제고가 있다. 그밖에 영유아들의 영양과 건강을 고려한 영양 및 급식봉사 운영에 관한 부분이 보호프로그램으로써 포함될 수 있으며, 부모 및 지역사회와 관계 향상들을 포함하는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리되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근거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분석의 틀로써 첫째, 보육관련법 및 정책요인, 둘째, 보육교사 요인, 셋째, 보육프로그램 요인, 넷째, 보육시설 운영관리 요인, 네 가지 요인을 민간시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제안을 하기 위한 기본 틀로 구성하였다 <그림 2-1>참조.



<그림 2-1> 보육서비스의 질 결정요인

제Ⅲ장 서울시 보육현황

제1절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제2절 서울시 보육사업 현황

- 민간보육시설 관련사업 중심으로

제1절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1. 보육시설 현황

1) 구별,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현황

2005년 6월 30일 현재 서울시 보육시설은 총 5,323개소이다. 시설유형별로는 민간개인시설이 2,364개소로 가장 많아, 서울시 전체 보육시설의 44.41%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은 가정(놀이방)시설은 총 2,079개소로 전체 시설수의 39.06%이며, 국·공립시설은 총 544개소로 전체 시설수의 10.22%에 해당된다(<표 3-1>참조).

<표 3-1> 서울시 보육시설 일반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설립주체별							
		계	국공립	법인	민간시설		부모협동	가정 (놀이방)	직장
					법인외	개인			
시설수	개소	5,323	544	65	198	2,364	7	2,079	66
	%	100.0	10.22	1.22	3.72	44.41	0.13	39.06	1.24

자료: 여성가족부, 보육통계 (2005년 6. 30 기준)

자치구별 보육시설수 현황은 <표 3-2>와 같다. 모든 시설유형을 종합하여 보육시설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노원구(457), 은평구(282), 강서구(282), 관악구(275), 구로구(274), 성북구(263), 도봉구(261), 송파구(260), 중랑구(244) 등이다. 반대로 보육시설수가 가장 적은 구는 중구(48), 종로구(70), 용산구(88) 순이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민간개인시설이 가장 많은 구는 은평구(171), 강서구(130), 중랑구(130), 관

악구(122)이다. 가정(놀이방)시설은 노원구(330)가 현저하게 많고, 도봉구(131)와 구로구(113) 등도 가정(놀이방)시설수가 많았다.

<표 3-2> 구별 시설유형별 보육시설수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설립주체별							
	계	국공립	법인	민간시설		부모협동	가정 (놀이방)	직장
				법인외	개인			
계	5,323	544	65	198	2,364	7	2,079	66
총 로	70	25	2	6	23	0	11	3
중 구	48	16	0	9	11	0	8	4
용 산	88	16	1	7	39	0	23	2
성 동	165	29	0	9	85	0	39	3
광 진	214	20	1	5	118	2	64	4
동대문	199	22	0	5	95	0	73	4
중 랑	244	21	2	4	130	0	86	1
성 북	263	24	2	19	118	1	97	2
강 북	201	15	5	5	108	1	66	1
도 봉	261	15	2	15	97	0	131	1
노 원	457	29	0	0	91	0	330	7
은 평	282	14	3	8	171	0	85	1
서대문	198	20	0	6	95	0	75	2
마 포	169	28	1	19	70	1	49	1
양 천	222	26	5	0	113	0	77	1
강 서	282	17	19	5	130	1	109	1
구 로	274	27	6	12	114	1	113	1
금 천	204	12	4	15	97	0	73	3
영등포	205	20	3	2	101	0	75	4
동 작	205	28	1	3	87	0	85	1
관 악	275	33	4	28	122	0	87	1
서 초	151	17	1	4	53	0	69	7
강 남	183	30	0	1	73	0	74	5
송 파	260	21	2	10	119	0	103	5
강 동	203	19	1	1	104	0	77	1

자료: 서울시, 보육통계 (2005년 6. 30 기준)

보육아동 규모별 시설현황은 <표 3-3>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육아동수가 1~20명인 시설이 39.21%, 21~30명인 시설이 15.48%, 31~39명인 시설은 17.41%로 39명 이하의 소규모시설이 전체의 72.1%를 차지한다. 민간개인시설은 아동이 21~30명, 31~39명인 소규모시설의 비율이 가장 높고, 국·공립시설은 타 시설유형보다 보육아동 규모가 큰 경우가 많다.

<표 3-3> 서울시 보육아동 규모별 시설현황

단위: 개소

구분	설립주체별							
	계	국공립	법인	민간시설		부모협동	가정 (놀이방)	직장
				법인외	개인			
전체	5,323	544	65	198	2,364	7	2,079	66
1~20	2,087	-	-	-	-	2	2,079	6
21~30	824	8	11	52	741	2	-	10
31~39	927	9	12	26	860	3	-	17
40~65	616	139	16	79	366	-	-	16
66~91	473	195	12	29	232	-	-	5
92~117	209	95	7	10	94	-	-	3
118~144	85	50	2	1	29	-	-	3
145~171	53	23	4	-	23	-	-	3
172이상	49	49	1	1	19	-	-	3

자료: 여성부, 보육통계 (2005년 6. 30 기준)

2) 보육수요

2004년 12월 말 현재 서울시의 5세 이하 영유아수는 총 611,706명이며, 0~2세의 영아가 283,073명, 3~5세의 유아가 328,633명이다. 5세 이하 영유아수가 가장 많은

구는 노원구(42,936명), 송파구(35,167명), 강서구(34,204명) 순이며, 각각 전체 5세 이하 영유아수의 7.0%, 5.6%, 5.2%를 차지한다. 영유아수가 가장 적은 구는 중구(7,196명)와 종로구(8,162명)이다(<표 3-4>참조).

<표 3-4> 구별 보육수요

단위: 명

구 분	계	0~2세	3~5세	구 분	계	0~2세	3~5세
전 체	611,706	283,073	328,633	서대문	21,841	10,251	11,590
종 로	8,162	3,596	4,566	마 포	25,034	12,158	12,876
중 구	7,196	3,397	3,799	양 천	29,568	12,925	16,643
용 산	13,198	5,973	7,225	강 서	34,204	16,192	18,012
성 동	22,377	10,482	11,895	구 로	27,983	13,067	14,916
광 진	23,219	10,611	12,608	금 천	16,127	7,342	8,785
동대문	21,152	9,660	11,492	영등포	26,512	12,714	13,798
중 량	25,487	11,533	13,954	동 작	25,357	12,304	13,053
성 북	27,030	12,537	14,493	관 악	31,868	15,416	16,452
강 북	20,897	9,501	11,396	서 초	21,033	10,005	11,028
도 봉	23,877	10,650	13,227	강 남	24,455	11,260	13,195
노 원	42,936	19,454	23,482	송 파	35,167	15,933	19,234
은 평	30,138	13,937	16,201	강 동	26,888	12,175	14,713

자료: 통계청 (2004년 기준)

2004년 12월 말 현재 보육대상 아동의 이용률은 <표 3-5>와 같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서울시 5세 이하 아동의 26.2%인 160,530명으로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의 비율이 상당히 낮았다. 특히 0~2세 영아의 이용률은 21.8%에 불과해 영아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것을 드러냈다.

<표 3-5> 보육시설 이용률 (0~5세)

단위: 명, %

구 분	보육대상 아동수	보육시설 이용아동수	이용률
0~2세	283,073	61,672	21.8
3~5세	328,633	98,858	30.1
계	611,706	160,530	26.2

3) 보육아동 현황

(1) 보육정원

2005년 6월 현재 서울시 보육시설의 아동정원은 <표 3-6>과 같다. 전체 정원은 209,319명이며, 시설유형별로는 민간개인시설이 전체 정원의 51.26%로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국·공립시설 23.65%, 가정(놀이방)시설 16.20%였다. 아동연령별 정원수는 대부분의 시설에서 3~만 5세가 가장 많으나 가정(놀이방)시설의 경우는 2세 미만의 영아가 훨씬 많았다.

<표 3-6> 아동연령별 및 시설유형별 아동정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설립주체별							
	계	국공립	법인	민간시설		부모협동	가정 (놀이방)	직장
				법인외	개인			
계	209,319	49,509	4,650	9,702	107,306	203	33,914	4,035
2세 미만	34,009	6,075	481	993	14,190	32	11,634	604
만 2세	47,543	9,289	746	1,523	23,719	49	11,254	963
3~만 5세	117,392	31,884	2,788	5,495	65,365	122	9,330	2,408
만 6세 이상	10,375	2,261	635	1,691	4,032	-	1,696	60

자료: 여성부, 보육통계 (2005년 6. 30)

2005년 6월 말 현재 자치구별 보육시설 아동정원 현황은 <표 3-7>과 같다. 보육정원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노원구(13,392명), 관악구(10,867명), 강서구(10,502명), 중랑구(10,357명) 순이다.

<표 3-7> 구별 및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아동정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설립주체별							
	계	국공립	법인	민간시설		부모협동	가정 (놀이방)	직장
				법인외	개인			
계	209,319	49,509	4,650	9,702	107,306	203	33,914	4,035
종 로	4,234	1,975	180	357	1,282	0	153	287
중 구	3,445	1,795	0	527	619	0	149	355
용 산	4,220	1,278	32	412	2,036	0	398	64
성 동	7,448	2,419	0	340	3,883	0	624	182
광 진	7,965	1,568	30	200	4,843	63	1,090	171
동대문	8,286	2,068	0	291	4,476	0	1,314	137
중 랑	10,357	2,535	240	186	6,004	0	1,301	91
성 북	9,543	1,960	223	927	4,690	37	1,615	91
강 북	8,996	1,525	343	160	5,743	27	1,146	52
도 봉	7,895	1,161	173	656	3,588	0	2,265	52
노 원	13,392	2,784	0	0	5,132	0	5,240	236
은 평	10,266	1,099	361	556	6,850	0	1,375	25
서대문	8,289	1,505	0	323	5,113	0	1,210	138
마 포	7,280	2,657	91	476	3,207	36	748	65
양 천	10,083	2,628	238	0	6,001	0	1,171	45
강 서	10,502	1,359	1,355	190	6,002	20	1,557	19
구 로	8,925	1,875	291	632	4,094	20	1,933	80
금 천	7,507	961	443	863	4,080	0	1,097	63
영등포	7,907	1,602	177	88	4,556	0	1,180	304
동 작	8,785	2,762	63	161	4,294	0	1,466	39
관 악	10,867	2,879	183	1,378	4,630	0	1,603	194
서 초	6,631	1,907	32	488	2,511	0	1,189	504
강 남	8,580	3,249	0	52	3,783	0	1,080	416
송 파	9,082	2,109	108	360	4,440	0	1,694	371
강 동	8,834	1,849	87	79	5,449	0	1,316	54

자료: 서울시, 보육통계 (2005년 6. 30 기준)

(2) 보육시설 이용아동

2005년 6월 말 현재 보육시설 아동현원은 총 176,995명이다. 아동현원은 민간개인시설이 92,081명으로 전체 아동현원의 52.02%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아동현원이 많은 시설은 국·공립시설(47,348명), 가정(놀이방)시설(21,752명)이다. 아동연령별로는 만3세가 41,726명으로 가장 많고, 만2세(35,961명), 만4세(34,487명), 만5세(28,498명) 등이 많았다(<표 3-8>참조).

2005년 6월 말 현재 보육시설 아동현원을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보육시설 이용아동이 가장 많은 구는 노원구(10,496명)였으며, 양천구(10,083명), 강서구(9,380명), 관악구(8,753명), 중랑구(8,306명) 등이 많았다(<표 3-9>참조).

<표 3-8> 아동연령별 시설유형별 아동현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설립주체별							
	계	국공립	법인	민간시설		부모협동	가정 (놀이방)	직장
				법인외	개인			
계	176,995	47,348	4,288	8,027	92,081	166	21,752	3,333
0세	6,512	899	71	153	2,505	9	2,812	63
만1세	19,740	4,453	316	501	8,330	17	5,724	399
만2세	35,961	8,333	637	1,107	17,980	43	7,180	681
만3세	41,726	10,445	892	1,461	24,630	29	3,296	973
만4세	34,487	10,873	1,040	1,625	18,653	39	1,532	725
만5세	28,498	10,477	802	1,510	14,449	29	818	413
만6세 이상	10,071	1,868	530	1,670	5,534	-	390	79

자료: 서울시, 보육통계 (2005년 6. 30 기준)

<표 3-9> 구별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아동현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설립주체별							
	계	국공립	법인	민간시설		부모협동	가정 (놀이방)	직장
				법인외	개인			
계	176,995	47,348	4,288	8,027	92,081	166	21,752	3,333
종 로	3,491	1,696	162	294	995	0	115	229
중 구	3,098	1,627	0	477	598	0	114	282
용 산	3,794	1,233	29	383	1,798	0	315	36
성 동	7,012	2,419	0	312	3,682	0	423	176
광 진	6,824	1,524	30	158	4,372	53	556	131
동대문	7,099	1,991	0	276	3,850	0	870	112
중 랑	8,306	2,323	223	179	4,724	0	768	89
성 북	7,589	1,923	219	666	3,932	23	761	65
강 북	7,241	1,449	309	122	4,563	26	720	52
도 봉	6,972	1,161	170	647	3,511	0	1,435	48
노 원	10,496	2,739	0	0	4,365	0	3,211	181
은 평	8,055	1,062	287	465	5,457	0	760	24
서대문	6,701	1,363	0	294	4,102	0	807	135
마 포	6,438	2,546	90	465	2,689	35	563	50
양 천	10,083	2,628	238	0	6,001	0	1,171	45
강 서	9,380	1,257	1,169	154	5,536	20	1,231	13
구 로	7,455	1,831	322	483	3,657	9	1,130	23
금 천	6,298	869	431	669	3,591	0	686	52
영등포	7,623	1,585	173	85	4,418	0	1,058	304
동 작	7,110	2,677	50	113	3,316	0	928	26
관 악	8,753	2,750	158	918	3,783	0	971	173
서 초	5,189	1,694	32	460	1,901	0	703	399
강 남	6,909	3,141	0	44	2,837	0	596	291
송 파	7,839	2,078	109	316	3,905	0	1,083	348
강 동	7,240	1,782	87	47	4,498	0	777	49

자료: 서울시, 보육통계 (2005년 6. 30 기준)

<표 3-10> 보육시설 정원충족률

단위: 명, %

구 분		계	국·공립	법인	민간		부모협동	가정 (놀이방)	직장
					법인외	개인			
아 동 수	정원	209,319	49,509	4,650	9,702	107,306	203	33,914	4,035
	%	100.0	23.65	2.22	4.64	51.26	0.10	16.20	1.93
	현원	176,995	47,348	4,288	8,027	92,081	166	21,752	3,333
	%	100.0	26.76	2.39	4.54	52.04	0.09	12.29	1.88
	정원충족률	84.6	95.7	92.2	82.7	85.8	81.8	64.1	82.6

자료: 서울시, 보육통계 (2005년 6. 30 기준)

<표 3-11> 구별 보육서비스 공급률, 이용률 및 정원충족률

단위: 명, %

구 분	보육대상아동 (A)	보육시설 아동정원		보육시설 아동현원		정원충족률 (F=D/B*100)
		아동수 (B)	공급률 (C=B/A*100)	아동수 (D)	이용률 (E=D/A*100)	
전 체	611,706	197,398	32.3	168,569	27.6	85.4
총 로	8,162	3,970	48.6	3,211	39.3	80.9
중 구	7,196	3,452	48.0	3,101	43.1	89.8
용 산	13,198	4,111	31.1	3,746	28.4	91.1
성 동	22,377	6,595	29.5	6,213	27.8	94.2
광 진	23,219	7,522	32.4	6,494	28.0	86.3
동대문	21,152	7,826	37.0	6,773	32.0	86.5
중 랑	25,487	10,156	39.8	8,419	33.0	82.9
성 북	27,030	7,914	29.3	6,958	25.7	87.9
강 북	20,897	8,781	42.0	7,066	33.8	80.5
도 봉	23,877	7,484	31.3	5,985	25.1	80.0
노 원	42,936	13,535	31.5	10,796	25.1	79.8
은 평	30,138	9,998	33.2	8,654	28.7	86.6
서대문	21,841	7,572	34.7	6,438	29.5	85.0
마 포	25,034	6,729	26.9	6,169	24.6	91.7
양 천	29,568	9,514	32.2	8,755	29.6	92.0
강 서	34,204	9,704	28.4	8,266	24.2	85.2
구 로	27,983	8,767	31.3	7,231	25.8	82.5
금 천	16,127	7,072	43.9	6,091	37.8	86.1
영등포	26,512	6,956	26.2	6,657	25.1	95.7
동 작	25,357	8,312	32.8	6,697	26.4	80.6
관 악	31,868	10,344	32.5	8,562	26.9	82.8
서 초	21,033	6,143	29.2	4,946	23.5	80.5
강 남	24,455	8,276	33.8	7,121	29.1	86.0
송 파	35,167	8,708	24.8	7,589	21.6	87.1
강 동	26,888	7,957	29.6	6,631	24.7	83.3

자

료: 서울시, 보육통계 (2004년 말 기준)

2005년 6월 말 현재 보육시설 정원충족률은 84.64%였다.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 시설의 정원충족률이 95.7%로 가장 높았으며, 민간법인시설 92.2%가 그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가정(놀이방)시설은 정원대비 현원의 비율이 64.1%에 불과했고, 민간 개인시설도 85.8%로 이용아동수가 정원에 크게 미달하고 있었다<표 3-10>참조.

2004년 12월 말 현재 자치구별로 보육시설의 공급률, 이용률 및 정원충족률은 <표 3-11>과 같다. 전체 보육대상아동 대비 보육시설 공급률은 32.3%로 매우 낮았으며, 보육시설 공급이 가장 잘 되어있는 구는 종로구(48.6%), 중구(48.0%), 금천구(43.9%), 강북구(42.0%) 등이었다. 보육시설 이용률은 27.6%로 공급률보다 다소 낮았으며, 이용률이 높은 구는 영등포구(95.7%), 성동구(94.2%), 양천구(92.0%), 마포구(91.7%), 용산구(91.1%) 등이었다. 정원충족률은 국공립시설과 민간개인시설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민간개인시설의 정원충족률은 전체시설의 정원충족률의 평균(85.4%)과 유사한 85.2% 수준에 머물렀는데 반해 국공립시설의 정원충족률은 95.7%에 달하였다.

4) 보육종사자 현황

(1) 구별 보육종사자수

2005년 6월 현재 보육시설 종사자수는 전체 25,704명이다. 민간개인시설의 종사자가 수가 총 12,775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공립시설 종사자수가 5,886명, 가정(놀이방)시설 종사자수가 5,017명이었다. 자치구별로는 보육시설수가 가장 많은 노원구(1,803명)가 종사자수도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1,381명), 은평구(1,278명), 강동구(1,266명) 등이 많았다(<표 3-12>참조).

2005년 6월 현재 보육시설 1개소 당 아동수와 직원 1인당 아동수는 <표 3-13>과 같다. 시설 1개소 당 아동수는 평균 35명이었고,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시설과 법인시설이 각각 79명과 84명으로 그 외 시설에 비해 아동수가 훨씬 많았다. 직원1

인당 아동수는 전체 평균 7명이었고, 법인시설과 국·공립시설, 민간개인시설이 각각 8명으로 가장 많았다.

<표 3-12> 구별 시설유형별 보육종사자 현황

단위: 명

구분	설립주체별							
	계	국공립	법인	민간시설		부모협동	가정 (놀이방)	직장
				법인외	개인			
계	25,704	5,886	500	972	12,775	37	5,017	517
총 로	503	227	22	52	137	0	25	40
중 구	435	203	0	64	86	0	27	55
용 산	535	150	5	46	263	0	58	13
성 동	942	292	0	35	519	0	90	6
광 진	1,065	203	2	37	627	13	163	20
동대문	1,042	239	0	41	554	0	191	17
중 랑	1,090	330	2	23	595	0	130	10
성 북	1,148	251	20	35	606	5	220	11
강 북	998	169	55	10	605	6	151	2
도 봉	955	146	17	63	440	0	283	6
노 원	1,803	331	0	0	645	0	799	28
은 평	1,278	126	31	52	868	0	199	2
서대문	1,028	160	0	76	591	0	177	24
마 포	828	288	15	90	301	5	121	8
양 천	1,264	308	31	0	777	0	141	7
강 서	1,381	153	122	17	730	5	350	4
구 로	1,019	190	47	65	536	3	174	4
금 천	855	111	45	80	484	0	130	5
영등포	886	187	21	12	475	0	158	33
동 작	1,036	300	6	10	509	0	205	6
관 악	1,077	322	26	83	281	0	340	25
서 초	907	261	5	50	318	0	194	79
강 남	1,142	393	0	5	457	0	231	56
송 파	1,221	289	16	20	601	0	246	49
강 동	1,266	257	12	6	770	0	214	7

자료: 서울시, 보육통계 (2005년 6. 30 기준)

<표 3-13> 시설 1개소당 · 직원1인당 아동수

단위: 명

구분	설립주체별								
	계	국공립	법인	민간시설			부모 협동	가정 (놀이방)	직장
				소계	법인외	개인			
시설1개소당 아동수	35	79	84	44	56	43	22	11	50
직원1인당 아동수	7	8	8	8	7	8	6	5	7

자료: 여성부, 보육통계 (2005년 6. 30 기준)

제2절 서울시 보육사업 현황 - 민간보육시설 관련사업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보육정책의 특징은 중앙정부의 역할에 의존해 왔으나 국민의 정부 이후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보육정책이 우리나라 보육사업 전개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서울시 보육정책은 국가 위임사무 외 자체사무, 즉 시 단위 보육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보육료지원 대상 아동 확대, 인건비 지원 대상 확대, 영아 장애아 방과후 보육시설 확대, 교사수당 지원 확대 등 중앙정부 정책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1. 시비보조 보육사업

다양한 보육수요가 증대하고 자녀양육의 전문화 욕구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 서울시는 맞춤형 보육을 활성화하고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하여 최종적으로 가정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보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보육사업 목표로는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며, 보육환경 및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보육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제고, 보육서비스 평가제 실시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타 시·도에 비해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 구체적인 시비보조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보육료 지원

1층 법정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보육료 전액면제아동이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실 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와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저출산 현상과 관련하여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종사자 인건비 지원

서울시는 정부지원시설에 대하여 소규모시설 취사부 인건비, 0세아 전담 간호사 인건비, 비상근교사 인건비, 시간 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인건비, 장애아 통합보육 특수교사 인건비, 종교시설 교사 인건비,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시설(가정보육시설 포함)에 대해서는 시간 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인건비, 장애아통합보육 특수교사 인건비,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시설장 제외)를 지원하고 있다.

3) 운영비 지원

서울시는 국공립 및 기타 지정시설에 대해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비, 장애아 방과후반 운영비, 보육교사 중식비,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영아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자재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노후 보육기자재를 교체하여야 하거나 없는 민간보육시설을 우선으로 2003년~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다. 또한 보육시설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보육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설립된 전체 시설에 대해 보육프로그램 보급비를 지원하고 있다.

<표 3-14> 2005 시비보조 보육사업

구 분	사업명	지원기준 및 내역
1. 보육료 지원	전액면제아동 보육료 차액지원	· 민간시설 이용 시 실 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 차액지원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 셋째이후 자녀에 대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실 보육료 전액 지원
2. 종사자 인건비지원	소규모시설 취사부 인건비	· 정원 40~52명 이하 소규모시설의 취사부 1명 인건비지원
	0세아 전담간호사 인건비	· 0세아 9명이상 보육 시 0세아 전담 간호사 1인 인건비지원
	비상근교사 인건비	· 보육아동이 18:00이후 2개 반 이상인 경우, 1일 4시간 기준 16천 원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	· 19:30이후 4시간 30분 이하 보육 시 지원(아동 5명당 1인) · 1일 최대 4시간 30분 기준, 시간당 5,000원(월 562,500원)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인건비	· 보육교사 및 취사부에 대한 출산휴가, 보수교육, 병가 시 대체인력 지원, 1인 1일 35천원
	장애아 통합보육 특수교사 인건비 추가	· 국고보조시설 - 장애아 9명당 치료사 1인 인건비지원 · 민간시설 - 장애아 5명당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별도배치 시 인건비지원(최대 5명까지)
	종교시설 교사인건비	· 종교시설 내 보육시설 교사인건비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편비	· 시설장(국고보조시설) : 월 160,000원 · 보육교사(국고보조시설) : 월 110,000원 · 보육교사(민간시설) : 월 165,000원 · 보육교사(방과후 교사) : 월 80,000원
3. 운영비 지원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	· 0세아: 월 20만원/반, 1~2세아: 월 15만원/반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비	· 반당 이동수 16명 이상일 때(최대 3개 반까지 지원) · 운영비: 월 550천원/반당(국공립), 월 1,150천원/반당(기타 지정시설) · 보조교사: 월 300천원/반당
	장애아 방과후반 운영비	· 장애아 5명당 1개 반 편성(최대 3개 반까지 지원) · 운영비: 월 550천원/반당(국공립), 월 1,150천원/반당(기타 지정시설) · 보조교사: 월 300천원/반당
	보육프로그램 보급비	· 2004.12.31 현재 설립된 전체 시설, 개소당 100천원/년
	기자재 현대화비	· 1,224개소, 시설당 2,000천원
	보육교사 중식비	· 국고보조시설 보육교사 1인당 월 25천원 · 10일 이상 근무자 전액지원
	구립 가정보육시설 운영비	· 1개소, 월 50만원
	장애아통합보육시설 교재교구비	· 장애아통합시설의 장애아 1인당 월 21천원
4. 특수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비	· 지원대상: 국·공립·법인시설 · 2005년 설치목표 22개소, 개소당 30,000천원 이내
	야간보육시설 설치비	· 지원대상: 국·공립·법인시설 · 2005년 설치목표 7개소, 개소당 20,000천원 이내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비	· 지원대상: 공공시설, 사회복지관, 종교시설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설치 시 · 2005년 설치목표 30개소, 개소당 30,000천원 이내
5. 민간보육시설 서비스개선편비	민간보육시설 서비스개선편비	· 지원대상: 모범적으로 운영중인 민간보육시설 · 시설당 8백만 원 이내(민간어린이집), 5백만 원 이내(가정보육시설)

자료: 서울특별시, 2005년도 보육사업안내

2. 자치구별 보육사업

서울시는 시비보조 보육사업 외에 자치구별로 별도의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구별 보육사업은 구에 따라 예산의 편성과 사업내용에 큰 차이를 보인다. 2004년 자치구별 보육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예산이 가장 큰 구는 강남구(1,818,200천원), 관악구(1,709,032천원), 노원구(1,565,479천원) 순이었으며, 이에 반해 광진구(1,700천원), 중랑구(109,000천원) 등은 예산이 매우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원사업내용은 행사비 및 교육비 지원, 교재교구비 지원, 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간담회 및 표창, 종사자 연수 등이 있었다. 특징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관악구는 자체적으로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보육시설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서대문구와 마포구는 보육시설 냉·난방 연료비 지원을, 노원구는 보육사업 안내책자 제작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보육시설에 별도로 지원이 이루어진 사업은 일부 자치구에서 영아간식비 지원, 취사부인건비 지원, 교사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었다. 특히 강남구는 민간보육시설의 영아반 인건비 지원, 보육교사 교재연구비 및 처우개선비 지급, 방과후 보육교실 지원 등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 보육예산

2005년 서울시 보육사업예산은 2004년 대비 31.1% 증가한 2,035억원이다. 이 중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총 1,92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4.6%를 차지하며, 2004년 대비 32.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및 기타사업은 총 11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4%이며, 2004년 대비 34.6%가 증가했다.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원사업은 보육료 지원으로 국고보조사업과 시비보조사업의 총 지원액이 91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4.8%이며 다음으로 인건비 지원이 870억원으로 42.7%를 차지하여 보육료와 인건비 지원이 전체 예산의 약 87.5%에 이르고 있다.

<표 3-15> 서울시 보육사업예산

단위: 천원, %

구 분		2004 예산	2005 예산	증가율
전 체		140,325,427	203,543,140	31.1
과외시설 이용 프로그램 예산	소 계	129,370,654	192,588,367	32.8
	소 계	82,222,685	145,966,305	43.7
	보육사업 운영	56,558,504	73,126,860	22.7
	종사자인건비	54,839,523	69,999,339	
	민간시설교재교구비	1,710,900	2,739,600	
	차량운영비	8,081	31,320	
	보육교사 보수교육	-	356,601	
	보육료 지원	25,664,181	72,839,445	64.8
	저소득층(1~4층)	16,739,745	46,322,205	
	만5세아 보육료	6,399,270	20,971,440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2,525,166	3,878,280	
	두 자녀보육료지원	-	1,667,520	
	소 계	47,147,969	46,622,062	-1.1
	보육료지원	18,105,417	18,360,305	1.4
	전액면제 보육료차액	3,330,924	3,187,158	
	민간시설	2,236,494	2,169,393	
	가정보육시설	1,094,430	1,017,765	
	두 자녀보육료지원	845,130	-	
	셋째아 보육료	13,929,363	15,173,147	
시비보조사업	보육시설운영 지원	11,874,368	11,287,070	-5.2
	영, 장애아 간식비	212,258	-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	9,098,640	9,098,640	
	0세 아동 운영비	2,053,080	2,053,080	
	1~2세 아동	7,045,560	7,045,560	
	가정보육시설교재교구비	293,400	63,680	
	보육프로그램보급	218,550	218,550	
	보육교사 중식비	675,000	675,000	
	보육교사 재교육비	147,720	-	
	구립놀이방 운영지원	4,800	7,200	
	보육기자재현대화지원	1,224,000	1,224,000	

구 분			2004 예산	2005 예산	증가율
장애인복지사업 비	시·군·구·자치 비	종사자인건비	17,168,184	16,974,687	-1.1
		소규모취사부	778,320	817,800	
		영아전담 간호사	244,688	256,476	
		0세, 장애아 추가교사	1,582,906	1,662,672	
		비상근교사	297,360	540,000	
		야간,24시간시설교사	1,596,735	1,680,360	
		대체인력비	772,875	772,875	
		보육교사 처우수당	10,186,380	9,489,960	
		시설장	552,600	552,600	
		국공립	2,969,400	2,851,800	
		민간시설	6,664,380	6,085,560	
		종교시설 교사 인건비	847,620	893,244	
		야간보육 시간외 수당	861,300	861,300	
장애인복지사업 기타사업비 및 기타사업	소 계		7,167,426	10,954,773	34.6
	국·공립·자치 비	소 계	1,830,304	4,954,760	63.1
		보육시설기능보강비	1,830,304	4,834,760	62.1
		신축비	1,339,800	3,282,510	
		증개축비	133,980	1,004,850	
		개보수비	341,649	420,000	
		장비비	14,875	22,400	
		보육정보센터설치비	-	105,000	
		보육정보센터사업비	-	120,000	
	시·군·구·자치 비	소 계	5,337,122	6,000,013	11.0
		보육사업지원자금조성육성	1,978,850	2,186,250	9.5
		보육시설 서비스개선비	1,957,250	2,145,000	
		기타보육사업 지원	21,600	41,250	
		영아,24시간 프로그램 확대	105,000	105,000	-
		영아전담시설설치비	30,000	30,000	
		야간24시간 설치비	75,000	75,000	
		방과후교실 확대	2,385,240	2,710,980	12.0
		방과후교실 운영비	1,818,900	2,127,420	
		국공립시설	436,500	445,500	
		지정시설	1,382,400	1,681,920	
		처우개선비	116,340	133,560	
		방과후교실 설치비	450,000	450,000	
		장애아통합시설 활성화	868,032	997,783	13.0
		장애아통합시설 설치비	165,000	330,000	
		운영비 지원	703,032	667,783	
		장애아교재교구비	63,000	63,000	
		특수교사 인건비	409,032	604,783	
		민간시설장애아반운영비	231,000	-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4. 인력관리

서울시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수교육과정은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으로 구분된다. 일반직무교육은 보육업무 경력이 일정기준 이상인 교사와 시설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특별직무교육은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 과정으로 나뉘어 이수희망자에 한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표 3-16>

<표 3-16> 보수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보수교육과정	일반직무교육	보육교사과정	현직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2년 경과한 보육교사	40시간	매3년마다 (실경력으로)
		시설장신규과정	현직 종사 시설장으로서 시설장 근무 담당 첫해인 자	40시간	시설장 첫째
		시설장 경력자과정	현직 보육시설장으로서 보육업무 경력 만2년 이상 경과한 자	40시간	매3년마다 (시설장 실경력으로)
	특별직무교육	영아보육과정	일반직무교육대상자로 영아보육담당 또는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시설장	40시간	이수희망자
		장애아보육과정	일반직무교육대상자로 장애아보육담당 또는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시설장	40시간	이수희망자
		방과후과정	일반직무교육대상자로 방과후보육담당 또는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시설장	40시간	이수희망자
승급	1급 승급교육과정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2년 이상이 경과한 자 및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육경력 만6개월 경과자	80시간	이수희망자

자료: 서울특별시, 2005년도 보육사업안내

5. 지도·감독 및 관리

서울시는 보육시설이 일정 수준의 서비스 질을 유지하도록 지도, 감독하기 위해 보육시설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보육시설 서비스 평가의 추진방향은 우선 시설중심이 아닌 수요자중심의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서비스 평가를 통해서 우수 보육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고, 미흡한 시설은 일정한 표준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여 보육시설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서비스 평가는 전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되, 희망시설을 중심으로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05년의 평가대상은 총 1,500개소이며, 4월에서 9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자치구별로 총 보육시설의 1/3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가급적 정원 규모별로 대형, 중형, 소형시설이 안배되도록 선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평가과정은 3차로 나뉘어져 1차에서는 보육시설 자체평가가 이루어져 평가지표에 의한 분야별 자체 평가 후 미흡한 사항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며, 2차 평가에서는 1차 평가결과를 토대로 자치구별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3차에서는 학부모, 보육교사, 보육전문가, 교수, 공무원 등 3~5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표 3-17> 평가대상

단위 : 개소

계	2004년	2005년	2006년
4,761	1,331	1,500	1,930

자료: 서울특별시, 2005년도 보육사업안내

평가항목은 <표 3-18>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보육시설 및 보육환경, 일상적 양육과 상호작용, 보육과정 운영, 건강관리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운영관리,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등 7개 평가영역에서 총 67문항으로 구성되며, 어린이집과 가정보육시설로 구분하여 평가항목 구성에 차이가 있다.

<표 3-18> 평가항목

평가영역	어린이집			가정보육시설		
	문항수	총점	%	문항수	총점	%
1. 보육시설 및 보육환경	6	18	9	5	15	7
2. 일상적 양육과 상호작용	6	18	9	6	18	9
3. 보육과정 운영	10	30	15	10	30	15
4. 건강관리 및 안전	25	75	37	26	78	39
5.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4	12	6	4	12	6
6.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운영관리	14	42	21	14	42	21
7.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2	5	3	2	5	3
총 계	67	200	100	67	200	100

자료

: 서울특별시, 2005년도 보육사업안내

서울시는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로 모든 시설이 일정수준 이상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육시설에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하여 자율적인 질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주요 시비보조사업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보육시설로 선정하여 홍보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부진시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 미흡사항을 개선하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일정수준에 이를 때까지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6.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서울시는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보육의 기반을 확립을 위한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체계로서 서울시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육정보센터의 주기능은 첫째 보육정보 제공으로, 보육관련 정책자료, 보육활동자료, 학회지, 연구논문, 보육프로그램, 부모역할지원, 상담, 아동관련도서, 비디오, CD 등 각종 보육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온라인상

으로 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보육정보실과 상담실, 교육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정보지를 연 4회 발간하고 있다. 또한 보육시설 정보망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각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보육시설 info-map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전문인력 뱅크에서는 가정, 보육기관, 보육전문인력 간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필요한 시간에 맞춰 보육인력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2005년 서울시 보육정보센터의 추진사업 내용은 <표 3-19>과 같다.

<표 3-19>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2005 추진사업

구 분	사 업 명	세부소요액
정보사업 총171개의 콘텐츠 보유	연령별·특성별 보육계획안	· 연령별 교실운영지침, 연령별 보육계획안제공 · 특성별 보육프로그램 제공, 교사 자료실 운영 · 특별활동프로그램 제공
	좋은 보육프로그램 콘텐츠 제공	· 좋은 보육시설 환경 동영상 제공· 일과 운영 및 일상적인 상호작용 동영상 제공 · 도안, 사진 콘텐츠 제공, 명화감상 콘텐츠 제공
	보육프로그램	· 6개 프로그램제공(건강, 안전, 부모지원, 지역사회연계, 교사지원, 좋은 보육환경, 아동권리와 문화 등)
	해외보육동향	·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등의 해외 보육정보 제공
	전자책도서관	· 총 5,800여권의 전자책 제공
상담사업	ON line : 사이버 상담, 이메일 상담 OFF line : 전화상담, 전문가방문상담	· 부모, 시설, 교사, 장애아를 위한 상담실 운영 · 전문가 방문상담 운영
보육전산망 구축사업	보육시설 infor-map 시스템 운영 (동영상 강좌 개설)	· 전체 보육시설 정보지도 제공 (시스템구축 중) · 보육시설 간 Network 형성
	보육 전문인력 Bank 운영	· 보육관련 전문인력 DB구축
교육사업	정기 센터강좌, 센터특강	· 정기센터강좌 24회 개설 · 센터특강 6회 개설
보육정보실 운영사업	자료검색 및 도서열람 보육정보실 프로그램 운영	· 보육관련 자료구입 및 편집 · 3종 자료집 제작(상담백서 외 2종) · 4회 보육기획전시
문화활동 및 홍보	문화행사	· 세계 놀이의 날
	보육정보지 Click Children	· 보육정보지 연 4회 발행
장난감 도서관	장난감 무료대여 및 교환 Web 사이트 운영	· 5,000여점 장난감 보유 · 자유놀이실 무료 운영 · 월 2회 아동발달 부모상담 · 월 2회 장난감 만들기 운영

자료: 서울특별시, 2005년도 보육사업안내

제Ⅳ장 서울시 민간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실태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실태조사 결과

제3절 민간보육시설의 문제점과 대안
: 심층인터뷰와 간담회 결과

제Ⅳ장 | 서울시 민간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실태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서울시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실태와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민간보육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시설장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민간보육시설의 운영 및 서비스 실태를 파악하고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서울시 민간보육시설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서울시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의 기본 자료로써 활용되고자 하였다.

2. 주요 조사내용

1) 서울시 보육시설의 일반적 실태조사

보육시설의 설립사항 및 현황, 물리적 환경, 보육아동 현황, 종사자 현황, 시설운영사항, 지역사회 연계, 보육료와 수입·지출 관련 재정사항 등에 대해 파악하였다.

2) 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일반사항 및 요구조사

본 조사에서는 보육시설의 일반실태와 관련된 사항 외에 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욕구파악을 위해 조사표를 구분하여 구성·조사하였다.

시설장 조사에서는 즉 성별, 연령, 학력 및 전공 사항 등과 같은 시설장 관련 일반사항과 시설운영 고려대상 및 애로사항·지원요구 등 시설운영 관련사항, 그리고 보육정책에 대한 의견 등이 파악되었다.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경우는 근무환경, 고용조건, 교사교육, 보육서비스에 대한 평가, 업무만족도 등에 관한 의견 등을 조사하였다.

대상별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의 조사표 구성내용<표 4-1>과 같다.

<표 4-1> 조사표 구성내용

시설장 조사내용		보육교사 조사내용	
일반현황	시설실태 일반사항	근무환경	교사 대 아동 비율
	종사자 현황		보조교사 유무
일반운영	운영시 고려대상 및 애로사항	고용조건	근무시간
	지원요구		월급여
	보육정보센터		처우관련 제도
	타시설 및 지역사회 연계		계약방식
재정	수입 및 지출 내역	교사교육	교사복지향상을 위한 제안
	보육료		보수 및 승급교육
보육정책에 관한 의견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보육서비스에 대한 평가	대체교사 유무
	평가인증제	업무만족도	보육서비스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
			보육교사로서의 만족도
			이직의사와 이유

3. 조사의 기본설계

1) 조사대상 시설 및 대상자 선정

본 조사는 서울시 민간보육시설의 시설장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로부터 소속된 민간개인시설의 시설장과 보육교사에 관한 리스트를 제공받았다. 25개구로 배분된 각 지회를 중심으로 시설장 550명과 보육교사 850명에 해당하는 회송우편봉투가 포함된 조사표가 전달되었고, 1차 조사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조사기간 동안 분석에 필요한 조사표가 충분히 수거되지 않은 관계로 다시 무작위 표본추출방식에 의해 시설장 100명에 한해 2차 추가조사를 실시했다.

따라서 본 조사에는 1, 2차 조사를 합해 총 시설장장 650명과 보육교사 850명에 게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시설장 222명, 보육교사 267명의 조사표가 최종 수거·분석에 사용되었다.

2) 조사방법

(1) 자료수집방법 및 도구

조사설계, 조사표의 개발은 연구진이 담당했으며, 표본추출 및 조사표 배포는 서울시보육시설 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에 의뢰·담당되었다. 설문조사는 연합회에 소속된 25개구 각 지회에 설문지를 배송, 해당 지회를 중심으로 설문지가 할당·배분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회송우편을 동봉한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가 각 조사대상자들에게 전달되었고, 응답자 자기보고형식으로 조사되었다.

(2) 조사시기

1차 조사기간은 2005년 7월 25일부터 시작해서 8월 6일까지 마감되었으나, 분석에 필요한 조사표가 충분히 수거되지 않은 관계로 시설장 조사가 2차 조사로서 추가 실시되었다<표 4-2>참조.

<표 4-2> 조사대상(표본수) 및 조사기간

구 분	조사대상 및 표본수	조사기간
1차 조사	시설장 : 550명 보육교사 : 850명	2005년 7월 25일부터 8월 6일까지
2차 추가조사	시설장 100명	2005년 8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4. 조사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Raw Data)는 Coding, Punching, Data Cleaning, Editing 과정을 거쳐 IBM 호환 Pentium PC를 사용하여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12.0을 통해 통계처리 되었다. 자료분석을 위해 빈도분석, 평균비교, 교차분석 등의 방법이 활용되었다.

5. 조사대상자의 일반특성

1) 시설장 응답자

(1) 성별

시설장의 성별분포를 보면 여자가 94.6%이고, 남자가 5.4%로 여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전국조사에서 민간개인시설의 남자시설장 비율이 7.8%로 조사된 것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이다.

시설규모별로 살펴보면 40인 이상 시설이 39인 이하 시설에 비해 남성시설장의 비율이 7.1%대 4.3%로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연령

조사대상 보육시설 시설장의 평균연령은 41.25세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국조사 내 민간개인시설 시설장의 평균연령인 38.89세보다 약 2.5세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최종학력

학력분포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전체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38.5%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전문대학 졸업’(26.7%), ‘고등학교 졸업’(11.3%), ‘대학원 졸업’(9.0%)순 이었고, ‘대학교 재학’과 ‘대학원 재학’이 각각 7.2%로 나타났다.

시설규모별로 살펴보면 40인 이상 규모시설의 시설장의 경우 대학원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27.4%로 39인 이하 규모시설(9.4%)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졸학력의 경우는 40인 이상 시설이 3.6%, 39인 이하 시설의 경우는 16.1%인 것으로 조사되어 규모가 큰 시설인 경우 시설장의 학력수준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상 조사대상 시설장의 일반적 특성을 시설규모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3>과 같다.

<표 4-3> 시설규모별 조사대상 시설장의 일반적 특성

단위:%(개소)

구 분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성별	여자	95.7(132)	92.9(78)	94.6(210)
	남자	4.3(6)	7.1(6)	5.4(12)
	계	100.0(138)	100.0(84)	100.0(222)
연령	평균	41.01(133)	41.64(81)	41.25(214)
학력	고졸	16.1(22)	3.6(3)	11.3(25)
	전문대졸	29.9(41)	21.4(18)	26.7(59)
	대학교 재학	3.6(5)	13.1(11)	7.2(16)
	대학교졸	40.9(56)	34.5(29)	38.5(85)
	대학원 재학	3.6(5)	13.1(11)	7.2(16)
	대학원졸	5.8(8)	14.3(12)	9.0(20)
	계	100.0(137)	100.0(84)	100.0(221)

2) 보육교사 응답자

(1) 성별

조사대상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인 경우가 99.2%, ‘남성’은 0.8%에 불과했다. 이는 여성 보육교사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전국조사 결과(여성: 99.0%, 남성 1.0%)와 거의 동일하다.

(2) 연령

보육교사의 연령별 구성을 살펴보면, ‘25~29세’가 58.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20~24세’(25.1%), ‘30~34세’(17.6%), ‘35~40세’(14.5%), ‘40~44세’(7.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전체 조사대상 보육교사의 85% 정도가 20대에 해당하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전국조사 결과 중 민간개인보육시설의 20대 보육교사 비

율이 60%수준인 것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을 보여준다.

(3) 최종학력

보육교사의 학력특성의 살펴보면, ‘전문대졸’(45.3%)인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고졸’(32.8%), ‘대학교 졸’(13.7%), ‘대학교 재학’(5.9%), ‘대학원 졸’(2.0%), ‘대학원 재학’(0.4%)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보육교사의 일반적 특성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4>와 같다.

<표 4-4> 조사대상 보육교사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구 분		본 조사
성별	여자	99.2(260)
	남자	0.8(2)
	계	100.0(262)
연령	만 20~24세	25.1(64)
	만 25~29세	58.4(85)
	만 30~34세	17.6(45)
	만 35~40세	14.5(37)
	만 40~44세	7.1(18)
	만 45~50세	1.2(3)
	만 50~54세	1.2(3)
	만 55~60세	0.0(0)
	만 60세 이상	0.0(0)
	계	100.0(255)
학력	고졸	32.8(84)
	전문대졸	45.3(116)
	대학교 재학	5.9(15)
	대학교졸	13.7(35)
	대학원 재학	0.4(1)
	대학원졸	2.0(5)
	계	100.0(256)

제2절 실태조사 결과

1. 민간보육시설의 설립·운영 특성

1) 보육시설 설립년도

조사에 응답한 전체 보육시설의 설립년도를 살펴보면, ‘1990년대’에 61.3%, ‘2000년대’에 36.3%가 설립되어 총 97.6%에 이르는 시설이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설립되었다. 이는 여성부 전국조사(2004) 결과에서 민간개인보육시설인 경우, ‘1990년대’에 48.1%, ‘2000년대’에 51.0%로 총 99.1%가 설립되었다는 보고와 유사하다. 이는 1995년 이후 실시된 보육시설 설립인가가 신고제로 완화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급격한 보육시설의 양적증대현상이 나타났으며, 서울시 민간보육시설 역시 동일한 이유로 유사기간의 수적팽창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표 4-5>.

<표 4-5> 시설규모별 설립년도

단위: %(개소)

구 분	본 조사			전국 조사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국·공립	민간개인	전체
1960년대 이전	0.0 (0)	0.0 (0)	0.0 (0)	0.1	0.1	0.2
1970년대	0.0 (0)	1.2 (1)	0.5 (1)	0.9	0.1	0.6
1980년대	1.5 (2)	2.5 (2)	1.9 (4)	34.1	0.7	3.2
1990년대	56.5 (74)	69.1 (56)	61.3 (130)	54.5	48.1	45.2
2000년대	42.0 (55)	27.2 (22)	36.3 (77)	10.3	51.0	50.9
계	100.0 (131)	100.0 (81)	100.0 (212)	100.0 (1,163)	100.0 (7,662)	100.0 (16,609)

2) 보육대상유형

시설규모별 보육대상유형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일반보육시설’이 81.7%로 가장 많았고, ‘방과후 통합시설’(6.4%), ‘영아전담’(5.9%), ‘장애아통합’(5.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9인 이하 규모시설인 경우에는 ‘일반보육시설’(81.0%)이 가장 많았고, ‘영아전담 시설’이 9.5%로 나타난 반면, 40인 이상 규모시설의 경우는 ‘일반보육시설’(82.9%)에 이어 ‘방과후 통합시설’이 8.5%로 나타나 시설규모 간 차이를 보였다. <표 4-6>

<표 4-6> 시설규모별 보육대상유형

단위: %(개소)

구 분	본 조사			전국 조사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국·공립	민간개인	전체
일반보육시설	81.0 (111)	82.9 (68)	81.7 (179)	77.7	82.1	79.1
영아 전담	9.5 (13)	0.0 (0)	5.9 (13)	4.4	5.1	8.4
장애아 전담	0.0 (0)	0.0 (0)	0.0 (0)	1.4	0.3	0.6
장애아 통합	3.6 (5)	8.5 (7)	5.5 (12)	10.4	4.3	4.4
방과후 전담	0.7 (1)	0.0 (0)	0.5 (1)	1.8	0.4	0.8
방과후 통합	5.1 (7)	8.5 (7)	6.4 (14)	4.3	7.8	6.6
계	100.0 (137)	100.0 (82)	100.0 (219)	100.0 (1,173)	100.0 (7,792)	100.0 (16,784)

3) 시설규모

조사에 응답한 보육시설의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시설의 규모를 살펴보면, ‘21-39명’이 61.7%(137개소)로 가장 많고, ‘60-79명’(12.6%), ‘40-59명’(11.7%), ‘80-99명’(9.9%), ‘100명 이상’(3.6%) 그리고 ‘21명 미만’(0.5%)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

대상 총 222개소 중 39인 이하 규모시설은 62.2%(138개소)이며, 40인 이상 규모시설은 37.8%(84개소)에 해당된다. <표 4-7>

<표 4-7> 시설규모

단위: %(개소)

구 분	본 조사	전국 조사		
	전체	국·공립	민간개인	전체
21명 미만	0.5 (1)	2.1	5.6	36.3
21-39명	61.7 (137)	4.7	60.4	30.3
40-59명	11.7 (26)	24.0	12.1	9.8
60-79명	12.6 (28)	24.1	7.7	7.5
80-99명	9.9 (22)	22.7	6.8	7.7
100명 이상	3.6 (8)	22.4	7.4	8.4
계	100.0 (222)	100.0 (1,157)	100.0 (7,614)	100.0 (16,431)

2. 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

1) 보육시설 주변의 생활수준

보육시설 주변의 생활수준을 조사한 결과 ‘중하류층’(44.5%), ‘중류층’(22.7%), ‘저소득층’(20.5%), ‘중상류층’(11.4%), ‘상류층’(0.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 시설 중 2군데 중 한 곳은 ‘중하류층’ 생활환경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5군데 중 한 곳은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국조사(2004)와 비교해볼 때, 생활계층이 다소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시설규모별로 살펴보면, 40인 이상 규모시설인 경우 ‘중하류층’(41.0%), ‘중류층’(26.5%), ‘저소득층’(18.1%), ‘중상류층’(14.5%) 순으로 역시 ‘중하류층’ 비율이 가장 높았다. 39인 이하 규모시설은 ‘중하류층’(46.7%), ‘저소득층’(21.9%), ‘중류층’(20.4%), ‘중상류층’(9.5%), ‘상류층’(1.5%) 순으로 나타나 40인 이상 규모시설보다 ‘중하류층’과 ‘저소득층’ 생활수준 주변에 시설이 위치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표 4-8> 시설규모별 보육시설 주변의 생활수준

단위: %(개소)

구 분	본 조사			전국 조사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국·공립	민간개인	전체
상류층	1.5 (2)	0.0 (0)	0.9 (2)	0.4	0.3	0.4
중상류층	9.5 (13)	14.5 (12)	11.4 (25)	4.2	6.5	8.0
중류층	20.4 (28)	26.5 (22)	22.7 (50)	19.4	27.3	30.2
중하류층	46.7 (64)	41.0 (34)	44.5 (98)	56.4	50.7	47.7
저소득층	21.9 (30)	18.1 (15)	20.5 (45)	19.6	15.1	13.8
계	100.0 (137)	100.0 (83)	100.0 (220)	100.0 (1,172)	100.0 (7,807)	100.0 (16,849)

2) 보육시설 건물형태

조사대상 보육시설의 건물형태를 살펴보면, ‘상가건물’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4.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단독건물’(27.2%), ‘종교단체 건물’(12.0%), ‘아파트’(6.5%), ‘기타’(6.0%), ‘주택’(3.7%)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서울시내 조사대상 보육시설의 절반가량이 상가건물을 이용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전국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민간 개인시설의 42.9%가 단독건물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서울시의 경우 전국단위의 민간개인시설과 비교해 볼 때, 단독건물에 의한 운영보다는 상가임대방식을 통한 시설운영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시설규모별로도 서울시 보육시설 운영 건물형태는 차이를 보이는데, 39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인 경우는 상가건물에서의 운영비율이 55.9%로 40인 이상 시설의 25.9%보다 약 두 배 가량의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반면 40인 이상 시설의 경우는 단독건물의 비율이 39인 이상 시설의 18.4%보다 약 24%가 높은 42.0%로 나타내고 있다. 이상에서 서울시 민간보육시설 중 39인 이하 규모시설은 상가건물에서, 40인 이상 규모시설은 단독건물형태를 통해서 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9>

<표 4-9> 시설규모별 건물형태

단위: %(개소)

구 분	본 조사			전국 조사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국·공립	민간개인	전체
단독건물	18.4 (25)	42.0 (34)	27.2 (59)	72.4	42.9	35.3
아파트	7.4 (10)	4.9 (4)	6.5 (14)	3.0	6.6	27.9
주택	4.4 (6)	2.5 (2)	3.7 (8)	1.4	5.1	6.0
상가건물	55.9 (76)	25.9 (21)	44.7 (97)	1.1	31.2	17.4
종교단체건물	6.6 (9)	21.0 (17)	12.0 (26)	0.9	5.7	5.7
기타	7.4 (10)	3.7 (3)	6.0 (13)	21.2	8.6	7.7
계	100.0 (136)	100.0 (81)	100.0 (217)	100.0 (1,173)	100.0 (7,818)	100.0 (16,863)

3) 보육시설의 임대여부

보육시설의 임대여부에 관해 전체 조사시설의 절반에 해당하는 48.3%의 시설이 월세를 내는 ‘건물일부임대’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자가’(31.1%)인 경우가 많았고, ‘건물일부임대-전세’(8.6%), ‘건물전체 임대-월세’(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조사(2004)의 민간개인시설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서울시의 경우 ‘자가시설’의 비율이 8.8%가량 적게 나타났고, ‘건물일부임대-월세’의 경우 약 15%가량 더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조사대상인 서울시 보육시설의 경우 전국시설에 비해 ‘자가시설’보다는 ‘월세를 내는 임대형태’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시설규모별로 살펴보면, 39인 이하 소규모 시설에서는 60.6%가 ‘건물임대-월세’ 형태로 운영되는 반면 40인 이상 시설의 경우에는 ‘자가시설’인 경우가 54.5%로 높게 나타났다.

‘자가’시설과 ‘임대시설’로 나누어 분류할 경우 본 조사에서 전체 조사시설의 약 70%, 39인 이하 소규모 시설인 경우는 대략 80%, 40인 이상 규모시설의 경우는 40-50%가량이 임대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 내 보육시설의 경우 ‘임대시설’의 운영비율이 높고, 또한 시설규모에 따라 ‘자가시설’ 또는 ‘임대시설’인지의 여부에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4-10>

<표 4-10> 시설규모별 임대여부

단위: %(개소)

구 분	본 조사			전국 조사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국·공립	민간개인	전체
자가 (임대 아님)	17.4 (23)	54.5 (42)	31.1 (65)	67.0	39.9	52.1
건물전체임대 (전세)	0.8 (1)	2.6 (2)	1.4 (3)	0.5	3.7	3.1
건물전체임대 (월세)	6.1 (8)	7.8 (6)	6.7 (14)	0.3	5.9	3.3
건물일부임대 (전세)	10.6 (14)	5.2 (4)	8.6 (18)	0.7	12.1	7.7
건물일부임대 (월세)	60.6 (80)	27.3 (21)	48.3 (101)	0.7	32.8	18.8
아파트임대 (전세)	0.8 (1)	0.0 (0)	0.5 (1)	0.2	0.6	5.8
아파트임대 (월세)	0.8 (1)	0.0 (0)	0.5 (1)	0.1	1.6	3.5
기타	3.0 (4)	2.6 (2)	2.9 (6)	30.7	3.4	5.8
계	100.0 (131)	100.0 (77)	100.0 (209)	100.0 (1,048)	100.0 (7,749)	100.0 (16,519)

4) 놀이터의 유무

전체 조사시설의 놀이터 유무현황(복수응답)을 살펴보면, ‘활용가능 놀이터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4.6% 외에 대부분의 시설이 실내, 실외, 옥상 혹은 인근 놀이터 등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응답내용을 살펴보면, ‘실내놀이터’의 이용률이 56.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근 놀이터’ 활용이 36.1%, ‘실외 놀이터’ 이용은 25.5%, 마지막으로 ‘옥상놀이터’의 활용은 3.7%에 불과했다. 전국조사에서 나타난 민간개인시설의 놀이터 시설 사용결과와 비교해보면 서울시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실내놀이터’의 이용 비율이 20%가량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실외놀이터’

의 경우는 10%가량 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서울시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아동의 놀이공간으로서 실내놀이터의 활용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시설규모별로 살펴보면, ‘실내놀이터’의 활용이 가장 많은 가운데 40인 이상 규모시설의 경우 ‘실외놀이터’의 이용률이 36.1%로 39인 이하 규모시설의 18.8%보다 약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는 40인 이상 규모시설의 경우 대부분 상가임대형태인 39인 이하 소규모시설보다는 ‘자가’ 건물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실외놀이터의 확보가 더 용이한 결과로 보인다. <표 4-11>

<표 4-11> 시설규모별 놀이터 유무(복수응답)

단위: %(개소)

구 분		본 조사			전국 조사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국·공립	민간개인	전체
있음	실내 놀이터	51.9 (69)	63.9 (53)	56.5 (112)	31.8 (50)	38.3 (418)	39.6 (942)
	실외 놀이터	18.8 (25)	36.1 (30)	25.5 (55)	70.7 (111)	34.5 (376)	30.9 (735)
	옥상 놀이터	2.3 (3)	6.0 (5)	3.7 (8)	14.6 (23)	4.1 (45)	4.2 (100)
	인근 놀이터활용	38.3 (51)	32.5 (27)	36.1 (78)	39.6 (26)	31.6 (344)	39.6 (942)
활용가능 놀이터 없음		6.8 (9)	1.2 (1)	4.6 (10)	12.9 (7)	15.6 (170)	12.9 (308)

5) 보육시설 비상대피시설

2층 이상 보육시설 대피시설 유무(복수응답)를 살펴보면, ‘비상계단’(51.7%), ‘경사강하식 구조대 및 완강기 등의 기타시설’(23.8%), ‘철제 미끄럼대’(15.7%), ‘FRP소재 미끄럼대’(7.6%) 순으로 나타났고, 대피시설이 없는 경우는 8.1%였다. 전국조사의 민간개인시설 조사결과와 비교해볼 때, 대피시설 미설치 보육시설의 비율은 크

게 차이난다. 전국조사의 경우 40%이상의 시설이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고 있지 않은 반면, 본 조사의 경우는 시설 10개소 중 9개 이상이 다양한 대피시설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은 갖추고 있다고 응답했다.

시설규모별로 볼 때, 39인 이하 시설보다 40인 이상의 시설의 비상대피시설 미설치 비율이 낮게 나타나 규모가 큰 시설의 경우에 비상대피시설의 설치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4-12>

<표 4-12> 시설규모별 2층 이상 보육시설 비상대피시설(복수응답)

단위: %(개소)

구 분	본 조사			전국 조사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국·공립	민간개인	전체
비상계단	45.7 (48)	61.2 (41)	51.7 (89)	46.9 (46)	36.0 (223)	38.2 (366)
미끄럼대 (FRP)	5.7 (6)	10.4 (7)	7.6 (13)	12.2 (12)	6.5 (40)	6.9 (66)
미끄럼대 (철제)	13.3 (14)	19.4 (13)	15.7 (27)	17.3 (17)	8.1 (50)	8.8 (84)
기타 (경사강하식 구조대, 완강기 등)	27.6 (29)	17.9 (12)	23.8 (41)	8.2 (8)	15.7 (97)	14.9 (143)
미설치	11.4 (12)	3.0 (2)	8.1 (14)	26.5 (26)	40.4 (250)	38.4 (368)

3. 보육아동

1) 정원과 현원

전체 조사대상 시설의 정원과 현원을 살펴보면, 정원은 10,788명(222개소)이고, 현원은 9627명(219개소)이었다. 정원평균은 약 48.59명, 현원 평균은 43.96명으로 정원대비 현원비율은 정원충족률은 89.2%로 전국조사(2004)에서의 민간개인시설의 88.7%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시설규모별로 살펴보면, 39인 이하 규모시설의 정원은 4441명(138개소), 현원 3908명(136개소)으로 정원평균은 32.18명, 현원평균은 28.74명으로 88.0%의 정원충족률을 나타냈다. 40인상 규모시설의 경우에는 정원 6347명(84개소), 현원 5719명(83개소)으로 정원평균 75.56명, 현원평균 68.90명으로 90.1%의 정원충족률을 보여주었다.

<표 4-13>

<표 4-13> 시설규모별 정원과 현원

단위: 명(개소), %

구 분	본 조사			전국 조사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국·공립	민간개인	전체
정원	4441 (138)	6347 (84)	10788 (222)	90,336	331,017	664,738
정원평균	32.18	75.56	48.59			
현원	3908 (136)	5719 (83)	9627 (219)	86,718	293,455	592,542
현원평균	28.74	68.90	43.96			
정원충족률	88.0	90.1	89.2	96.0	88.7	89.1

2) 보육료 지원 아동수

보육료 지원 아동수를 살펴보면, 1층 차등보육료 지원아 수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 시설의 과반수 이상이 1층 차등보육료 지원아를 보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층 차등보육료 지원아의 경우는 보육하고 있는 시설이 이보다 더 많아서 70% 이상의 시설에서 2층 차등보육료 지원아를 보육하고 있었다. 특히 40인 이상 규모 시설에서 2층 차등보육료 지원아를 6명 이상 보육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의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등보육료 지원은 궁극적으로 보육아동의 부모에 대한 지원이며 시설지원의 성격이 약하다는 점과 정부지원시설의 보육

료에 근거한 차등보육료 지원액과 실 보육료 차액으로 인한 시설의 부담을 고려할 때 민간시설에서 차등보육료 지원으로 인한 부담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4>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수

단위: %(개소)

구 분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0명	1~2명	3~5명	6~10명	10명 초과	전체	0명	1~2명	3~5명	6~10명	10명 초과	전체	0명	1~2명	3~5명	6~10명	10명 초과	전체
1층 차등보육료 지원아 수	50.7 (70)	24.6 (34)	15.2 (21)	6.5 (9)	2.9 (4)	100.0 (138)	31.0 (26)	19.0 (16)	28.6 (24)	17.9 (15)	3.6 (3)	100.0 (84)	43.2 (96)	22.5 (50)	20.3 (45)	10.8 (24)	3.2 (7)	100.0 (222)
2층 차등보육료 지원아 수	34.1 (47)	21.0 (29)	24.6 (34)	16.7 (23)	3.6 (5)	100.0 (138)	17.9 (15)	19.0 (16)	22.6 (19)	20.2 (17)	20.2 (17)	100.0 (84)	27.9 (62)	20.3 (45)	23.9 (53)	18.0 (40)	9.9 (22)	100.0 (222)
3층 차등보육료 지원아 수	47.8 (66)	33.3 (46)	15.2 (21)	2.9 (4)	0.7 (1)	100.0 (138)	35.7 (30)	21.4 (18)	33.3 (28)	9.5 (8)	0.0 (0)	100.0 (84)	43.2 (96)	28.8 (64)	22.1 (49)	5.4 (12)	0.5 (1)	100.0 (222)
4층 차등보육료 지원아 수	68.1 (94)	29.0 (49)	2.9 (4)	0.0 (0)	0.0 (0)	100.0 (138)	38.1 (32)	40.5 (34)	17.9 (15)	3.6 (3)	0.0 (0)	100.0 (84)	56.8 (126)	33.3 (74)	8.6 (19)	1.4 (3)	0.0 (0)	100.0 (222)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아 수	37.7 (52)	26.1 (36)	24.6 (34)	8.0 (11)	3.6 (5)	100.0 (138)	21.4 (18)	16.7 (14)	17.9 (15)	19.0 (16)	25.0 (21)	100.0 (84)	31.5 (70)	22.5 (50)	22.1 (49)	12.2 (27)	11.7 (26)	100.0 (222)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아 수	83.3 (115)	15.9 (22)	0.7 (1)	0.0 (0)	0.0 (0)	100.0 (138)	57.1 (48)	39.3 (33)	3.6 (3)	0.0 (0)	0.0 (0)	100.0 (84)	73.4 (163)	24.8 (55)	1.8 (4)	0.0 (0)	0.0 (0)	100.0 (222)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아수	19.6 (27)	39.1 (54)	35.5 (49)	5.8 (8)	0.0 (0)	100.0 (138)	17.9 (15)	48.8 (41)	23.8 (20)	8.3 (7)	1.2 (1)	100.0 (84)	18.9 (42)	42.8 (95)	31.1 (69)	6.8 (15)	0.5 (1)	100.0 (222)

4. 시설운영

1) 시설장 특성

(1) 전공

시설장 전공의 경우 ‘유아교육학’(37.1%)과 ‘보육학’(15.5%) 전공자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학’(7.5%), ‘교육학’(5.6%), ‘아동복지학’(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인 경우도 22.1%나 되어 시설장 전공특성이 비교적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시설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별 큰 차이는 없으나 40인 이상 규모시설의 경우 ‘유아교육학’ 전공자는 41.5%, ‘보육학’의 경우는 17.1%로 조사되어 39인 이하 규모 시설의 34.4%, 14.5%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규모가 큰 경우 비교적 영유아보육과 직접 관련성이 높은 전공을 배경으로 하는 시설장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5>

<표 4-15> 시설장 전공특성

단위: %(개소)

구 분	본 조사			전국 조사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국·공립	민간	계
보육학	14.5 (19)	17.1 (14)	15.5 (33)	4.1	15.1	15.8
유아교육학	34.4 (45)	41.5 (34)	37.1 (79)	52.0	39.2	41.7
사회복지학	7.6 (10)	7.3 (6)	7.5 (16)	20.8	4.0	9.8
아동(복지)학	3.1 (4)	8.5 (7)	5.2 (11)	3.8	2.4	4.1
가정(관리)학	5.3 (7)	1.2 (1)	3.8 (8)	2.9	4.0	3.1
간호학	0.8 (1)	3.7 (3)	1.9 (4)	0.6	1.3	1.0
교육학	5.3 (7)	6.1 (5)	5.6 (12)	6.1	3.7	5.3
영양학	2.3 (3)	0.0 (0)	1.4 (3)	1.0	1.4	1.1
특수교육학	0.0 (0)	0.0 (0)	0.0 (0)	0.8	0.3	0.7
기타	26.7 (35)	14.6 (12)	22.1 (47)	8.0	20.6	17.7
계	100.0 (131)	100.0 (82)	100.0 (213)	100.0 (1,251)	100.0 (8,338)	100.0 (16,424)

(2) 소지자격

조사대상 보육시설 시설장의 자격사항을 살펴보면 ‘1급 보육교사’(67.3%), ‘2급 보육교사’(17.7%), ‘1·2급 유치원 정교사’(7.7%) 자격을 가진 경우 순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전국조사 결과와 같다.

시설규모별로 살펴보면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40인 이상 규모시설의 시설장의 경우 39인 이하 보육시설의 시설장보다 ‘1급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경우가 8.1%정도 더 높게 나타나며, ‘1·2급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가진 경우도 12.0%로 39인 이

하 시설의 시설장의 5.1%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39인 이하 규모시설의 경우는 ‘2급 보육교사’ 자격이 40인 이상 규모시설(3.6%)보다 훨씬 높은 26.3%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16>

<표 4-16> 시설규모별 시설장 소지자격 특성

단위: %(개소)

구 분		본 조사			전국 조사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국·공립	민간	전체
있음	1급 보육교사	64.2 (88)	72.3 (60)	67.3 (148)	53.3 (612)	56.2 (4,560)	51.1 (8,534)
	2급 보육교사	26.3 (36)	3.6 (3)	17.7 (39)	3.0 (35)	21.5 (1,743)	25.4 (4,241)
	1,2급 유치원 정교사	5.1 (7)	12.0 (10)	7.7 (17)	22.0 (252)	15.0 (1,217)	14.2 (2,371)
	특수교사	0.0 (0)	0.0 (0)	0.0 (0)	0.8 (9)	0.6 (46)	0.6 (97)
	간호사 · 양호교사	0.7 (1)	2.4 (2)	1.4 (3)	2.0 (23)	1.0 (85)	1.2 (204)
	기타	3.6 (5)	8.4 (7)	5.5 (12)	40.3 (464)	14.1 (1,144)	16.2 (2,704)
자격 없음		0.0 (0)	0.0 (0)	0.0 (0)	0.4 (5)	0.9 (74)	0.7 (121)
계		100.0 (137)	100.0 (83)	100.0 (220)	100.0 (1,148)	100.0 (8,120)	100.0 (16,714)

(3) 자격취득 경로

시설장 자격취득 경로의 경우 ‘보육교사 교육원’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49.8%로 가장 높았다.

자격취득 경로는 39인 이하 규모시설의 시설장과 40인 이상 규모시설의 시설장 간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보육교사 교육원’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39인

이하 시설의 시설장은 59.9%, 40인 이상 규모시설의 시설장은 32.5%였다. 반면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 또는 ‘대학원 관련 학과 졸업’을 통학 자격취득의 경우는 40인 이하 시설규모가 각각 27.5%, 8.8%로 조사되어 39인 이하 시설규모의 16.8%, 1.5%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비교적 규모가 큰 시설의 시설장인 경우 대략 60%정도가 ‘보육교사 교육원’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소규모시설의 시설장과는 달리 보다 더 다양한 자격취득 경로를 가진 것으로 알 수 있다. <표4-17>

<표 4-17> 시설규모별 시설장 자격취득 경로

단위: %(개소)

구 분	본 조사			전국 조사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국·공립	민간	전체
보육교사 교육원	59.9 (82)	32.5 (26)	49.8 (108)	5.8	38.7	41.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20.4 (28)	26.3 (21)	22.6 (49)	38.4	33.5	30.6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	16.8 (23)	27.5 (22)	20.7 (45)	29.1	18.0	17.1
대학원 관련학과 졸업	1.5 (2)	8.8 (7)	4.1 (9)	16.1	4.9	5.0
기타	1.5 (2)	5.0 (4)	2.8 (6)	10.6	4.9	6.1
계	100.0 (137)	100.0 (80)	100.0 (217)	100.0 (1,280)	100.0 (8,683)	100.0 (17,733)

(4) 시설장과 대표자의 일치여부

시설장과 대표자의 일치여부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전체시설의 77.9%에서 시설장과 대표자가 일치한다고 보고했다.

시설규모별로는 39인 이하 규모시설의 경우 85.9%, 40인 이상 규모시설인 경우

는 64.6%가 시설장과 대표자의 일치율을 나타냄으로써, 39인 이하 소규모시설인 경우에 40인 이상 규모시설보다 시설장과 대표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볼 수 있다. <표 4-18>

<표 4-18> 시설규모별 시설장과 대표자의 일치여부

단위: %(개소)

구 분	본 조사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대표자가 시설장임	85.9 (116)	64.6 (53)	77.9 (169)
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름	14.1 (19)	35.4 (29)	22.1 (48)

(5) 근무경력

조사대상 보육시설 시설장의 보육시설 총 근무경력과 시설장 경력을 살펴보면, 각각 8년 3개월, 5년 7개월로 나타나서 전국조사 민간개인시설의 7년 8개월, 5년 2개월과 유사한 경력기간을 보여준다.

시설규모별로 살펴보면 39인 이하 규모시설의 시설장인 경우 40인 이상 규모시설의 시설장에 비해 보육시설 총 근무경력에서는 2년 이상 길게 조사되었고, 시설장 경력 면에서는 약 3년 정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표 4-19> 시설규모별 시설장 근무경력

단위: 개월(개소)

구 분	본 조사			전국 조사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국·공립	민간	전체
보육시설 총 근무경력	7년 9개월 (116)	5년 5개월 (75)	8년 3개월 (191)	13년 3개월	7년 8개월	7년 10개월
시설장 경력	8년 11개월 (116)	6년 0개월 (68)	5년 7개월 (184)	7년 7개월	5년 2개월	5년 3개월

2) 종사자 특성

(1) 보육교사의 수

보육교사의 인원수는 전체조사대상 시설에서 '3~4명'의 보육교사를 종사자로 둔 경우가 54.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5~6명 이하'(19.9%), '1~2명 이하'(15.3%), '7명 이상'(10.2%)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규모별로 살펴보면, 40인 이상 규모시설의 경우 '5~6명'의 보육교사가 시설에 종사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44.0%로 가장 많았고, '3~4명'은 29.8%, '7명 이상'이 종사한다고 한 경우는 26.2%였다. 반면 39인 이하 규모시설의 경우는 '3~4명'(70.5%), '1~2명 이하'(25.0%), '5~6명'(4.5%) 순으로 응답되어 3~4명의 보육교사를 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 보육교사 수는 전체조사대상 시설에서는 4.06명, 40인 이상 규모시설은 5.58명, 39인 이하 규모시설인 경우는 3.09명인 것으로 나타나 시설규모에 따라 2~3명 정도 보육교사수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0>

<표 4-20> 시설규모별 종사자수 : 보육교사

단위: %(개소)

구 분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1~2명 이하	25.0 (33)	0.0 (0)	15.3 (33)
3~4명 이하	70.5 (93)	29.8 (25)	54.6 (118)
5~6명 이하	4.5 (6)	44.0 (37)	19.9 (43)
7명 이상	0.0 (0)	26.2 (22)	10.2 (22)
계	100.0 (132)	100.0 (84)	100.0 (216)
평균 보육교사 수	3.09	5.58	4.06

(2) 기타종사자

보육교사 외 기타 종사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시설의 67.6%가 '취사부', 50.5%가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리인력'(7.2%), '사무원'(6.8%), '특수교사'(3.6%), '영양사'(2.7%), '간호조무사'(2.7%), '간호사'(1.8%)등의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시설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시설규모별로 보면, 39인 이하 규모시설에서는 49.3%가 '취사부'를 고용하고 있는데 비해 40인 이상 규모시설인 경우는 97.6%로 거의 대부분의 시설에서 '취사부'를 고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운전기사'가 고용되어 있는 시설비율도 40인 이상 규모시설이 76.2%로 39인 이하 규모시설의 34.8%에 비해 약 2배가량이나 높게 나타났다. 그밖에 '사무원', '관리인력', '영양사', '특수교사' 등의 경우는 39인 이하 시설인 경우는 거의 고용된 사례가 드물게 나타났고, 40인 이상의 시설인 경우에 소수 고용수준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21>

<표 4-21> 시설규모별 기타 종사자 현황(복수응답)

단위: %(개소)

구 분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취사부	49.3 (68)	97.6 (82)	67.6 (150)
영양사	0.7 (1)	6.0 (5)	2.7 (6)
간호사	0.7 (1)	3.6 (3)	1.8 (4)
간호조무사	0.7 (1)	6.0 (5)	2.7 (6)
특수교사	1.4 (2)	7.1 (6)	3.6 (8)
치료사	0.0 (0)	0.0 (0)	0.0 (0)
운전기사	34.8 (48)	76.2 (64)	50.5 (112)
사무원	2.2 (3)	14.3 (12)	6.8 (15)
관리인력	1.4 (2)	16.7 (14)	7.2 (16)
기타인력	5.8 (8)	25.0 (21)	13.1 (29)

(3) 보육교사 초과근무수당 지급여부

조사에 응답한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알아본 결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59.7%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조사 결과 중 민간개인시설에서 보육교사 초과근무수당 지급여부에 관해 73.8%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 보다 낮은 수치이다. 하지만 이는 현재 서울시 내 보육시설의 약 60%가 보육교사의 초과근무에 대해 정당한 수당지급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시설규모별로 살펴보면, 40인 이상 규모시설인 경우에 67.9%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응답함으로써 39인 이하 규모시설(54.7%)보다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지급의 실행이 미진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4-22>

<표 4-22> 설립유형별 보육교사 초과근무수당 지급여부

단위: %(명)

구 분	본 조사			전국 조사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국·공립	민간	전체
지급한다	26.6 (34)	24.4 (19)	25.7 (53)	20.0	11.6	14.7
지급하지 않는다	54.7 (70)	67.9 (53)	59.7 (123)	71.0	73.8	68.9
해당 없음	18.8 (24)	7.7 (6)	14.6 (30)	9.0	14.6	16.4
계	100.0 (128)	100.0 (78)	100.0 (206)	100.0 (155)	100.0 (1,106)	100.0 (2,709)

3) 운영시 고려대상·사항 및 지원요구

(1) 운영시 고려대상

시설운영시 고려대상에 관해 전체 조사대상시설의 75.2%가 ‘영유아’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보육교사’(16.7%), ‘부모’(6.8%), ‘이사장 포함 시설장’(1.4%)순으로 나타났다.

시설규모별로 분석해보면, ‘영유아’가 가장 중요한 고려대상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39인 이하 소규모 시설인 경우 40인 이상 규모시설에 비해 ‘보육교사’나 ‘부모’를 중요한 고려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다. <표 4-23>

<표 4-23> 시설규모별(설립유형별) 운영시 고려대상

단위: %(개소)

구 분	본 조사			전국 조사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국·공립	민간	전체
영유아	73.9 (102)	77.4 (65)	75.2 (167)	85.5	66.2	70.5
보육교사	18.1 (25)	14.3 (12)	16.7 (37)	11.3	24.2	20.0
부모	7.2 (10)	6.0 (5)	6.8 (15)	2.5	6.0	6.2
시설장(이사장포함)	0.7 (1)	2.4 (2)	1.4 (3)	0.6	3.6	3.2
계	100.0 (138)	100.0 (84)	100.0 (222)	100.0 (159)	100.0 (1,145)	100.0 (2,386)

(2) 운영시 고려사항

시설운영시 고려사항을 보면, ‘영유아관리’(42.1%)를 가장 많이 고려하고, 그 다

음이 ‘안전·건강·영양’(40.3%), ‘보육프로그램’(7.2%), ‘종사자관리’(6.3%), ‘재무(사무)관리’(2.8%), ‘부모 및 지역사회 관계’(1.4%) 등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에 따라 고려사항에 대한 순위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다만 39인 시설인 경우 ‘영유아관리’ 및 ‘안전·건강·영양’차원에 대한 고려가 40인 이상 규모시설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4-24>

<표 4-24> 시설규모별(설립유형별) 운영 시 고려사항

단위: %(개소)

구 분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영유아관리	43.5 (60)	39.8 (33)	42.1 (93)
종사자관리	5.1 (7)	8.4 (7)	6.3 (14)
재무(사무)관리	2.1 (3)	3.6 (3)	2.8 (6)
부모 및 지역사회 관계	2.2 (3)	0.0 (0)	1.4 (3)
보육프로그램	5.8 (8)	9.6 (8)	7.2 (16)
안전·건강·영양	41.3 (57)	38.6 (32)	40.3 (89)
계	100.0 (138)	100.0 (83)	100.0 (221)

(3) 시설운영시 어려운 점

시설운영시 어려운 점(복수응답)의 경우를 보면, ‘재정관련문제’(52.3%), ‘원아모집문제(45.9%)’, ‘종사자관련문제’(33.8%), ‘안전문제’(16.7%), ‘행정관련문제’(15.8%), ‘시설설비문제’(12.6%), ‘학부모관련문제’(9.0%), ‘보육프로그램문제’(7.2%), ‘급·간식문제’(2.3%)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규모별로 보면, 39인 이하 규모시설의 경우 특히 ‘안전문제’, ‘시설설비문제’ 등에서 40인 이상 규모시설보다 운영상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아 서 소규모 시설의 경우 시설환경적인 측면에 관해 느끼는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25>

<표 4-25> 시설규모별 시설운영시 어려운 점(복수응답)

단위: %(개소)

구 분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원아모집문제	46.4 (64)	45.2 (38)	45.9 (102)
안전문제	21.7 (30)	16.7 (14)	16.7 (14)
급·간식문제	3.6 (133)	0.0 (0)	2.3 (5)
보육프로그램문제	5.8 (8)	9.5 (8)	7.2 (16)
시설설비문제	15.2 (21)	8.3 (7)	12.6 (194)
재정관련문제	50.7 (70)	54.8 (46)	52.3 (116)
행정관련	15.2 (21)	16.7 (14)	15.8 (35)
종사자관련문제	30.4 (42)	39.3 (33)	33.8 (75)
학부모관련문제	8.7 (12)	9.5 (8)	9.0 (20)
기타	0.7 (1)	3.6 (3)	98.2 (218)

(4) 시설개선점

조사응답시설의 보육시설 개선점(복수응답)을 보면, 전체적으로 ‘시설설비개선’(59.0%)을 가장 큰 개선점으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보육교사 급여 및 처우개선 문제’(40.1%), ‘교재·교구구입’(32.4%), ‘보육프로그램 개발’(24.3%), ‘부모교육’(14.4%)등의 순으로 지적하고 있다.

시설규모별로 살펴보면, 39인 이하 규모시설의 경우 ‘시설설비개선’(68.1%)을, 40인 이상 규모시설의 경우는 ‘보육교사 급여 및 처우개선’(51.2%)을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개선사항으로 꼽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4-26>

<표 4-26> 시설규모별 시설 개선점(복수응답)

단위: %, (개소)

구 분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시설설비개선	68.1 (94)	44.0 (37)	59.0 (131)
보육프로그램개발	21.0 (29)	29.8 (25)	24.3 (54)
교재교구구입	31.9 (44)	33.3 (28)	32.4 (72)
보육교사급여 및 처우개선	33.3 (46)	51.2 (43)	40.1 (89)
부모교육	13.0 (18)	16.7 (14)	14.4 (32)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줄이기	13.8 (19)	7.1 (6)	11.3 (25)
종사자 보수교육	11.6 (16)	10.7 (9)	11.3 (25)
기타	3.6 (5)	3.6 (3)	3.6 (8)

(5) 재정적 지원요구

보육시설의 재정적 지원요구사항(복수응답)을 살펴보면, ‘종사자 인건비’(72.5%)에 대한 지원요구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보육환경 개선비’(42.3%), ‘아동별 보육료 지원비’(30.6%), ‘기타운영비’(30.2%), ‘교재·교구 기자재구입비’(18.5%), ‘프로그램 운영비’(3.2%)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기타운영비’에 관한 지원요구가 많았는데 이에 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항목의 분류 및 분석을 통해 구체화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시설규모별로는 규모와 관계없이 ‘종사자 인건비’와 ‘보육환경개선비’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39인 이하 규모시설인 경우에 특히 ‘아동별 보육료 지원비’(34.1%)에 대해, 40인 이상 규모시설인 경우에는 ‘교재·교구 기자재구입’(22.6%)에 관한 재정적 지원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4-27 >

<표 4-27> 시설규모별 재정적 지원요구(복수응답)

단위: %(개소)

구 분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보육환경 개선비	43.5 (78)	40.5 (34)	42.3 (94)
종사자 인건비	70.3 (97)	76.2 (64)	72.5 (161)
교재·교구 기자재구입비	15.9 (22)	22.6 (19)	18.5 (41)
프로그램 운영비	3.6 (5)	2.4 (2)	3.2 (7)
기타 운영비	29.7 (41)	31.0 (26)	30.2 (67)
이동별 보육료 지원비	34.1 (47)	25.0 (21)	30.6 (68)
기타	2.2 (3)	1.2 (1)	1.8 (4)

(6) 행정적 지원요구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적 지원요구(복수응답)를 살펴보면, ‘유용한 정보 및 자료 제공’(68.6%)이 가장 많았고, ‘교사보수교육 기회확대’(53.6%), ‘보육행정의 전산화’(33.6%), ‘학부모교육’(28.2%), ‘지도감독의 다양화’(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규모별로는 39인 이하 규모시설과 40인 이상 규모시설의 행정적 지원요구사항의 우선순위가 유사수준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4-28>

<표 4-28> 시설규모별 행정적 지원요구(복수응답)

단위: %(개소)

구 분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지도감독의 다양화	9.6 (13)	10.7 (9)	10.0 (22)
보육행정의 전산화	30.9 (42)	38.1 (32)	33.6 (74)
교사보수교육 기회확대	53.7 (73)	53.6 (45)	53.6 (118)
학부모교육	28.7 (39)	27.4 (23)	28.2 (62)
유용한 정보, 자료제공	70.6 (96)	65.5 (55)	68.6 (151)

4) 지역사회 연계

(1) 지역사회와의 관계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나 지역주민과의 협조관계의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48.0%가 ‘다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서 ‘다소 부족하다’라는 응답이 22.2%, ‘잘 이루어지고 있다’ 21.3%, ‘매우 부족하다’가 8.6%로 조사되어 ‘다소 이루어지고 있다’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약 70%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규모별로 살펴보면, 40인 이상 규모시설인 경우 ‘다소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라는 부정적인 응답범주가 36.9%로 39인 이하 규모시설의 27.0%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지만 대체로 시설규모에 따라 별다른 차이 없이 ‘다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가장 많았다. <표 4-29>

<표 4-29> 시설규모별 지역사회와의 관계

단위: %(개소)

구 분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잘 이루어지고 있다	21.2 (29)	21.4 (18)	21.3 (47)
다소 이루어지고 있다	51.8 (71)	41.7 (35)	48.0 (106)
다소 부족하다	19.0 (26)	27.4 (23)	22.2 (49)
매우 부족하다	8.0 (11)	9.5 (8)	8.6 (19)
계	100.0 (137)	100.0 (84)	100.0 (221)

(2) 연계가 많은 지역사회기관

지역사회기관 중 어떤 시설과 가장 연계가 많은가에 대해 박물관, 공연장, 공원 등과 같은 ‘문화시설’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보건소’와 ‘소방서’(각각 16.4%), ‘민간시설이나 민간사업체’(10.3%), ‘도서관’(4.7%), ‘기타’((4.7%), ‘파출소’(3.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무 기관과도 ‘연계가 없다’는 경우도 6.1%가 있었다. 특히 전체의 10%가량은 ‘민간시설·민간사업체’를 가장 연계가 많은 지역사회기관으로 꼽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보육시설이 어떤 사회적 연계망을 가지고 있으며, 효과적인 보육활동을 위한 외부자원에 대한 욕구가 무엇인지를 좀 더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시설규모별로 살펴보면, 39인 이하 규모시설의 39.3%와 40인 이상 규모시설의 35.9%가 ‘문화시설’을 가장 연계가 많은 지역사회 기관으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보건소’와 ‘소방서’가 잘 협조되어지는 기관으로서 응답해 시설규모별 큰 차이는 없었다. <표 4-30>

<표 4-30> 시설규모별 연계가 많은 지역사회기관

단위: %(개소)

구 분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보건소	17.8 (24)	14.1 (11)	16.4 (35)
소방서	17.0 (23)	15.4 (12)	16.4 (35)
파출소	3.0 (4)	3.8 (3)	3.3 (7)
도서관	2.2 (3)	9.0 (7)	4.7 (10)
문화시설	39.3 (53)	35.9 (28)	38.0 (81)
민간시설·민간사업체	11.1 (15)	9.0 (7)	10.3 (22)
기타	5.2 (7)	3.8 (3)	4.7 (10)
연계 없음	4.4 (6)	9.0 (7)	6.1 (13)
계	100.0 (135)	100.0 (78)	100.0 (213)

(3) 보육시설 간 협력관계

보육시설 간 협력관계에 관한 응답에 대해 ‘공동행사’와 ‘공동구매’의 경우 다른 항목에 비해 실시율과 희망률이 상당히 높았다. ‘공동행사’의 경우 75.1%가 현재 실시 중에 있고, 68.3%는 실시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동구매’의 경우는 64.7%가 현재 실시 중이고, 79.3%가 시설 간 ‘공동구매’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동수업’과 ‘급간식’의 경우는 시설 간 협력관계는 상당히 낮은 편으로 ‘공동수업’의 경우 10.6%, ‘급간식’의 경우는 11.5%만이 실시 중에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들 영역에 대한 협력관계의 희망의사는 비교적 높아 ‘공동수업’의 경우 42.4%, ‘급간식’의 경우는 이보다 더 높은 61.1%가 협력관계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

<표 4-31> 시설규모별 보육시설 간 협력관계

단위: %(개소)

구 분	본 조사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실시여부	희망여부	실시여부	희망여부	실시여부	희망여부
공동구매	65.3 (77)	76.7 (56)	63.8 (44)	84.2 (32)	64.7 (121)	79.3 (88)
공동행사	72.9 (86)	61.3 (38)	78.9 (56)	79.5 (31)	75.1 (142)	68.3 (69)
공동수업	8.8 (8)	40.2 (33)	13.7 (7)	46.5 (20)	10.6 (15)	42.4 (53)
급간식	13.3 (11)	57.8 (52)	8.3 (4)	68.3 (28)	11.5 (15)	61.1 (80)

(4) 보육정보센터 이용빈도

전체 조사대상 시설에 대해 보육정보센터의 이용빈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50.2%가 ‘가끔 이용한다’, 45.2%가 ‘자주 이용한다’라고 답해 95%이상의 대부분의 시설이 비교적 보육정보센터를 활용에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반면 ‘거의 이용 안 한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1%, ‘이용한 적이 없다’가 0.5%로 나타나 보육정보센터 활용에 부정적인 경우는 거의 드물었다.

시설규모별로 살펴보면, 보육정보센터를 ‘자주 이용한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40인 이상 규모시설이 51.9%로 과반수를 넘어 39인 이하 규모시설의 41.2%보다는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끔 이용한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39인 이하 규모시설이 52.9%로 40인 이상 규모시설의 45.7%보다는 다소 높았다.<표 4-32>

<표 4-32> 시설규모별 보육정보센터 이용빈도

단위: %(개소)

구 분	본 조사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자주 이용한다	41.2 (56)	51.9 (42)	45.2 (98)
가끔 이용한다	52.9 (72)	45.7 (37)	50.2 (109)
거의 이용 안한다	5.1 (7)	2.5 (2)	4.1 (9)
이용한 적 없다	0.7 (1)	0.0 (0)	0.5 (1)
계	100.0 (136)	100.0 (81)	100.0 (217)

(5) 보육정보센터 도움정도

보육정보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보육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육관련 정보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있어, ‘대체로 도움이 된다’(59.0%), ‘매우 도움이 된다’(31.8%),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8.7%),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0.5%) 순으로 나타나 제공되어지고 있는 보육관련 정보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가 90%를 상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설규모별로는 별다른 차이 없이 39인 이하 규모시설과 40인 이상 규모시설 공히 90%이상 보육정보센터의 도움정도에 관련 긍정적인 응답률을 보였다. 그러나 약 10%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는 보육정보센터의 도움정도에 관해 부정적인 응답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센터의 정보가 보육시설 운영에 어느 정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 보다 세심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4-33>

<표 4-33> 시설규모별 보육정보센터 도움정도

단위: %(개소)

구 분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매우 도움이 된다	30.0 (36)	34.7 (26)	31.8 (62)
대체로 도움이 된다	60.0 (72)	57.3 (43)	59.0 (115)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10.0 (12)	6.7 (5)	8.7 (17)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0.0 (0)	1.3 (1)	0.5 (1)
계	100.0 (120)	100.0 (75)	100.0 (195)

(6) 보육정보센터에서 지원해주기를 희망하는 업무

보육정보센터에서 지원해주길 희망하는 업무에 관한 조사대상 전체 보육시설의 응답사항을 살펴보면,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재·교구 지원’(35.2%)을 가장 많이 희망했다. 그 다음으로는 ‘보육시설 관련 정보제공’(29.2%), ‘대체교사 수급관리’(15.5%) 등의 순으로 보육정보센터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규모별로 살펴보면, 39인 이하 규모시설의 경우는 ‘보육시설 관련 정보제공’과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교구 지원’(각각 32.4%)을 가장 많이 희망했고, ‘대체교사 수급관리’(16.9%) 등이 응답되었다. 40인 이상 규모시설의 경우는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교구 지원’(39.8%)을 가장 많이 꼽았고, ‘보육시설 관련 정보제공’(24.1%), ‘대체교사 수급관리’(13.3%), ‘보육교사 자격 및 경력관리’(10.8%)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34>

<표 4-34> 시설규모별 보육정보센터에서 지원해주기를 희망하는 업무

단위: %(개소)

구 분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보육시설 관련 정보제공	32.4 (44)	24.1 (20)	29.2 (64)
보육관련 DB구축	2.9 (4)	4.8 (4)	3.7 (8)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교구 지원	32.4 (44)	39.8 (33)	35.2 (77)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간의 연계망 구축	2.9 (4)	0.0 (0)	1.8 (4)
보육교사 보수교육 실시	4.4 (6)	4.8 (4)	4.6 (10)
보육교사 자격 및 경력 관리	3.7 (5)	10.8 (9)	6.4 (14)
대체교사 수급 관리	16.9 (23)	13.3 (11)	15.5 (34)
학부모 정보제공	4.4 (6)	2.4 (2)	3.7 (8)
계	100.0 (136)	100.0 (83)	100.0 (219)

5) 기타 시설운영 관련

(1) 보험가입여부

① 교사관련 보험

교사관련 4대보험 가입여부를 조사한 결과 ‘고용보험’(97.7%), ‘산재보험’(98.2%), ‘국민연금’(98.5%), 그리고 ‘건강보험’(95.0%) 모두 95%이상의 가입률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설규모별로 살펴보면, 40인 이상 규모시설의 경우 ‘산재보험’은 100%의 가입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은 98.8%, 건강보험은 95.2%가

가입하고 있었다. 39인 이하 규모의 시설인 경우는 ‘국민연금’ 가입률이 97.8%로 가장 높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각각 97.0%, ‘건강보험’이 94.8%로 나타났다.<표 4-35>

② 영유아관련 보험

보육영유아관련 보험가입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조사대상 시설의 97.1%가 영유아관련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국조사(2004, 여성부)에서 나타난 민간개인시설의 보육영유아관련 보험가입 현황인 89.4%와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많은 시설들이 영유아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하지만, 보육아동의 안전이 절대적인 보육시설에서 아직도 약 3%가량의 시설에서는 전혀 보육아동에게 발생될 수 있는 사건·사고를 대비한 보험가입사실이 없다는 점은 수치의 미약함을 넘어서 보다 더 관심을 갖고 권고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시설규모별로는 40인 이상 규모의 시설이 98.8%, 39인 이하 소규모 시설이 96.1%의 가입률을 보여, 시설규모가 보다 큰 경우 보육영유아관련 종합보험 가입률이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표 4-35>

③ 시설관련 보험

보육시설 설비 등에 관한 시설관련 보험가입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전체 조사대상시설중 ‘학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46.0%, ‘가스보험’은 21.5%로 나타났다. 반면 ‘차량보험’과 ‘화재보험’의 경우는 이보다는 훨씬 더 높은 보험가입률을 보여 각각 73.7%, 93.5%의 시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설규모별로 살펴보면 ‘차량보험’의 경우 40인 이상 규모시설의 경우가 약 10% 정도 높은 가입률을 나타냈으며, 그 외에 규모별 큰 차이는 없으나, 39인 이하 소규모시설인 경우 ‘화재보험’에 있어 조금 더 높은 보험가입률을 보여주고 있다.<표

4-35>

<표 4-35> 시설규모별 보험가입유형- 교사

단위: %(개소)

구 분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고용보험	97.0 (131)	98.8 (83)	97.7 (214)
산재보험	97.0 (131)	100.0 (84)	98.2 (215)
국민연금	97.8 (132)	98.8 (83)	98.5 (215)
건강보험	94.8 (128)	95.2 (80)	95.0 (219)
영유아관련 종합보험	96.1 (123)	98.8 (81)	97.1 (204)
학교배상책임보험	44.0 (59)	49.4 (40)	46.0 (99)
화재보험	94.0 (126)	92.6 (75)	93.5 (201)
가스보험	20.3 (27)	23.5 (19)	21.5 (46)
차량보험	70.5 (93)	79.0 (64)	73.7 (157)

(2) 영양·건강관리

보육시설 내에서 영양과 건강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급·간식의 영양과 조리형태 적절성, 필요한 간식 제공, 손씻기, 영유아 이닦기, 놀이감의 청결 유지, 전염성 질환 예방 및 대책공지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응답(복수응답)한 경우는 <표 4-36>의 결과와 같다.

‘영유아 이닦기’의 경우 85.1%, ‘손 씻기’는 81.5%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답했으며, ‘급·간식의 영양과 조리형태 적절성’은 77.8%, ‘필요한 간식 제공’ 66.7%, ‘전염성 질환 예방 및 대책공지’ 55.3%, 그리고 ‘놀이감 청결 유지’에 관해서는 50.0%가

현재 보육시설에서 보육아동의 영양·건강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시설규모별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급·간식의 영양과 조리형태의 적절성’과 ‘필요한 간식 제공’등의 보육아동의 먹을거리와 관계된 문항에 있어서는 40인 이상 규모시설의 경우 39인 이하 소규모시설에 비해 약 10%가량 높게 보육아동의 영양·건강관리 측면이 잘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표 4-36> 시설규모별 영양·건강관리 측면(잘 이루어지고 있다)

단위: %(개소)

구 분	본 조사			전국 조사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국·공립	민간개인	전체
급·간식의 영양과 조리형태 적절성	74.5 (102)	83.3 (70)	77.8 (172)	79.7	71.3	73.9
필요한 간식 제공	62.3 (86)	73.8 (62)	66.7 (148)	81.8	61.8	67.4
손 씻기	81.9 (113)	81.0 (68)	81.5 (181)	85.5	81.6	83.0
영유아 이닦기	87.0 (120)	82.1 (69)	85.1 (189)	91.1	79.6	78.8
놀이감 청결 유지	50.7 (70)	50.0 (42)	50.0 (112)	51.6	41.3	46.2
전염성 질환 예방 및 대책공지	52.9 (72)	59.6 (49)	55.3 (121)	62.3	54.5	55.2

(3)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의 건강검진의 실시여부에 관해 전체 조사대상 시설의 95.5%가 ‘재원아 전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는 전국조사(2004, 여성부) 결과 중 민간개인시설의 88.5%가 재원아 전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는 결과보다 높은 비율로 서울시 내 민간보육시설의 영유아의 건강검진이 보다 잘 실시·진행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특정 아동을 위해 개별적으로 검진 한 후 결과만 받는 경우’는 2.7%, ‘특정 아동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0.5%로 나타났으며, ‘건강검진을 아예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4%였다.

시설규모별로 살펴본 경우 시설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37>

<표 4-37> 시설규모별 영유아 건강검진 여부

단위: %(개소)

구 분	본 조사			전국 조사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국·공립	민간	전체
재원아 전체 연 1회 이상	94.9 (131)	96.4 (81)	95.5 (212)	94.1	88.5	83.1
특정 아동대상 연 1회 이상	0.7 (1)	0.0 (0)	0.5 (1)	0.9	2.2	1.8
개별적 검진 후 결과 수거	2.9 (4)	2.4 (2)	2.7 (6)	3.0	4.7	7.6
실시하지 않음	1.4 (2)	1.2 (1)	1.4 (3)	0.6	2.7	5.2
기타	-	-	-	1.5	2.0	2.3
계	100.0 (138)	100.0 (84)	100.0 (222)	100.0 (1,169)	100.0 (8,096)	100.0 (16,591)

5. 재정 · 운영

1) 보육료

(1) 보육료 수준

보육료 수준에 대해 전체응답자중 과반수가 넘는 54.8%는 ‘기준대로 받고 있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기준보다 적게 받고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36.1%였고, ‘기준보다 다소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한 경우는 9.1%에 불과했다. 전국조사결과에서 ‘기준보다 적게 받고 있다’라는 응답이 과반수(53.5%)를 넘었고, ‘기준대로 받고 있다’라고 응답한 시설이 38.3%였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시설규모별로 보육료 수준을 살펴보면, ‘기준대로 받고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39인 이하 규모시설이 58.8%로 40인 이상 규모시설의 48.2%보다 약 10%가량 많았다. 또한 ‘기준보다 다소 많이 받고 있다’라는 선택항에서는 40인 이상 규모의 시설이 12.0%, 39인 이하 시설의 경우는 7.4%로 나타나 시설규모간 보육료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38>

<표 4-38> 시설규모별(설립유형별) 보육료 수준

단위: %(개소)

구 분	본 조사			전국 조사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국 · 공립	민간개인	전체
기준대로 받고 있다	58.8 (80)	48.2 (40)	54.8 (120)	67.3	38.3	39.2
기준보다 적게 받고 있다	33.8 (46)	39.8 (33)	36.1 (79)	32.7	53.5	56.0
기준보다 다소 많이 받고 있다.	7.4 (10)	12.0 (10)	9.1 (20)	0.0	8.2	4.8
계	100.0 (136)	100.0 (83)	100.0 (219)	100.0 (159)	100.0 (1,087)	100.0 (2,380)

(2) 보육료를 적게 받는 이유

보육료를 적게 받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 중에서 보육료를 적게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전체 응답자중 ‘부모들이 정상 보육료를 낼 형편이 못되어서’(46.3%)라고 응답한 경우가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보육시설간의 경쟁 때문에’(22.5%), ‘부모들이 비싸다고 생각해서’(17.5%)순으로 나타났다.

시설규모별로 살펴보면, 39인 이하 규모시설인 경우 과반수가 넘는 54.2%가 ‘부모들이 정상 보육료를 낼 형편이 못되어서’라고 답해 소규모 시설의 경우 부모의 경제력의 수준에 따라 보육료 산정 수준이 더 민감하게 영향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0인 이상 규모시설인 경우에는 ‘부모들이 정상 보육료를 낼 형편이 못되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34.4%였지만, ‘보육시설간의 경쟁때문에’라고 답한 경우도 28.1%나 차지했다. <표 4-39>

<표 4-39> 시설규모별 보육료를 적게 받은 이유

단위: %(개소)

구 분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보육시설간의 경쟁 때문에	18.8 (9)	28.1 (9)	22.5 (18)
부모들이 비싸다고 생각해서	18.8 (9)	15.6 (5)	17.5 (14)
부모들이 정상 보육료를 낼 형편이 못되어서	54.2 (26)	34.4 (11)	46.3 (37)
기타	8.3 (4)	21.9 (7)	13.8 (11)
계	100.0 (48)	100.0 (32)	100.0 (80)

(3) 이용시간에 따른 보육료 수준

보육시설 이용시간에 따라 보육료의 수준에 관해 조사한 결과 ‘반일제의 경우 종일제보다 적게 받고 있다’고 응답한 시설이 65.9%로 나타났다. 반면 ‘동일하게 받고 있다’는 시설은 22.1%, ‘기준시간 연장 시 추가로 받고 있다’는 경우는 12.0%로 응답되어 대체로 대부분의 시설들이 반일제의 경우 종일제보다 보육료를 적게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설규모별로는 별다른 차이점은 없었으나 39인 이하 시설의 경우는 ‘동일하게 받고 있다’는 비율이 23.7%로 40인 이상 규모시설의 19.5%보다 다소 높았으며, ‘반일제의 경우 종일제보다 적게 받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0인 이상의 시설인 68.3%로 39인 이하 소규모 시설의 64.4%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표 4-40>

<표 4-40> 시설규모별 이용시간에 따른 보육료 수준

단위: %(개소)

구 분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동일하게 받고 있다	23.7 (32)	19.5 (16)	22.1 (48)
반일제는 적게 받고 있다	64.4 (87)	68.3 (56)	65.9 (143)
기준시간 연장 시 추가로 받고 있다	11.9 (16)	12.2 (10)	12.0 (26)
계	100.0 (135)	100.0 (82)	100.0 (217)

(4) 종일제/ 반일제 월평균 보육료

전체 조사대상 시설의 종일제 보육료 평균금액을 살펴보면, ‘만 2세 미만’인 경우 32만 2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만 2세’의 경우는 26만 8천원, ‘만 3세 이상’의 경우는 20만 5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전국조사(2004, 여성부)의 민간개인시설의 보육료 실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데, ‘만 2세 미만’의 경우 약 7

만 9천원, ‘만 2세’는 6만원, ‘만 3세 이상’의 경우는 3만원 정도의 편차가 있다.

시설규모별로는 ‘만 2세 미만’ 과 ‘만 2세’ 종일제 보육료의 경우 39인 이하 규모 시설인 경우가 40인 이상 규모시설보다 약간 더 보육료를 받고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반일제 보육료의 경우를 보면, 전체 조사대상 시설의 보육료 평균금액은 ‘만 2세 미만’인 경우가 23만원, ‘만 2세’는 19만 9천원, ‘만 3세 이상’인 경우는 16만 4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종일제 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전국조사(2004, 여성부)의 민간개인시설의 보육료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만 2세 미만’인 경우 5만 5천원, ‘만 2세’는 4만 5천원, ‘만 3세 이상’인 경우는 2만 8천원 정도 본 조사결과가 더 높게 보고되었다.

시설규모별로는 큰 차이는 없었으나 40인 이상 규모시설이 39인 이하 규모시설보다 미미하나 다소 더 많은 보육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41>

<표 4-41> 시설규모별 종일제/ 반일제 월평균 보육료

단위: 천원/월

구 분		본 조사			전국 조사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국·공립	민간개인	전체
만 2세 미만	종일제	323	319	322	217	243	256
	반일제	223	242	230	198	175	178
만 2세	종일제	269	266	268	178	208	218
	반일제	194	207	199	158	154	156
만 3세 이상	종일제	205	205	205	128	175	176
	반일제	162	169	164	119	136	135

(5) 종일제와 반일제 월평균 보육료 차이

종일제와 반일제 월평균 보육료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나이가 어릴수록 종일제와 반일제의 보육료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2세 미만’은 9만원, ‘만 2세’의 경우는 7만원의 보육료 차이를 보였으며, ‘만 3세 미만’의 경우는 4만 4천원으로 가장 차이가 적었다.

시설규모별로 살펴보면, ‘만 2세 미만’의 경우 39인 이하 규모시설은 9만 5천원, 40인 이상 규모시설의 경우는 8만 2천원의 보육료 차이를 보였다. ‘만 2세’는 39인 이하 시설이 7만 5천원, 40인 이상 규모시설이 6만 3천원의 보육료 차이가 있었다. ‘만 3세 이상’의 경우는 시설규모 간 가장 차이가 적어 39인 이하 규모시설인 경우 4만 3천원, 40인 이상 규모시설은 4만 5천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4-42>

<표 4-42> 시설규모별 종일제와 반일제 월평균 보육료 차이

단위: 천원/월

구 분	본 조사			전국 조사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국·공립	민간개인	전체
만 2세 미만	95	82	90	12	64	78
만 2세	75	63	70	12	52	63
만 3세 이상	43	45	44	7	41	47

(6) 보육료 미납아동 유무

2004년도 1년간 보육료를 내지 않은 아동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미납아동이 있는 시설은 68.6%로 나타났다.

시설규모별로는 40인 이상 규모시설이 72.2%로 39인 시설의 66.4%보다 높게 나타나 시설 4개소 중 3개소는 보육아동 중 미납아동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납아동을 보육한 시설의 미납평균액을 조사한 결과 약 377만원 정도로 나타났고, 시설규모별로 차이가 커서 39인 이하 규모시설인 경우는 294만원 가량인데 비해 40인 이상 규모의 시설인 경우는 493만원 정도의 미납보육료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4년 여성부 전국조사 중 민간개인시설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1개소당 미납 평균액은 344만원 정도로 본 조사가 결과가 평균 33만원 가량 더 높게 조사·보고된 것을 알 수 있다.<표 4-43>

<표 4-43> 시설규모별 보육료 미납 아동 유무

단위: %(개소), 만원

구 분	본 조사			전국 조사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국·공립	민간개인	전체
있다	66.4 (83)	72.2 (57)	68.6 (140)	58.4	65.8	50.9
없다	33.6 (42)	27.8 (22)	31.4 (64)	41.6	34.2	49.1
계	100.0 (125)	100.0 (79)	100.0 (204)	100.0 (154)	100.0 (1,067)	100.0 (2,307)
1개소 당 미납 평균액	294.24 (72)	492.80 (51)	376.57 (123)	195.77	343.55	304.19

(7) 보육료 평균 미납아동수

2004년 지난 1년간 보육료를 내지 않은 아동이 있는 시설에서의 평균 미납아동수를 살펴보면, 시설당 영아의 경우 평균 2.23명, 유아의 경우 2.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규모별로는 40인 이상 규모시설인 경우가 39인 이하 소규모 시설보다 평

균 영·유아 각각 1명 정도 더 많은 미납아동을 보육했던 것을 알 수 있다.<표 4-44>

<표 4-44> 보육료 평균 미납아동수

단위: 명, (개소)

구 분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평균 미납아동수	영아	1.81 (42)	2.96 (24)	2.23 (66)
	유아	2.14 (72)	3.05 (55)	2.54 (127)

2) 보육시설 수입·지출

(1) 수입 내역

보육시설의 수입내역은 부모부담금, 정부지원금, 기타수입으로 나누어 파악되었다. 조사대상 전체 시설의 부모부담금은 평균 6902만원(48.2%)이며, 정부지원금은 4639만원(32.4%), 기타수입은 2794만원(19.5%)이며, 총수입액 평균은 1억 2061만원이었다. 2004년 전국조사(여성부)의 민간개인시설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부모부담금의 비중은 73.1%에서 48.2%로 크게 줄고, 정부지원금은 24.7%에서 32.4%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전국조사에서 기타수입의 경우 2.2%에 불과하나 본조사의 경우 약 20%라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선 보다 추가적인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항목 당 비용을 금액으로 비교할 경우엔 부모부담금, 정부지원금, 기타수입과 총수입액 전부에서 본 조사결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시설규모별로 살펴보면, 39인 이하 규모시설의 경우는 부모부담금은 4656만원(39.5%), 정부지원금이 3971만원(33.7%), 기타수입 3162만원(26.9%)으로 총수입액 평균은 9036만원으로 조사되었다. 40인 이상 규모시설에서는 부모부담금이 9824만

원(55.0%), 정부지원금은 5540만원(30.9%), 기타수입이 2610만원(14.5%)으로 총수입액 평균은 1억 5977만원으로 나타났다.<표 4-45>

<표 4-45> 시설규모별 수입 내역

단위: 개소, 천원

구 분	본 조사									전국 조사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국·공립			민간개인			전체		
	시설수	평균	%	시설수	평균	%	시설수	평균	%	시설수	평균	%	시설수	평균	%	시설수	평균	%
부모 부담금	65	46,558.2	39.49	50	98,236.0	54.66	115	69,026.8	48.15	151	111,682.5	43.6	839	67,533.0	73.1	1,849	60,652	59.8
정부 지원금	66	39,712.3	33.68	49	55,396.7	30.82	115	46,395.2	32.36	152	136,771.9	53.3	795	24,143.7	24.7	1,666	41,959	37.3
기타 수입	10	31,624.0	26.82	20	26,098.0	14.52	30	27,940.0	19.49	109	10,860.4	3.0	173	9,828.4	2.2	504	11,039	3.0
수입 총계	66	90,356.5	100.0	51	159,768.6	100.0	117	120,613.1	100.0	152	256,501.1	100.0	847	91,564.0	100.0	1,863	100,705	100.0

(2) 지출내역

보육시설의 지출내역은 인건비, 시설운영비, 기타지출로 나누어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전체 시설의 인건비는 평균 6835만원(50.2%)이었고, 시설운영비는 5395만원(39.6%), 기타지출은 1395만원(10.2%)이며, 총지출액 평균은 1억 2463 만원이었다. 2004년 전국조사(여성부)의 민간개인시설 조사 결과와 비교해볼 때, 인건비의 비중은 줄고, 시설운영비와 기타지출의 비율이 높게 조사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출액에서는 인건비, 시설운영비, 기타지출, 총지출액 모두에서 전국조사보다 많은 비용지출을 나타냈다.

기타지출의 항목에 대해서는 급간식비, 임대료, 차량유지비, 시설보수와 홍보비 등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조사되었다.

시설규모별로 살펴보면, 39인 이하 규모시설의 경우 인건비는 4697만원(47.8%), 시설운영비는 4081만원(41.6%), 기타지출이 1043만원(10.6%)으로 총지출액은 8841만원으로 조사되었다. 40인 이상 규모시설인 경우는 인건비가 9795만원(52.4%), 시설운영비는 7147만원(38.2%), 그리고 기타지출이 1747만원(9.4%)으로 총지출액은 1억 747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6>

<표 4-46> 시설규모별 지출 내역

단위: 개소, 천원

구 분	본 조사									전국 조사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국·공립			민간개인			전체		
	시설수	평균	%	시설수	평균	%	시설수	평균	%	시설수	평균	%	시설수	평균	%	시설수	평균	%
인건비	72	46,973.1	47.83	52	97,950.0	52.41	124	68,350.5	50.17	152	159,216.1	61.8	847	51,714.1	58.3	1,805	60,526	59.8
시설 운영비	68	40,812.6	41.56	51	71,470.0	38.24	119	53,951.5	39.60	149	87,148.9	33.1	831	31,127.1	34.4	1,822	34,273	34.2
기타 지출	20	10,425.0	10.61	20	17,473.0	9.35	40	13,949.0	10.24	81	24,755.9	5.1	418	13,099.7	7.3	817	13,623	6.1
지출 총계	72	88,414.2	100.0	52	174,766.0	100.0	124	124,626.2	100.0	152	257,837.3	100.0	849	88,509.0	100.0	1,862	98,188	100.0

(3) 초기투자비용

시설 설립 시 부지구입과 시설설치비용으로 사용된 초기투자비용의 수준을 묻는 물음에서 전체응답자중 ‘5억 이상’이라고 답한 경우가 30.2%, ‘1억~2억 5천만 원 미만’이 24.8%라고 답해 반수 이상의 응답자들이 1억 이상의 초기투자규모를 가지고 시설설립을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밖에 ‘5000~7500만원 미만’이 22.2%, ‘7500~1억 미만’(7.9%), ‘2500~5000만원 미만’이 6.3%로 나타나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응답편차가 2500만원에서 5억 이상까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규모별로 살펴보면, 39인 이하 규모시설인 경우 '5000~7500만원 미만' 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1.9%로 가장 높은 반면, 40인 이상 규모시설인 경우는 반수 이상인 53.1%가 '5억 이상'이 소요됐다고 응답해 시설규모별 초기투자비용의 편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표 4-47>

<표 4-47> 시설규모별 초기투자비용(부지구입비용+시설설치비용)

단위: %(개소)

구 분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2500~5000만원 미만	9.7 (3)	3.1 (1)	6.3 (4)
5000~7500만원 미만	41.9 (13)	3.1 (1)	22.2 (14)
7500~1억 미만	16.1 (5)	0 (0)	7.9 (5)
1억~2억 5천 미만	12.9 (4)	34.4 (11)	24.8 (15)
2억 5천~5억 미만	12.9 (4)	6.3 (2)	9.5 (6)
5억 이상	6.5 (2)	53.1 (17)	30.2 (19)
전체	100.0 (31)	100.0 (32)	100.0 (63)

(4) 총부채 유무

현재 기준 총부채의 유무에 대한 전체조사대상자의 응답을 살펴보면, 총부채가 '있다'고 답한 경우는 40.1%, '없다'는 응답은 59.9%로 나타나 약 절반가량의 보육시설이 채무를 안고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설규모별로 살펴보면, 39인 이하 규모시설인 경우 부채가 '있다'고 답한 경우가 36.2%로 40인 이상 규모시설의 46.4%에 비해 낮게 보고되었다.

부채가 있는 시설들의 총부채 평균액을 살펴보면 1억 1600만원정도로 40인 이상 규모시설인 경우에는 1억 9545만원, 39인 이하 규모시설인 경우는 5081만원으로 시

설의 규모에 따라 채무의 양도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표 4-48>

<표 4-48> 시설규모별 총부채 유무

단위: % (개소수), 만원

구 분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있음	36.2 (50)	46.4 (39)	40.1 (89)
없음	63.8 (88)	53.6 (45)	59.9 (133)
전체	100.0 (138)	100.0 (84)	100.0 (222)
총부채 평균	5081	19545	11600

(5) 부채에 대한 월이자

전체 조사시설 가운데 채무가 있는 시설인 경우 부채에 대한 월이자가 어느 정도인가를 조사한 결과 월이자의 평균은 117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규모별로 살펴보면, 40인 이상 규모시설인 경우에는 176.46만원으로 조사되었고, 39인 이하 규모시설인 경우는 69.02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어 시설 규모에 따라 거의 100만원 이상의 편차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40인 이상 규모시설인 경우는 ‘200만원 이상’ 월이자의 부담을 지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3.2%로 가장 높고, 39인 이하 규모시설인 경우는 ‘30~5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시설규모 간 차이를 볼 수 있다.

<표 4-49>

<표 4-49> 시설규모별 부채에 대한 월이자

단위: %(개소), 만원

구 분	본 조사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10~30만원 미만	15.9(7)	2.7(1)	9.9(8)
30~50만원 미만	38.6(17)	8.1(3)	24.7(20)
50~100만원 미만	25.0(11)	18.9(7)	22.2(18)
100~150만원 미만	6.8(3)	18.9(7)	12.3(10)
150~200만원 미만	6.8(3)	8.1(43.2)	7.4(6)
200만원 이상	6.8(3)	43.2(16)	23.5(19)
전체	100.0(44)	100.0(37)	100.0(81)
월이자 평균	69.02만원(46)	176.46만원(37)	116.92만원(83)

(6) 임대료

전체 조사 응답자중 현보육시설이 임대시설인 경우 임대료의 수준에 대해 전세인 경우는 평균 5769만원, 월세인 경우는 132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설 간 임대료의 편차가 커서 최소 500만원인 시설부터 최대 1억 1800만원의 전세 임대료를 내는 시설인 있는가 하면, 월세인 경우에도 최소 20만원부터 407만원까지 다양한 응답이 나와 지역간, 시설의 규모에 따라 임대료 수준이 다양한 것으로 파악된다.

시설규모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39인 이하 규모시설인 경우 전세 임대료의 평균액은 4334만원인데 비해 40인 이상 규모시설은 8900만원으로 약 2배의 임대료 차이를 보여준다. 월세인 경우 역시 39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는 한달에 100만원 안팎인 111만원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는 반면, 40인 이상 규모시설은 그 두 배에 해당하는 2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50>

<표 4-50> 시설규모별 임대료

단위: 만원(개소)

구 분		본 조사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전세인 경우	평균	4334 (24)	8900 (11)	5769 (35)
	최소	500	2000	500
	최대	1300	18000	11800
월세인 경우	평균	111 (98)	200 (30)	132 (128)
	최소	40	20	20
	최대	300	407	407

6. 보육정책

1)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1)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여부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여부를 조사한 결과 설문조사에 응답한 보육시설 중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는 13.0%에 불과해 대부분의 시설이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설 규모별로도 설치여부에 관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는데, 39인 이하 규모시설인 경우는 11.1%, 40인 이상 규모시설인 경우는 15.9%로 조사되어 40인 이상 규모시설에서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한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표 4-51>

<표 4-51> 시설규모별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여부

단위: %(개소)

구 분	본 조사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설치하였다	11.1 (14)	15.9 (13)	13.0 (27)
설치하고 있지 않다	88.9 (112)	84.1 (69)	87.0 (181)
계	100.0 (126)	100.0 (82)	100.0 (208)

(2) 향후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여부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경우, 향후 설치계획이 있는가에 대해 ‘몇 년 내에 설치하겠다’(41.1%), ‘모르겠다’(33.9%)라는 유보적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설치하지 않겠다’라는 의견도 20.2%나 되었고, ‘즉시 설치하겠다’라는 응

답은 4.8%에 불과했다. <표 4-52>

<표 4-52> 시설규모별 향후 운영위원회 설치 여부

단위: %(개소)

구 분	본 조사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즉시 설치하겠다	3.9 (4)	6.2 (4)	4.8 (8)
몇 년 내에 설치하겠다	39.8 (41)	43.1 (28)	41.1 (69)
설치하지 않겠다	22.3 (23)	16.9 (11)	20.2 (34)
모르겠다	34.0 (35)	33.8 (22)	33.9 (57)
계	100.0 (103)	100.0 (65)	100.0 (168)

2) 평가인증제

(1) 평가인증제 신청 여부

조사에 응답한 시설 중에서 평가인증제가 실시 될 경우에 ‘신청한다’는 시설은 73.6%로 나타나 시설 4군데 중 3곳은 평가인증제 신청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규모별로 살펴보면, 39인 이하 규모시설인 경우에는 69.2%가 평가인증제를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40인 이상 규모시설인 경우에는 이보다 더 높은 80.5%가 평가인증제를 신청하겠다고 답했다. 따라서 규모가 조금 더 큰 시설인 경우에 평가인증제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수용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53>

<표 4-53> 시설규모별 평가인증제 신청 여부

단위: %(개소)

구 분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신청한다	69.2 (90)	80.5 (66)	73.6 (156)
신청하지 않는다	30.8 (40)	19.5 (16)	26.4 (56)
계	100.0 (130)	100.0 (82)	100.0 (212)

(2) 평가인증제 신청 시기

평가인증제가 실시될 경우 그 신청 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즉시 한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7.2%에 불과했다. 90%이상이 신청 시기를 늦추거나 향후 상황을 관망한 후 결정하겠다는 유보적 자세를 취했으며, 그 가운데 ‘1년 후 신청한다’는 응답자가 42.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2년 후 신청한다’가 19.6%, ‘3년 후 신청한다’가 19.0%로 나타났다.

시설규모별로 살펴보면, 40인 이상 규모시설인 경우 ‘1년 후에 신청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는 5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그 다음으로는 ‘2년 후 신청한다’(20.6%), 기타(12.7%), 그리고 ‘3년 후 신청한다’(11.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즉시 한다’라고 답한 경우는 4.8%에 불과했다. 39인 이하 규모 시설의 경우는 ‘1년 후 신청한다’라는 의견이 36.7%로 40인 이상 규모시설에서의 응답비율보다는 적었지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2년 후 신청한다’(18.9%)라는 의견보다는 ‘3년 후 신청한다’(24.4%)는 의견이 더 높아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 아직은 평가인증제에 관해 상황을 관망하려는 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4-54>

<표 4-54> 시설규모별(설립유형별) 평가인증제 신청 시기

단위: %(개소)

구 분	본 조사			전국 조사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국·공립	민간개인	전체
즉시 한다	8.9 (8)	4.8 (3)	7.2 (11)	21.0	30.9	31.1
1년 후 신청한다	36.7 (33)	50.8 (32)	42.5 (65)	46.0	37.2	39.8
2년 후 신청한다	18.9 (17)	20.6 (13)	19.6 (30)	21.8	13.4	13.1
3년 후 신청한다	24.4 (22)	11.1 (7)	19.0 (29)	6.5	9.3	8.4
기타	11.1 (10)	12.7 (8)	11.8 (18)	4.8	9.2	7.7
계	100.0 (90)	100.0 (63)	100.0 (153)	100.0 (124)	100.0 (740)	100.0 (1,554)

3) 보육료 자율화

보육료 자율화에 대해 ‘찬성한다’는 49.8%, ‘반대한다’가 43.0%, ‘모르겠다’는 7.2%로 나타나 보육료 자율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시설규모별로 보면 ‘찬성한다’의 경우 40인 이상 규모시설은 52.4%로 39인 이하 규모시설의 48.2%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39인 이하 소규모시설인 경우는 특히 찬성과 반대의 의사가 각각 48.2%, 46.7%로 나타나 보육료 자율화에 대한 의견차가 팽팽한 것으로 보인다. <표 4-55>

<표 4-55> 시설규모별(설립유형별) 보육료 자율화에 대한 의견

단위: %(개소)

구 분	본 조사			전국 조사		
	39인 이하	40인 이상	전체	국·공립	민간개인	전체
찬성한다	48.2 (66)	52.4 (44)	49.8 (110)	25.9	52.3	42.0
반대한다	46.7 (64)	36.9 (31)	43.0 (95)	63.9	40.1	48.6
모르겠다	5.1 (7)	10.7 (9)	7.2 (16)	10.1	7.6	9.4
계	100.0 (137)	100.0 (84)	100.0 (221)	100.0 (158)	100.0 (1,090)	100.0 (2,383)

7. 보육교사

1) 일반적 배경

(1) 전공특성

보육교사의 전공은 ‘유아교육학’(29.5%)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육학’(27.8%), ‘아동(복지)학’(6.0%), ‘가정(관리)학’(4.7%) 등으로 조사되었다. ‘기타’인 경우도 24.4%나 되었는데 대부분 ‘보육교사 교육원’을 통한 자격취득자인 것으로 추측된다. <표 4-56>

<표 4-56> 보육교사의 전공특성

단위: %(명)

구 분	본 조사	전국 조사		
	전체	국·공립	민간	전체
보육학	27.8(65)	17.0	30.4	25.2
유아교육학	29.5(69)	54.7	41.7	47.2
사회복지학	3.0(7)	5.1	6.1	5.8
아동(복지)학	6.0(14)	9.8	6.8	6.9
가정(관리)학	4.7(11)	2.9	2.5	2.5
간호학	0.4(1)	0.6	0.4	0.5
교육학	3.4(8)	0.9	1.2	1.2
영양학	0.9(2)	0.4	0.4	0.5
특수교육학	0.0(0)	1.0	0.5	0.8
기타	24.4(57)	7.5	9.9	9.6
계	100.0(234)	100.0(7,158)	100.0(25,612)	100.0(49,684)

(2) 보육교사의 소지자격

보육교사 소지자격의 종류의 경우 ‘1급 보육교사’인 경우가 47.7%, ‘2급 보육교사’인 경우는 45.7%로 나타난 대부분 보육교사가 2급 이상의 보육교사 자격소지자임을 알 수 있다. 그밖에 ‘1·2급 유치원 정교사’인 경우가 5.4%, ‘특수교사’와 ‘간호사·양호교사’등이 각각 0.4%로 조사되었다. <표 4-57>

<표 4-57> 보육교사의 소지자격 특성

단위: %(명)

구 분		본 조사	전국 조사		
		전체	국·공립	민간개인	전체
있음	1급 보육교사	47.7(123)	71.5	47.5	52.3
	2급 보육교사	45.7(118)	12.6	38.3	32.3
	1,2급 유치원 정교사	5.4(14)	13.0	11.6	12.3
	특수교사	0.4(1)	1.0	0.5	0.8
	간호사 · 양호교사	0.4(1)	0.8	0.5	0.5
	기타	0.4(1)	0.9	1.7	1.6
자격 없음		0.4(1)	0.1	-	-
계		100.0(258)	100.0(7,518)	100.0(28,911)	100.0(55,182)

(3) 자격취득 경로

보육교사 자격취득경로를 살펴보면, ‘보육교사 교육원’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56.4%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인 경우도 32.0%였다. 반면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는 10%에 불과했다. 전국조사(2004, 여성

부)에서 민간개인시설 보육교사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 본조사에서는 ‘보육교사 교육원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더 많았고, 반면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인 경우는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8>

<표 4-58> 보육교사의 자격취득 경로

단위: %(명)

구 분	본 조사	전국 조사		
	전체	국·공립	민간	전체
보육교사 교육원	56.4(146)	19.9	42.9	37.5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32.0(83)	57.6	45.5	48.6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	10.0(26)	21.1	10.1	12.5
대학원 관련학과 졸업	-	1.0	0.6	0.6
기타	1.5(4)	0.5	0.9	0.8
계	100.0(259)	100.0 (7,460)	100.0 (28,750)	100.0 (54,845)

(4) 보육교사의 재직기간

조사대상 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재직기간을 총 재직기간과 현 시설 재직기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총재직기간은 평균 53.12개월이고, 현 시설 재직기간은 27개월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여성개발원(2004)에서 실시한 조사결과보다 보육교사의 현 시설 재직기간의 경우 17~18개월가량 짧은 기간이다. <표 4-59>

보육교사의 현 보육시설 근무연수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만 1년 미만’인 경우가 33.2%, ‘만 1~2년 미만’은 21.6%로 나타나 보육교사가 한 시설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갖는 경우는 절반이 채 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표 4-60>

<표 4-59> 보육교사의 재직기간

단위: 개월(명)

구 분		본 조사
총 재직기간	평균	53.12개월(217)
	최소	2개월
	최대	240개월
현 시설 재직기간	평균	27개월(199)
	최소	1개월
	최대	216개월

<표 4-60> 보육교사의 현 보육시설 근무연수

단위: %(명)

구 분	본 조사	전국 조사		
	전체	국·공립	민간개인	전체
만 1년 미만	33.2(66)	22.6	34.5	32.2
만 1~2년 미만	21.6(43)	18.2	22.7	21.6
만 2~3년 미만	21.1(42)	17.5	19.3	18.4
만 3~4년 미만	9.0(18)	10.7	8.4	9.1
만 4~5년 미만	5.0(10)	9.0	6.5	7.0
만 5~6년 미만	4.0(8)	5.2	2.4	3.1
만 6~7년 미만	2.0(4)	4.3	2.5	2.9
만 7~8년 미만	0.5(1)	2.9	1.2	1.7
만 8~9년 미만	1.0(2)	2.9	0.9	1.5
만 9~10년 미만	0.5(1)	1.6	0.5	0.8
만 10년 이상	2.0(2)	5.2	1.0	1.9
계	100.0(199)	100.0(7,590)	100.0(29,456)	100.0(56,118)

2) 근무환경

(1) 교사 대 아동비율

현재 담당하고 있는 교실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에 대해 의견을 묻은 결과 78.1%가 ‘적합하다’고 응답했고 21.9%는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했다.<표 4-61>

<표 4-61> 교사 대 아동비율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 분	본 조사
적합하다	78.1(200)
적합하지 않다	21.9(56)
계	100.0(256)

(2) 정교사 외 보조교사의 유무, 수

정교사 이외에 보조교사의 유무와 수를 조사한 결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보조교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1.5%였고,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78.5%로 정교사 외 보조교사를 활용하고 있는 시설은 전체의 1/5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교사가 ‘있다’고 답한 경우 그 수를 조사한 결과, ‘1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76.9%로 가장 많았고, ‘2명’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1.2%, ‘3명 이상’인 경우는 1.9%였다. <표 4-62>

<표 4-62> 정교사 외 보조교사의 유무, 수

단위: %(명)

구 분		본 조사
보조교사 유무	있다	21.5(53)
	없다	78.5(194)
	계	100.0(247)
보조교사의 수	1명	76.9(40)
	2명	21.2(11)
	3명 이상	1.9(1)
	계	100.0(52)

3) 근무조건

(1) 근무시간

보육교사의 ‘평일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평균 10.6시간이었으며, ‘토요일 근무시간’은 평균 6.8시간, ‘휴일 근무시간’은 11.5시간이었다. 추가 근무시간의 경우, ‘정기적인 추가근무시간’은 3.3시간, ‘기타 추가근무시간’은 3.2시간, ‘당직 근무시간’은 2.5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3>

<표 4-63>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단위: 시간(명)

구 분	본 조사	한국여성개발원 조사		
	전체	국·공립	민간개인	계
평일근무시간(일)	10.6(260)	10.0	10.5	10.2
토요근무시간(일)	6.8(223)	6.3	6.0	6.0
휴일근무시간(일)	11.5(3)	-	4.5	4.5
정기적인 추가근무시간(주)	3.3(50)	2.7	1.7	2.2
기타 추가근무시간(주)	3.2(30)	3.5	2.5	2.8
당직 근무시간(주)	2.5(76)	3.2	2.1	3.1

(2) 퇴근시간이 늦는 이유

보육교사가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퇴근시간이 늦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행사준비’(46.4%)로 늦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모가 귀가시간을 지키지 않아서’(33.7%), ‘수업준비’(13.8%), ‘기타’(6.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여성개발원조사(2004)에서 민간개인시설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수업준비’(53.7%)로 인해 퇴근시간이 가장 지연되는 반면, ‘부모가 귀가시간을 지키지 않아서’인 경우가 3.7%에 불과한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서울시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맞벌이 인구가 많은 관계로 부모의 귀가시간이 일정치 않아 보육교사의 퇴근시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수 있다. <표 4-64>

<표 4-64> 보육교사 퇴근시간이 늦는 이유(복수응답)

단위: %, 명

구 분	본 조사
수업준비	13.8(48)
행사준비	46.4(161)
부모가 귀가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33.7(117)
기타	6.1(21)
계	100.0(347)

(3) 한달평균보수, 희망 월 보수

보육교사들의 한달 보수를 알아 본 결과, 평균 100.5만원이며, 조사대상 중 가장 적게 임금을 받는 경우는 최소 60만원, 최대 2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개발원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민간개인보육시설 보육교사 평균임금수준은 104.9만원으로 국공립 126.4만원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육교사의 희망 월 보수 평균액을 살펴보면, 129.4만원으로 국공립 보육교사 보수수준(126.4만원)의 임금을 희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65>

<표 4-65> 보육교사 한달평균보수, 희망 월보수

단위: 만원(명)

구 분		본 조사	한국여성개발원 조사		
			국공립	민간개인	계
보수(월)	평균	100.5(238)	126.4	104.9	112.6
	최소	60	100	74	30
	최대	200	191	155	191
희망 월 보수	평균	129.4(216)	-	-	-

(4) 처우관련제도

보육교사들의 처우에 관련한 후생복지제도를 살펴보면, 퇴직금제도의 경우는 56.7%가 ‘있다’고 답했으며, 초과근무수당의 경우는 11.2%만이 ‘있다’라고 보육교사의 절반 정도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며, 약 90% 가량의 보육교사들은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여성개발원(2004) 조사결과에서 보육교사의 91.5%가 퇴직금제도가 있고, 초과근무수당의 경우에도 20.7%가 ‘있다’라고 응답한 것에 비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본 조사에 응답한 서울시 보육교사들의 퇴직금,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후생복지제도가 상당히 미약한 것을 알 수 있다.

4대보험의 경우는 약 95% 이상의 교사들이 가입되어있다고 응답함으로써 제도의 시행이 대부분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월차휴가의 경우는 8.1%, 보건(생리)휴가 4.2%, 육아휴직제도의 경우는 9.0%만이 시행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밖에 연차휴가와 출산휴가제도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26.6%, 31.6%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4대보험 외에 근로기준법상에 나타난 법정휴가관련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표 4-66>

<표 4-66> 보육교사 처우관련제도

단위: 명,(%)

구 분		내용		계
		있다	없다	
퇴직금		56.7(135)	43.3(103)	100.0(238)
초과근무수당		11.2(25)	88.8(198)	100.0(223)
보험가입 여부	국민연금	98.1(252)	1.9(5)	100.0(257)
	건강보험	98.0(249)	2.0(5)	100.0(254)
	고용보험	97.3(250)	2.7(7)	100.0(257)
	산재보험	94.6(229)	5.4(13)	100.0(242)
휴가	월차휴가	8.1(16)	91.9(182)	100.0(198)
	연차휴가	26.6(55)	73.4(152)	100.0(207)
	출산휴가	31.6(61)	68.4(132)	100.0(193)
	보건휴가 (생리휴가)	4.2(8)	95.8(183)	100.0(191)
	육아휴직	9.0(16)	91.0(161)	100.0(177)

(5) 출산휴가 시 급여 및 비상근 교사활용

출산휴가시 급여의 지급 여부와 대체교사 활용정도에 대한 응답내용을 살펴보면, ‘유급’이 17.2%, ‘부분유급’이 22.7%로 조사되어 어떤 방식으로든 출산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는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산휴가시 ‘대체교사의 활용이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역시 48.9%에 불과, 대체교사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표 4-67>

<표 4-67> 출산휴가 시 급여 및 비상근 교사활용

단위: %, 명

구 분		빈도	계
휴가시 급여	유급	17.2(22)	100.0 (128)
	부분유급	22.7(29)	
	무급	60.2(77)	
휴가시 대체교사 활용	있다	48.9(87)	100.0 (178)
	없다	51.1(91)	

(6) 복무규정의 유무/ 부당한 서면계약이나 구두계약의 유무

보육시설의 복무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44.4%가 ‘있다’라고 답하였고, 28.2%가 ‘없다’, 27.4%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임용 시 부당한 서면계약이나 구두계약을 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72.1%가 ‘있다’라고 대답해 보육교사 4명중 3명은 부당계약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68>

<표 4-68> 복무규정의 유무/ 부당한 서면계약이나 구두계약의 유무

단위: 명,(%)

구 분		빈도	계
복무규정의 유무	있다	44.4(112)	100.0(252)
	없다	28.2(71)	
	모르겠다	27.4(69)	
부당한 서면계약 및 구두계약의 유무	없다	27.9(69)	100.0(247)
	있다	72.1(178)	

(7) 부당한 서면계약이나 구두계약의 종류

임용시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서면계약이나 구두계약을 한 경우, 그 종류가 무엇인가에 관해 가장 많은 응답은 ‘중도퇴직 금지’(27.5%)였고, 그 다음으로는 ‘부당한 출퇴근 시간의 강요’(24.6%),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했거나 적게 주기로 함’(2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근무과정 중 발생사고 및 과실에 대한 보육교사의 부당배상의무’와 ‘종교문제’등이 각각 7.2%, ‘일정기간 급여의 일부분만 받기로 함’(4.3%) 등이 부당한 서면계약이나 구두계약의 내용으로 조사되었다. <표4-69>

<표 4-69> 부당한 서면계약이나 구두계약의 종류

단위: %, 명

구 분	본 조사
결혼이나 임신후 퇴직하겠다는 약속	-
부당한 출퇴근 시간의 강요	24.6(17)
종교문제	7.2(5)
중도 퇴직 금지	27.5(19)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했거나 적게 주기로 함	20.3(14)
일정기간 동안 급여의 일부분만 받기로 함	4.3(3)
근무과정중 발생사고 및 과실에 대한 보육교사의 부당배상의무	7.2(5)
기타	8.7(6)
계	100.0(69)

4) 보수교육

(1) 교사연수

교사연수의 기회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보수교육이나 승급교육’이 있는 경우는 81.9%였고, ‘일반강습회나 세미나’는 76.5%로 나타났다. 보육시설별로 실시되는 자율연수의 경우, ‘아동관찰일지를 쓰고 토론모임’을 갖는 자율연수가 있다고 답한 경우가 58.3%로 가장 많았고, ‘강사초빙이나 동료교사를 통한 교육’이 42.2%, ‘전문서적을 읽거나 세미나 참석 후 토론’하는 자율연수 프로그램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32.0%로 반수를 넘지 못하였다.

<표 4-70> 보육교사의 교사연수 기회

단위: %(명)

구 분		있다	없다	계
보수교육이나 승급교육		81.9 (186)	18.1 (41)	100.0 (227)
보수, 승급교육을 제외한 일반 강습회나 세미나		76.5 (176)	23.5 (54)	100.0 (230)
보육시설 내 자율연수	이동 관찰일지 쓰고 토론모임	58.3 (119)	41.7 (85)	100.0 (204)
	강사초빙이나 동료교사를 통한 교육	42.2 (87)	57.8 (119)	100.0 (206)
	전문서적을 읽거나 세미나 참석 후 토론	32.0 (62)	68.0 (132)	100.0 (194)

(2) 교사연수 도움정도

교사연수의 기회가 있었던 경우 그 도움정도를 ‘매우 도움’, ‘약간 도움’, ‘별로 도움 안 됨’, ‘전혀 도움 안 됨’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4-71> 와 같다.

보수교육이나 승급교육의 경우 ‘매우 도움’(53.2%), ‘약간 도움’(37.7%), ‘별로 도움 안 됨’(6.3%), ‘전혀 도움 안 됨’(2.5%) 순으로 나타나 반수 이상이 보수·승급교

육을 통해 매우 도움을 받고 있으며, 90%이상이 보육활동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수·승급교육을 제외한 일반 강습회나 세미나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에 관해서는 ‘약간 도움’(48.3%), ‘매우 도움’(37.2%), ‘별로 도움 안 됨’(13.4%), ‘전혀 도움 안 됨’(1.2%)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강습회나 세미나의 경우도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응답률이 85%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보육시설 내 자율연수의 도움정도를 조사한 결과, 아동 관찰일지를 쓰고 토론모임을 하는 경우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48.1%, ‘약간 도움’(38.5%), ‘별로 도움 안 됨’(9.6%), ‘전혀 도움 안 됨’(3.8%) 순으로 조사되었다.

강사초빙이나 동료교사를 통한 교육에 관한 조사결과는 ‘약간 도움’(50.5%), ‘매우 도움’(34.0%), ‘별로 도움 안 됨’(11.3%), ‘전혀 도움 안 됨’(4.1%)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문서적을 읽거나 세미나 참석 후 토론하는 시설 내 자율연수의 경우는 ‘약간 도움’이 45.9%로 가장 많이 응답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매우 도움’(29.7%), ‘별로 도움 안 됨’(17.6%), ‘전혀 도움 안 됨’(6.8%)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이 교사연수 프로그램에 관해 긍정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보육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연수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고 다양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4-71> 교사연수 도움정도

단위: %(명)

구 분		매우 도움	약간 도움	별로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계
보수교육이나 승급교육		53.2 (85)	37.7 (60)	6.3 (10)	2.5 (4)	100.0 (159)
보수, 승급교육을 제외한 일반 강습회나 세미나		37.2 (64)	48.3 (83)	13.4 (23)	1.2 (2)	100.0 (172)
보육시설 내 자율연수	아동 관찰일지 쓰고 토론모임	48.1 (50)	38.5 (40)	9.6 (10)	3.8 (4)	100.0 (104)
	강사초빙이나 동료교사를 통한 교육	34.0 (33)	50.5 (49)	11.3 (11)	4.1 (4)	100.0 (97)
	전문서적을 읽거나 세미나 참석 후 토론	29.7 (22)	45.9 (34)	17.6 (13)	6.8 (5)	100.0 (74)

(3) 교사연수 참가 횟수

보수 및 승급교육을 제외한 강습회나 세미나 등의 교사연수 참가횟수에 관해 ‘1년에 1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1년에 2회’(29.9%)였고, ‘1년에 3회 이상’은 12.2%, ‘2년에 1회’라고 응답한 경우는 3.5%였다. 반면 ‘교사연수에 ‘참가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19.7%나 되어 교사 5명 중 1명은 보수 및 승급교육 외에 강습회나 세미나를 통한 교사연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80%이상의 교사들이 교사연수프로그램의 도움정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조사결과와 대비할 때, 약 20%가량의 보육교사들은 교사연수프로그램의 참가 기회가 원활하지 않아 어떤 식으로든 효과적인 보육활동을 위한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게 한다. 따라서 보육교사들이 보다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율상황에서 교사연수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의 보완과 지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4-72>

<표 4-72> 교사연수 참가 횟수

단위: %(명)

구 분	본 조사
참가하지 않는다	19.7(50)
2년에 1회	3.5(9)
1년에 1회	34.6(88)
1년에 2회	29.9(76)
1년에 3회 이상	12.2(31)
계	100.0(254)

(4) 교사연수에 참가하기 어려운 경우

교사 연수에 참석하기 어려운 이유에 관해 조사대상 절반에 해당하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낮 시간을 내기 힘들어서’(50.0%)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19.9%), ‘보육활동으로 너무 피곤해서’(16.7%), ‘비용이 부담스러워서’(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내용 중 특히 낮 시간을 내기 힘든 경우와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는 상호관련성이 높은 내용으로써 대체인력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다면, 보다 많은 보육교사들이 보육일과의 일부분을 교사연수에 투자하게 됨으로써 보육활동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지는 부분이다. <표 4-73>

<표 4-73> 교사연수에 참가하기 어려운 경우

단위: %(명)

구 분	본 조사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5.7(14)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	19.9(49)
연수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1.6(4)
보육활동으로 너무 피곤해서	16.7(41)
낮 시간을 내기 힘들어서	50.0(123)
교사 자신의 육아문제로	2.0(5)
기타	4.1(10)
계	100.0(246)

(5) 교사연수 시 대체교사 채용여부

연수나 보수교육을 받을 때, 대체교사를 활용하는지 여부에 관해 ‘채용한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8.4%, ‘간혹 채용한다’라는 응답은 21.9%로 나타났다. 반면 ‘채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는 29.7%로 한국여성개발원(2004)조사 결과에서 82.4%가량이 대체교사를 채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보육교사들이 대체교사의 활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74>

<표 4-74> 교사연수 시 대체교사 채용여부

단위: %(명)

구 분	본 조사
채용한다	48.4(124)
간혹 채용한다	21.9(56)
채용하지 않는다	29.7(76)
계	100.0(256)

(6) 희망하는 보수교육

희망하는 보수교육의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복수응답)를 살펴보면, ‘문제행동지도’(20.6%), ‘부모교육 및 상담’(18.8%), ‘영유아교수법’(12.9%), ‘영유아특별활동’(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여성개발원(2004)의 조사와도 유사한 결과로서 보육교사들이 희망하는 보수교육은 정책이나 일반 행정사항과 같은 측면이 아니라 교육 및 상담현장에서 보다 더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지식과 기술적 측면임을 알 수 있다. <표 4-75>

<표 4-75> 희망하는 보수교육(복수응답)

단위: %(명)

구 분	본 조사
보육정책	4.1(32)
세계의 보육동향	4.9(38)
보육시설 운영방법	6.1(47)
부모교육 및 상담	18.8(146)
영유아교수방법	12.9(100)
건강 및 영양관리	4.5(35)
안전교육	6.3(49)
환경교육	2.3(18)
영유아특별활동	8.6(67)
문제행동지도	20.6(160)
영아보육	3.9(30)
방과후교육	3.0(23)
장애아보육	2.3(18)
견학	0.4(3)
야간 24시간 운영	0.6(5)
기타	0.6(5)
계	100.0(776)

5) 직업인식 및 직무만족도

(1)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민간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수준에 대한 보육교사의 평가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4-76>과 같다.

크게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건강과 영양, 안전, 그리고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에 관해 조사되었고 각 항목은 ‘우수하다’, ‘보통이다’, ‘낮은 편이다’, ‘모르겠다’의 4가지 수준에서 평가되었다.

먼저 보육환경측면에서는 보육시설환경과 보육활동자료에 관해 조사했다. 보육시설환경의 경우 ‘보통이다’(60.5%), ‘낮은 편이다’(24.9%), ‘우수하다’(14.2%), ‘모르겠다’(0.4%)순으로 나타났다. 보육활동자료에 대해서는 ‘보통이다’(54.7%), ‘낮은 편이다’(31.4%), ‘우수하다’(13.2%), ‘모르겠다’(0.8%)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따라서 비록 과반수의 보육교사들이 보육환경측면에 관해 ‘보통수준’이라고 평가했으나 25-30% 가량은 보육환경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평가했으며, ‘우수하다’라는 평가는 15%수준 이하에 불과한 것을 볼 때,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관리측면에 대해서는 시설운영관리와 보육인력에 관해 평가했다. 시설운영관리에 관해서는 ‘보통이다’(60.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우수하다’(20.2%), ‘낮은 편이다’(15.5%), ‘모르겠다’(3.5%)로 조사되었다. 보육인력에 대해서는 60.4%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했으며, ‘낮은 편이다’(22.0%), ‘우수하다’(16.1%), ‘모르겠다’(1.6%) 순으로 나타나 운영관리측면 역시 전반적으로 ‘보통이다’라는 평가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보육과정측면에선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 보육활동의 두 측면에 관해 조사되었다.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에 관해서 ‘보통이다’(69.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우수하다’(17.3%), ‘낮은 편이다’(11.4%), ‘모르겠다’(1.6%) 순으로 조사되었다. ‘보육활

동'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7.0%가 '보통이다'라고 답했으며, '우수하다'(15.2%), '낮은 편이다'(7.4%), '모르겠다'(0.4%)로 나타났다. 보육과정측면에 있어서도 '보통'수준에 대한 평가가 가장 많았다.

상호작용측면에 대해서는 일상적 양육과 교사의 상호작용에 관해 서비스의 질이 평가되었다. 일상적 양육에 관해 61.8%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반면, 30.7%는 '우수하다'라고 답했다. 또한 '낮은 편이다', '모르겠다'가 각각 7.1%, 0.4%를 나타냈다. 교사의 상호작용 역시 '보통이다'(60.5%), '우수하다'(30.8%), '낮은 편이다'(7.9%), '모르겠다'(0.8%)로 조사되었다.

상호작용측면에 대해서는 30%이상이 '우수하다'라고 답함으로써 다른 측면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건강과 영양에 관련된 측면은 크게 청결과 위생, 질병관리, 급식과 간식에 관련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청결과 위생에 관해 52.3%가 '보통이다'라고 답했으며, '우수하다'(38.4%), '낮은 편이다'(8.5%), '모르겠다'(0.8%)순이었다. 질병관리에 대해서도 역시 과반수인 52.5%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했으며, '우수하다'(36.3%), '낮은 편이다'(10.1%), '모르겠다'(0.8%)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급식과 간식에 대해서는 50.6%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했고, 40.2%가 '우수하다'고 답했다.

건강과 영양측면에 대해서도 역시 '보통이다'라는 평가가 50%정도로 가장 많았지만, 다른 측면에 비해 '우수하다'라는 평가가 30~40% 이상을 차지하며, 서비스 질 평가영역에 있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안전에 관해서는 실내외 시설의 안정과 영유아 안전보호에 관해 조사되었다. 실내외 시설의 안정에 관해서는 51.8%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했으며, 33.1%는 '우수하다', 그 다음으로 '낮은 편이다'(14.8%), '모르겠다'(0.4%)의 순이었다. 영유아의 안전 보호는 55.4%가 '보통이다'라고 답했으며, '우수하다'라는 응답은 33.3%였다.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해서는 가족과의 협력과 지역사회와의 협조 차

원에 대해 평가되었다. 가족과의 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52.3%가 ‘보통이다’라고 평가했으며, ‘우수하다’(25.2%), ‘낮은 편이다’(21.3%), ‘모르겠다’(1.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와의 협조차원은 ‘보통이다’가 52.2%였고, ‘낮은 편이다’(29.6%), ‘우수하다’(14.4%), ‘모르겠다’(3.5%)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76>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단위: %(명)

구 분		우수하다	보통이다	낮은 편이다	모르겠다	계
보육환경	보육시설환경	14.2(37)	60.5(158)	24.9(65)	0.4(1)	100.0(261)
	보육활동자료	13.2(34)	54.7(141)	31.4(81)	0.8(2)	100.0(258)
운영관리	시설운영관리	20.2(52)	60.9(157)	15.5(40)	3.5(9)	100.0(258)
	보육인력	16.1(41)	60.4(154)	22.0(56)	1.6(4)	100.0(255)
보육과정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	17.3(44)	69.8(178)	11.4(29)	1.6(4)	100.0(255)
	보육활동	15.2(39)	77.0(197)	7.4(19)	0.4(1)	100.0(256)
상호작용	일상적 양육	30.7(78)	61.8(157)	7.1(18)	0.4(1)	100.0(254)
	교사의 상호작용	30.8(78)	60.5(153)	7.9(20)	0.8(2)	100.0(258)
건강과 영양	청결과 위생	38.4(99)	52.3(135)	8.5(22)	0.8(2)	100.0(258)
	질병관리	36.3(94)	52.5(135)	10.1(26)	0.8(2)	100.0(257)
	급식과 간식	40.2(104)	50.6(131)	8.9(23)	0.4(1)	100.0(259)
안전	실내외 시설의 안전	33.1(85)	51.8(133)	14.8(38)	0.4(1)	100.0(257)
	영유아의 안전보호	33.3(86)	55.4(143)	10.1(26)	1.2(3)	100.0(258)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가족과의 협력	25.2(65)	52.3(135)	21.3(55)	1.2(3)	100.0(258)
	지역사회와의 협조	14.4(37)	52.2(135)	29.6(76)	3.5(9)	100.0(257)

(2) 교사만족도

보육교사로서 느끼는 만족도에 관해 다음의 8가지 영역에 관해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의 4가지 수준에서 조사하였다.

먼저 급여수준에 있어서는 ‘대체로 불만족’(47.9%)이라는 응답이 응답자의 절반 수준으로 가장 많았다. ‘매우 불만족’(23.0%)인 경우와 함께 부정적 반응을 보인 응답자가 전체의 70%이상인 것을 볼 때, 보육교사들의 급여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낮다고 보여 진다.

휴가, 회식 등 복리후생의 수준에 관해 ‘매우 만족’(1.9%), ‘대체로 만족’(31.1%)에 해당하는 긍정적인 응답은 33%정도에 불과, 전체의 67%정도는 휴가, 회식 등 복리후생수준에 대해 불만족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교육 등 전문성 지원수준에 대해서도 역시 ‘매우 만족’(2.0%), ‘대체로 만족’(29.3%)은 약 30% 수준에 그쳐 전체의 70%정도는 재교육 등의 전문성 지원수준에 관해 불만족스러워하고 있었다.

근무시간에 관해서는 46.7%가 ‘대체로 불만족’이라 응답했고,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9.8%였다. 반면, 담당업무에 관해서는 61.4%가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적 전망에 대해서는 60% 이상이 ‘대체로 만족’(49.8%)하거나 ‘매우 만족’(10.7%)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적 인정에 있어서 44.6%가 ‘대체로 불만족’, 10.5%는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함으로써 부정적인 평가가 반수를 넘어 직업적 안정성에 비해 사회적 평가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교사를 위한 물리적 근무환경에 관한 질문에서는 46.5%가 ‘대체로 불만족’, 16.3%가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 60%를 넘는 보육교사들이 교사들을 위한 물리적 근무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상에서 보육교사로서 느끼는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직업적 전망과 담당업무에 관한 만족도 외에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표 4-77>

<표 4-77> 교사만족도

단위: %(명)

구 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급여수준	1.6 (4)	27.6 (71)	47.9 (123)	23.0 (59)	100.0 (257)
휴가, 회식 등 복리후생수준	1.9 (5)	31.1 (80)	41.6 (107)	25.3 (65)	100.0 (257)
재교육 등 전문성 지원수준	2.0 (5)	29.3 (75)	50.4 (129)	18.4 (47)	100.0 (256)
근무시간	1.9 (5)	31.5 (81)	46.7 (120)	19.8 (51)	100.0 (257)
담당업무	4.2 (11)	61.4 (159)	24.7 (64)	9.7 (25)	100.0 (259)
직업적 전망	10.7 (28)	49.8 (130)	33.0 (86)	6.5 (17)	100.0 (261)
사회적 인정	6.2 (16)	38.8 (100)	44.6 (115)	10.5 (27)	100.0 (258)
교사를 위한 물리적 (근무)환경	2.7 (7)	34.5 (89)	46.5 (120)	16.3 (42)	100.0 (258)

(3) 보육교사로서의 직업적 보람의 만족도

보육교사라는 직업에 어느 정도 보람을 느끼는가에 관해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가 ‘다소 보람을 느낀다’(61.9%)라고 응답했다. ‘매우 보람을 느낀다’고 응답한 경우는 28.8%, ‘별로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는 8.5%, ‘전혀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응답은 0.8% 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90%이상의 보육교사들은 보육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어느 정도는 보람과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78>

<표 4-78> 보육교사로서의 직업적 보람의 만족도

단위: %(명)

구 분	본 조사(빈도)
매우 보람을 느낀다	28.8(75)
다소 보람을 느낀다	61.9(161)
별로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	8.5(22)
전혀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	0.8(2)
계	100.0(260)

(4)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어려움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어려움 중 교사들이 가장 많이 지각한 어려움은 ‘업무량에 비해 낮은 임금’(43.0%)이었고, 그 다음은 ‘장시간 근무’(27.5%), ‘보육교사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10.0%), ‘교사로서의 전문성 향상 기회부족’(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4-79>

<표 4-79>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어려움(복수응답)

단위: %(명)

구 분	본 조사	한국여성개발원 조사		
	전체	국·공립	민간개인	전체
장시간 근무	27.5(140)	21.5	29.0	22.5(602)
업무량에 비해 낮은 임금	43.0(219)	32.0	33.0	30.5(819)
교사관계의 어려움	0.2(1)	1.7	0.0	1.8(49)
시설장과 관계의 어려움	2.0(10)	0.6	1.0	0.8(21)
보육교사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10.0(51)	14.5	4.0	12.0(322)
학부모와의 관계의 어려움	1.6(8)	4.1	4.0	5.0(133)
교사에 대한 자격관리의 미흡	1.6(8)	6.4	9.0	6.8(182)
교사로서 전문성 향상 기회 부족	8.6(44)	12.8	11.0	13.3(357)
지역사회와의 관계	0.2(1)	0.0	1.0	0.5(14)
보육프로그램 준비 및 운영	4.3(22)	-	-	-
기타	1.0(5)	6.7	8.0	9.7(182)
계	100.0 (509)	100.0 (1,204)	100.0 (700)	100.0 (2,681)

(5) 복지향상 방안

보육교사가 교사의 복지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보수의 현실화(42.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초과근무 수당 지급’과 ‘근로시간 단축’이 각각 19.3%, 법정휴가기간의 준수(8.7%), ‘필요시 대체교사 지원(4.5%)’과 ‘보수교육 강화(4.5%)’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국조사의 결과와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보육교사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실적인 보수와 정당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현안임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표 4-80>

<표 4-80>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복지향상 방안 (복수응답)

단위: %(명)

구 분	본 조사	전국 조사		
	전체	국·공립	민간개인	전체
보수현실화	42.6(152)	54.5	48.7	51.7
초과근무수당 지급	19.3(69)	6.5	17.3	15.2
필요시 대체교사 지원	4.5(16)	8.4	8.4	7.7
근로시간 단축	19.3(69)	20.1	14.9	14.4
보수교육 강화	4.5(16)	1.9	5.4	4.9
법정휴가기간 준수	8.7(31)	6.5	4.7	4.9
기타	1.1(4)	1.9	0.7	1.2
계	100.0(357)	100.0(154)	100.0(1,101)	100.0(2,066)

(6) 이직을 고려한 경험

보육교사들에게 보육교사직을 그만 두겠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는가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가끔 생각한다’가 73.1%로 가장 높았고, ‘생각한 적 없다’가 16.2%, ‘자주 생각한다’가 10.8%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 10명 중 8명이

상은 보육교사에 대한 이직을 어떤 식으로든 고려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4-81>

<표 4-81> 이직을 고려한 경험

단위: %(명)

구 분	본 조사	한국여성개발원 조사		
	전체	국·공립	민간개인	전체
자주 생각한다	10.8(28)	1.2	4.3	2.2(28)
가끔 생각한다	73.1(190)	44.0	76.6	49.5(637)
생각한 적 없다	16.2(42)	54.8	19.1	48.4(623)
계	100.0(260)	100.0(588)	100.0(329)	100.0(1,288)

(7) 이직희망이유

이직을 희망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근무량에 비해 봉급이 너무 낮아서’(39.2%)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근무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해서’(24.9%), ‘충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느껴서’(12.4%), ‘일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해서’(7.2%), ‘개인적인 문제로’(결혼, 출산, 육아)(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보수수준과 근무환경의 열악함이 보육교사의 이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4-82>

<표 4-82> 이직희망이유

단위: %(명)

구 분	본 조사
적성에 맞지 않아서	1.2(5)
근무량에 비해 봉급이 너무 낮아서	39.2(164)
충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느껴서	12.4(52)
근무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24.9(104)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아서	3.3(14)
인간관계가 어려워서	2.4(10)
개인적인 문제로 (결혼, 출산, 육아 등)	6.9(29)
일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해서	7.2(30)
기타	2.4(10)
계	100.0(418)

(8) 보육교사를 그만두고 싶지 않은 이유

보육교사직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고 한 조사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는 다음 <표 4-83>와 같다.

보육교사를 그만두고 싶지 않은 이유 중 ‘보육에 대한 보람과 사명감을 느끼기 때문에’(62.5%)와 ‘적성에 맞아서’(20.0%)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근무환경과 보수수준체계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보육교사에 대한 적성과 사명감이 보육교사직을 유지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4-83> 보육교사를 그만두고 싶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 분	본 조사
적성에 맞아서	20.0(8)
보육에 대한 보람과 사명감을 느끼기 때문에	62.5(25)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2.5(1)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에	2.5(1)
직장동료와의 인간관계가 만족스러워서	2.5(1)
근무환경이 만족스러워서	5.0(2)
기타	5.0(2)
계	100.0(40)

제3절 민간보육시설의 문제점과 대안: 심층인터뷰와 간담회 결과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육정책의 방향과 대안 설정에 있어서 표준화된 설문지를 통한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보육현장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와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민간보육시설의 시설장(6인), 관련 단체장(2인), 담당공무원(2인)을 비롯한 실무자 10인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민간보육 시설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2회의 간담회가 실시되었다. 인터뷰와 간담회는 현재 민간보육시설에서 경험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재정, 인력관리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토론되었으며 시설장의 입장에서 보는 해결방안들이 제안되었다. 특히 심층면접의 과정에서는 현재의 제한된 보육환경 내에서 개별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인터뷰와 간담회에서 토론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운영상 어려운 점

시설장들이 꼽는 운영상 어려운 점은 크게 시설간 과다경쟁과 정원규정으로 인한 원아모집의 어려움, 잡무와 서류작업, 과도한 행정규제, 현장의 사정을 고려치 않는 제도개선 등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에서의 어려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원아모집의 어려움

(1) 시설간 과다경쟁

- 공개수업, 참여수업, 바자회개최, 각종 홍보전단 등의 배포를 통해 기관별로 원아 모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거리제한 없이 보육시설이 설립됨으로써 보육시설간 과다출혈경쟁이 빚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인가 시 거리제한 규정은 물론 시설의 양적증대보다는 기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인건비, 환경개선비)이 병행되어야 함.

(2) 정원모집

- 전산화된 시스템을 통해 정원 외 아동을 받을 경우 바로 지원이 중지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음. 예) 강남구
- 그러나 실제로 정원만으로 현 보육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음. 더구나 대기자를 받아서는 안되고 단 한명이라도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즉각 지원을 중단한다는 규정은 지나치게 모순적임, 보육아동이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수시로 이탈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아무런 보완책도 마련해주지 않으면서 대기자를 받지 말라는 것은 시설의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이고 국공립 시설의 경우 대기자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측면과 비교해볼 때, 형평성이 어긋나는 조치임.

2) 과다한 행정업무

(1) 잡무와 서류정리

- 여성부로 보육사업이 이관되면서 관련 문서만 해도 수십 가지이고, 평가인증에 관련된 서류는 더 많음. 대부분 매일 체크해야하는 서류들이라 시간소요가 너무 많음.
- 서류관련 된 일은 대부분 원장이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시설은 전담 교사가 있어야할 정도임, 그러나 그럴 경우 기관의 사정이 한 교사에게 너무 세세히 공개되

어 원장과 교사간 사이가 불편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 예전과 달리 교사들이 직접적인 업무 외 부담을 지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 하에 잡무가 너무 많음. 교사가 차량, 취사, 청소, 아이돌보기 등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차량운전의 경우에도 운전기사가 있지만, 실제로 원장, 부원장이 총 동원되어야 하는 실정.

(2) 행정규제

- 50명만 넘어도 공동급식 신고를 해야 하는데, 요구되는 규정을 모두 따르는 게 현장의 상황 상 쉽지 않다 함.
- 여성부의 비현실적인 요구와 규제가 무엇보다 힘든 상황. 자칫 규정에서 어긋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시설마다 어떻게든 걸리지 않아야 한다는 의식팽배로 위축·불만이 가득한 상태라 함. 보육사업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을 때와 비교해서 여성부의 경우 유아교육 경력 전문가의 부족이 현장을 외면한 행정사항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만이 많음.

(3) 4대보험 관련

- 2005년 3월에 4대보험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교사처우개선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통보로 급작스럽게 보험가입을 완료하느라 재정부담을 진 기관이 많음. 처음부터 연차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했으면 더 바람직했을 것임.

3) 재정난

- 보육료만으로 시설을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 시설환경개선비와 임대료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는 요원한 실정

- 기타비용비로 추가 수납하는 것은 대부분 교재·교구비로 사용되고 특별활동비는 대개 교사초빙비로 충당되는 경우가 많음.
-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불법을 자행하거나 카드 돌려막기 등의 위험한 상황을 연출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 비일비재함.

2. 재정 / 보육료 등

1) 영아반 지원을 유아반 지원까지 확대

- 영아반 지원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 증대를 위한 정책 중 하나이지만 지원 자체가 지나치게 영아반에 집중되어 있어, 유아에 대한 지원 증대가 필요한 실정임.
 - 현재 시설 중에서 영아반을 운영하지 않고, 유아반만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그러나 출산율 저하로 인해 영아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시설이 위치한 지역마다의 특성이 있는데 꼭 영아반을 두라는 것은 영유아법의 모순임.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 영아보육료와 유아보육료 간의 차이를 줄여야함, 영아보육료는 너무 높게, 유아보육료는 너무 낮게 책정된 결과임.
- : 실제 교육비는 유아반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최소한 급간식비 지원이라도 필요함.

2) 보육료 자율화

보육료를 자율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다양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장이 민간보육시설의 경쟁력확보와 질 향상을 위해 향후 보육료가 자율화되어야

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제도보완과 지원책이 확보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보육료의 자율화가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가장 효과적인 보육을 위해 필요한 보육료의 수준에 대해서는 ‘50만원 정도’를 제시하는 시설장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보육료 자율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다양한 근거와 의견이다.

(1) 찬성의견

- 현재 보육료는 지역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책정되어 있음, 그러나 지역별로 임대료와 물가수준이 틀리기 때문에 보육료를 자율화해야 민간시설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임.
- 보육료가 똑같은 결과로 서비스 역시 일률적일 수밖에 없음, 부모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 이상 민간시설의 경쟁력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음.
-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육료 자율화가 이뤄지거나, 민간보육시설의 지원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증대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는 의견이 많음.
- 질 높은 교육을 희망하는 차원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자율화는 필요한 부분임.
- 특별활동이나 프로그램의 구성은 어린이집마다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음. (예: 원어민 영어/오르라활동 등), 기본보육료 19만 8000원은 사실 너무 적은 금액임에도 19만 8000원 안에 간식료까지 포함되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자칫 부모가 싸준 간식이라도 먹일 경우 규정에 위배되어 제재를 받는 것은 비현실적이지 않을 수 없음. 결국 19만 8000원으로 기관을 운영하려면 정원 외로 받거나 시설을 넓혀서 정원수를 넓히는 방법 외엔 없음. 보육료 자율화를 논하기 전에 비현실적인 규정에 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함.

(2) 반대의견

- 국공립 시설의 수가 많고, 민간운영시설의 수가 적을 때는 보육료의 자율화는 어느 정도 가능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현재 민간시설이 90%를 넘는 상황에서 ‘민간이 알아서 살아날 수 있는 시설만 살아나라’라는 식으로 민간시설을 생존경쟁 시장에 내몰 경우 보육정책 전반이 표류할 위험이 큼. 따라서 자율화는 시기상조임.
- 부모의 의식수준이 아직 성숙되지 못했음. 비싼 곳이 무조건 좋다는 의식이 팽배한 상태에서 기관마다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겪는 스트레스가 적지 않음. 이런 상태에서 보육료 자율화는 자칫 부정확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큼.

3) 교사처우개선비

(1) 처우개선비 보장

- 정원의 70%까지 보육아동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교사의 처우개선비는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특히 영아반은 3명 이상이어야 처우개선비 지급하고 있는데 시설을 운영하다보면, 정원이 미달되는 반도 있기 마련인데, 이럴 때마다 교사의 처우개선비가 불안정하게 지원되는 것은 부당함.

4) 차등보육료

(1) 차등보육료로 인해 시설부담의 과중

- 법정 저소득층을 제외한 2, 3, 4층에 대해서는 국공립수준을 받고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닌 시설이 부담하게 되는 현 상황은 불합리함. 특히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의 경우 시설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결과를 낳음.

(2) 원장 재량으로 차등보육료 수납 여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 법정 저소득은 아니지만 보육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 저소득이지만 지불 능력이 있는 경우들이 많음, 시설장의 경우 이에 대한 분별이 가능.
- 차등보육료를 지원받는 부모의 경우 보육상 작은 문제만 생겨도 우리아이가 돈을 적게 내서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아닌가해서 항의를 해오는 경우가 많음.
- 보육료를 내지 못하는 아이의 경우나 차등보육료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 모두 기관의 부담이 됨. 차등보육료와의 차액을 받는 것은 불법이지만, 부모에게 기관의 사정과 차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후 차액을 받고 있는 경우도 많음.
- 차등보육료에 의한 학부모 지원은 매우 바람직한 행정조치이나 실제 원의 운영에는 도움되는 부분이 없음.

5) 아동별 지원의 문제점

- 보육비를 최대한 저렴하게 해 주는 시설을 찾아다니며, 부모로서 유세를 부리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음.
예) 셋째아 지원비(0~4세까지 보육시설로 35만원 지원)로 셋째아를 보내지 않고 두 아이를 받아달라고 하는 경우 또는 반일제의 경우 지원비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
- 아동별 지원만으로는 기관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음. 시설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

6) 차량운행비 지원

- 국공립시설은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 반면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대부분 차량운행을 하고 있음

- 따라서 차량운행비를 지원하든가 모든 시설에 대한 차량운행 금지하는 방침이 필요함.

: 경쟁적인 차량운행 막고, 차량운행비 부담 줄이며, 가까운 곳의 보육시설 이용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7) 행정적인 기준 완화

- 급간식비 사용 시 법인카드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시장에서 이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기준의 완화가 필요함.

8) 야간보육수당

- 구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활성화와 기준이 필요함, 예를 들어 은평구는 야간보육에 대한 욕구가 높는데, 200개 이상 시설 중 2개소만 지정받아 그 시설만 지원을 받고 있는 형편인 반면, 강동·강남구는 원하는 시설 다 지원해 주고 있어 구간 차이가 많음.
- 일관된 정책이 필요 : 야간보육수당이 처음 발표한 지원액 1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들어 혼란 빚음.

9) 환경개선비

-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재정지원, 환경개선비 지원, 자율성 보장 등은 가장 필수적임.
- 시설개보수관리
: 평가인증제 관련 시설요건에 따른 개보수비용(소방시설, 방화벽지 설치 등)도 시설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음, 규정이 정해지면 우선비용을 지원

해준 후, 개선사항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무조건 규정에 맞추라는 식은 반감을 일으킬 소지가 큼.

- 시설개선을 위해 3000만원씩 시설에 용자를 해준다고는 했지만, 담보제공이 전제되므로 실효성 없는 규정에 불과함. 대부분 시설이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담보가 제공되어야하는 용자신청은 지원할 수도 없기 때문.

10) 보험료 외 기타.

- 교사 경력을 인정해주려면 4대 보험은 필수이지만 시설입장에서는 그 비용이 만만한 것은 아님. 12월부터 생기는 퇴직보험도 사실상 시설에는 부담이지 않을 수 없음.
- 전기, 전화, 냉난방비에 대한 세제 감면이 필요함.
- 취사부 지원으로 25만원이 지원되고 있지만, 월급 100만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3. 평가인증제도

평가인증제의 실시에 대해서는 시설운영을 위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됨에 따라 보육시설의 환경개선의 기회가 되며, 문서화를 통해 보육행정의 틀이 제시되어 보다 체계적인 시설운영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장들은 현 상황에서 평가인증제가 그대로 진행되기에는 선결해야 할 과제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센티브에 대한 명확한 제시의 필요

- 환경개선비 등을 먼저 지원하겠다고 하나, 구체적 계획 없음
- 참여한 국공립시설에는 시설개보수비 우선 지원하면서 민간시설에는 별다른 동 기부여 안이 없음.

2) 평가항목의 기준이 국공립 시설기준에 준하여 구성

- 영역별 보육·학습공간을 확보 : 대부분의 민간보육시설이 협소, 물리적 공간 확보가 쉽지 않음.

3) 재정적 지원 없이 평가인증항목에 맞는 환경구비와 개선요구는 민간보육시설의 재정적 상황으로는 불가능

- 인증조건에 맞는 시설관리비용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판단, 평가인증을 포기하는 기관이 많음.
- 우리 현실에서 유럽식(독일)의 아동 대 교사비율 3:1의 발상은 전혀 국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고 보는 의견도 많음. 아동 3명당 교사지원금이 100% 다 나오는 독일에 비해 아동 1명당 35만원, 즉 3명의 아동이 105만원 수준의 보육료를 내는 우리 현실에서 교사인건비 80만원을 주고 나면 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보육료를 통해 전혀 융통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됨. 이런 현실에서 평가인증제가 요구하는 시설환경개선비의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봄.

4) 평가항목

- 시설의 기준만 높이는 것은 불합리함. 시설에 대한 많은 규정과 개선이 꼭 보육

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은 아님에 대한 제고가 필요함.

- 평가인증에 추가된 장애아 편의시설 설치에 세입자와 상가시설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이며, 기존시설에 설치할 경우 자칫 경사가 심해 사고를 유발할 우려 있음, 따라서 신설 시설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는 융통성 필요함.
- 평가항목으로 서비스 질의 전부를 평가하는 것은 부당함, 평가인증지표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음.
- 예)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 단 몇 분 안에 평가하기 어려움, 관찰자(인증단)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객관적인 평가가 전제되어야 가능.
- 일괄적인 지표가 아니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기준 적용이 필요.
- 평가의 객관성 확보 필요 : 하루에 잠깐씩 와서 파악하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적어도 이틀정도는 기관의 운영상황을 살펴봐야 보다 객관적인 평가인증이 가능하다고 봄.
- 평가인증제와 관련된 서류의 종류가 너무 많음 : 꼭 필요한 것을 간소화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4. 보육프로그램 - 특별활동

현재 보육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육활동 외에 추가특별활동과 특기적성교육의 경우는 보육료 외 추가납부금지가 금지되어있다고 한다. 하지만 보육시설간 경쟁에서 차별성을 나타내고 부모의 교육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육활동 내 특별활동 및 특기적성교육을 배제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특별활동과 관계된 사안에 관해 시설장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아동 및 아동의 안전 등의 이유와 특기적성에 대한 부모의 요구가 높기 때문에 추가금액 허가가 계속 건의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법적기준이 너무 엄격해 현

실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특기적성교육에 관한 기준을 완화할 필요 있음.

- 부모의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지 않을 경우 보육시설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음, 따라서 법을 어기지 않을 수 없음. 현재 보육 관련 모든 비용은 통장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19만 8000원 외의 비용이 들 경우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다른 루트를 통해 수납할 수밖에 없음(학기 초에 부모 O.T에서 보육료에 관해 설명, 기타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다른 통장입금이나 현금수납을 통지하고 있는 실정)
- 구별 특별활동비에 대한 기준도 다르고, 규정된 금액의 기준이 너무 낮은 것에 관한 애로사항이 많음. 교사인건비, 재료비를 충당하고 나면, 시설운영에 활용할 돈은 거의 확보되지 않음. 결국 사재를 털어 교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비일비재함.
- 특별활동이 대개 원장의 교육적 재량에 좌우되어 실시되는 경우가 많고, 강사의 선정 역시 주로 원장의 개인 네트워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구 차원에서 특별활동 교사의 자료를 확보·제공하고, 과전해주는 것도 기관운영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예>체육교사 등)

5. 보수교육

현재 보육시설에서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는 보수교육의 형태는 보육교사 중 한 명이 외부 재교육에 참여하고 난 후 돌아와 다른 교사들에게 교육받아온 정보를 공개하는 형식이나 아예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보수교육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시설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보수교육의 활성화 필요

- 지역사회 또는 몇 개 지역별로 묶어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보수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함.
- 서울시 전체보다는 구차원에서의 보수교육의 확충이 필요함 : 지역사회 또는 몇 개의 지역별로 묶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 필요, 사설교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보수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이 큼.
- 보수교육비 지원 사례 : 관악구 - 중식비 포함하여 100% 지원함.
- 원장과 교사들에게 우수교사 연수, 시설견학 등의 기회 제공 필요함.

2) 제도의 개선 필요

: 교사들의 자기개발시간과 휴식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타 공무원(초등학교, 유치원교사 등)에게 있는 육아휴직, 육아휴직이 보육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방학제도도 없음, 교육을 받기위해 휴직한 경우조차도 그 기간 동안의 경력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 상황임.

6. 보육시설운영위원회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실효성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시설장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운영위원회의 취지에 관해서는 공감하지만, 현장을 제대로 반영치 못한 이상적인 탁상공론이라는게 지배적인 의견이었다.

시설입장에선 시설을 운영하면서 완전히 투명하거나 항상 문제가 없을 수만은 없는데 운영위원회를 통해 기관의 사정이 모두 낱알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갖거나 시설운영을 간섭하는 제약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시설 아동의 수가 100명이 넘어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힘든 경우가 아니라면, 하루 종일 아이들을 보육하는 생활시설에서 50명 수준의 아동에 관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교사들의 경우 보통 1달에 1번은 교육일지를 적어 부모님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는 상황에서 굳이 보육운영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운영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해도 참여하는 부모도 거의 없을 것임은 물론이고 평소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던 부모님들이 보육운영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유인될 리도 만무하기 때문에 더욱 그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7. 부모/지역사회/협회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

1) 부모와의 협력

보육활동에 관해 부모와 협력하는 부분은 크게 보육과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교환하는 것과 부모교육을 제공·참여하는 것 등이다.

(1) 보육정보의 제공 및 교환

- 연 보육계획안, 보육활동, 그리고 실시한 프로그램 등을 문서화하여 가정통신문 전달
- 부모와의 정기적인 전화통화를 통해 아동의 보육과정에 관해 의사소통
- 학기 초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보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진행되어질 보육활동에 대한 부모의 협력과 동의를 얻음

(2) 부모교육

- 봄·가을 학기별 개별면담이나 참여수업을 진행, 모임 이후에 다과회를 통해 자

연스럽게 부모교육 진행, 참여수업 후 학부모들이 원의 현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이 많음.

- 학부모와 함께 김장/ 간장 담그기 등의 행사를 진행.
- 그러나 취업모가 아닌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시설에서 부모의 참여율이 낮은 관계로 프로그램 개설 의도와 달리 곧 흐지부지되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임.

2) 지역사회와의 협력

지역사회와 보육시설이 협력하는 모습은 크게 보육활동에 있어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과 보육시설이 지역사회의 활동에 참여·봉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1) 보육활동에 있어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의 예

- 지역구내 공공시설 이용(동사무소, 우체국, 소방서 안전교육 등).
- 야외활동(근린공원, 인근아파트 실외 놀이터 등 사용).
- 보건소 등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 민간시설 협조(이마트 시장놀이, 박물관, 기관견학 등).
- 학생 자원봉사자의 활용.

(2) 지역사회의 활동에 참여 및 봉사

- 인근 원끼리 연합해 경로잔치, 독거노인 생일잔치 등.
- 지역축제와 행사에 참여,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전달 등.

그러나 이상과 같은 협력과정이 보다 더 원활히 그리고 폭넓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정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인근 아파트 실외 놀이터의 활용시 주민거부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많음.
: 관리 사무소에 요청,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초등학교와 연계 방과 후 교실 실시하는 것 필요.
- 보건소를 이용한 보육아동 무료 건강검진 의무화가 필요함.
- 지역정보의 제공 필요.
- 공공기관을 이용할 경우 공문발송을 통해 허가가 보다 쉽고, 원활히 이루어지는 체계 필요.

3) 보육시설 간 협력

(1) 공동구매

- 실시간으로 보육아동의 양육과 보호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보육시설의 운영에 있어 시장보기는 시간과 인력면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
- 따라서 같은 지역 시설끼리 식재료 공동구매에 대한 욕구가 크지만, 보관상 어려움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큼.
- 특히 50인 이상 규모의 시설인 경우는 식재료를 반드시 냉동차로 운송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구 차원에서 냉동차를 구입·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길 희망함.

(2) 연합회 활동

- 월 1회 가량 연합회를 통한 정기 모임.
- 정보제공·방향설정 제시 등을 통해 시설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됨.
- 연합회 단위의 행사 운영 사례가 많음.
- 정보 및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활용.
: 예> 연합회·구청·보육정보센터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예: 동작구)

(3) 기타활동

- 연합 미술공모전을 개최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행사참관(마술쇼)등을 함께 기획.
- 시설별 시설장들끼리 기관운영의 애로사항이나 정보교류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그러나 바쁜 일정에서 시간을 내기는 쉽지 않아 밤시간을 활용해야 가능한 실정.

4) 구청과의 협력

(1) 구청 가정복지과와의 관계

- 협조적이나 때론 융통성 없는 경우가 많음, 특히 구 행정이 서울시와의 민감한 사안인 경우에 더욱 그런 것으로 느껴짐.
- 보육담당자가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시설과의 의사소통의 통로가 원활, 따라서 한 분야에 노하우가 있는 실무공무원이 많이 필요함. 특히 보육분야의 경우 업무량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관계자가 보육부분의 담당을 기피하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구 행사

- 구 차원에서 구, 시설, 학부모, 원아 등이 함께 하는 체육대회를 개최
: 보육시설의 홍보 및 이미지 개선에 기여, 교사들의 사기진작의 효과를 가져옴.
- 구청장의 마인드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수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음. 구 차원에서 원장교육,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 취사부와 조리사를 위한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육시설별로 주말농장 등을 분양·운영하도록 도와준 성공적 사례 : 예>동작구

8. 보육정보센터

보육시설 사례조사를 통해 보육정보센터가 보육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사교육, 부모교육을 위한 자료제공 및 프로그램.
- 보육프로그램의 구성을 위한 다양한 자료의 제공.
: 연간보육그림 계획, 커리큘럼 소개, 보육활동을 위한 교수기법, 새로운 프로그램 소개 등.
- 시설연계망을 통해 타 시설 견학기회 제공.
- 보육시설 간 정보공유의 장 제공.
- 교사승급교육 기회 및 프로그램 제공.
- 보육아동 영양관리를 위한 식단표 제공.

- 대체교사 및 기타인력 DB 제공.
- 시설 간 활동자료 전시회나 연합활동 기회 제공.
- 평가인증제와 관련한 정보 수집·조력.

하지만 보육정보센터의 다양한 활용분야에도 불구하고 보육현장에서는 정보센터의 실질적인 도움정도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만 있지는 않았다. 우선 평가인증제에 관련한 정보수집이나 보육활동 전반에 관한 연간 계획 등과 같이 정책과 행정 정보 및 자료를 지원받는 것에는 정보센터의 인지도가 높았다. 하지만 실제 세부보육프로그램에서 활용하기 위한 응용자료 및 보수교육 지원 등의 필요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프로그램이 보육현장의 요구를 포괄하기에는 다소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off-line상의 직접지원이 부족하고, 센터의 수가 적고, 위치 역시 편중되어 있는 점도 센터의 이용을 용이치 않게 하는 요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불어 보수교육 및 보육교사 연·휴가 등에 대비한 대체교사제도 역시 보육정보센터의 DB 및 지원프로그램의 수급이 원활치 않거나 불완전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런 이유로 실제 보육프로그램에 활용하는 자료의 대부분은 <월간보육>, <꼬망새>와 같은 유아교육관련 잡지에서 소개되는 보육정보와 관할 유치원 커리큘럼 등이 활용되고 있으며, 많은 경우 기관장의 보육노하우와 경험에 의존되어 기획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보다 유익하고 변화하는 아동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보육프로그램을 기획·적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보육정보를 쉽게 접하고 직접 응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하는 만큼, 보육정보센터가 보다 현실적이고 선진적인 보육프로그램의 보급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의견이 많았다.

변화와 특성 없이 운영되는 보육프로그램도 문제지만, 설사 다양한 보육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라 해도 사설기관을 통한 교육과 강사초빙으로 비싼 교사

및 프로그램 교육비를 부담해야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열악한 보육현장을 감안할 때, 보육정보센터의 지원이 절실한 부분이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사설교육기관에서 운영되어지는 교사교육프로그램의 예를 보육정보센터에서 적용해볼 수 있는 면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실제 보육현장의 보육교사들의 경우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교구를 제작하거나 교안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다고 한다. 이런 경우 사설교육기관에서 제공되는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교수학습에 관한 일반이론이 아니라 다양한 교구들을 직접 제작해보면서, 자신이 속한 해당 보육기관의 현실에 맞게 응용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경험은 실제로 보육교사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사설교육기관이 보다 다양한 교육내용과 강사를 초빙, 실습이 가능한 교육공간의 확보 등을 통해 현장의 욕구에 적절히 부응하고 있는 모습은 향후 보육정보센터 내의 교사교육프로그램 등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하는지 참고가 되는 부분일 것이다.

제 V장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수준 향상 방안

제1절 기본방향과 정책목표

제2절 핵심정책과제

제3절 서울시 중점추진과제

제 V 장 |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 방안

제1절 기본방향과 정책목표

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보육업무가 기존의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고,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는 등 보육에 대한 변화와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빠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의 개선방안 모색은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의 틀 안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와 보육의 공공성 확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다양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 민간보육시설이 보육현장의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대안모색도 궁극적으로는 보육정책의 이 두 가지 기본방향 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는 민간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구체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이 따라야 할 것이다.

보육서비스의 질적향상과 관련하여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강화하였고 표준보육과정 제정, 평가인증제 실시,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등 새로운 제도의 실시를 명시하였다. 이러한 제도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보육현장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제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정책방향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민간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정책목표를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하였다.

- 목표 1: 민간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 목표 2: 민간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제2절 핵심정책과제

1. 민간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를 통한 보육의 공공성 제고

보육에 대한 사회 및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보육의 공공성 확립이 국가적 차원의 보육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민간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도 보육의 공공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의 핵심은 정부의 책임 강화이며 곧 보육비용 중 정부부담률을 높이는 한편 이러한 재정이 보육현장에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는 민간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재정지원과 이에 따른 관리감독을 통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보육지원정책의 방향은 시설별 지원보다는 아동별 지원으로 가는 추세이나 시설설비 면에서 국공립 시설과 큰 차이를 보이는 민간시설에 대한 시설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즉, 현재의 보육정책이 표방하는 아동별지원, 평가인증제 등 ‘경쟁을 통한 질 관리’는 어느 정도 수준의 보육의 질이 보장되는 시설들이 적절히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의 경쟁은 오히려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2. 민간시설의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및 근무조건 향상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로 결정되며 보육교사의 자질은 수준 높은 교사 양성 교육과 적절한 근무환경 및 처우가 주어졌을 때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보육교사 양성과정은 단기간인 1년 과정의 보육교사교육원을 통한 미시적인 교사수급에 중점을 두어왔기 때문에 보육교사 양성교육 과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보육교사들의 근무실태는 낮은 보수와 과중한 업무로 특징지어져 있으며 신분보장이 되지 않고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유희정, 이미화, 2004). 보육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포괄적인 제고는 보육교사의 처우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보육교사 보수체계 정비

정부의 보육지원 확대와 더불어 보육교사들의 보수가 다소 상향되고 있으나 업무의 특성, 분량에 비해 아직까지도 매우 낮은 현실이다<(표 5-1)참고>. 보육교사의 초임은 986,409원으로 사회복지시설 봉급표에 의한 것으로 유치원 교사 초임 1,463,400에 비해 매우 낮다(서문희, 2003). 더욱이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실제 정해진 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보육교사의 임금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보육교사의 낮은 임금은 우수한 인력이 보육현장에 진입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정 임금지급 체계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표 5-1>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초봉비교(2005년)

단위: 원

구분	단가	보육교사 (1호봉)	유치원		
			2년제 (6호봉)	4년제 (비사범:8호봉)	4년제 (9호봉)
총액		14,412,000	22,750,000	23,698,000	24,180,000
월액		1,201,000	1,895,833	1,974,833	2,015,000
봉급		8,808,000	9,762,000	10,330,800	10,620,000
호봉		734,000	813,500	860,900	885,000
제수당계		5,604,000	12,988,000	13,367,200	13,560,000
상여금		2,202,000	3,660,750	3,874,050	3,982,500
체력단련비			2,033,750	2,152,250	2,212,500
효도휴가비			813,500	860,900	885,000
기말수당	50%, 4회	1,468,000			
정근수당	50%, 2회	734,000	813,500	860,900	885,000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전수당	20,000	240,000			
특수업무수당			4,320,000	4,320,000	4,320,000
보전수당 (5년 미만)	23,000		3,000,000		
교직수당	250,000		1,320,000	3,000,000	3,000,000
담임수당	110,000		1,207,080	1,320,000	1,320,000
초과근무수당			100,590	1,207,080	1,207,080
시간외 수당*	6706원, 15시간		5,007,250	100,590	100,590
실비수당		3,162,000	960,000	5,173,150	5,257,500
정액급식비	80,000	960,000	1,200,000	960,000	960,000
교통보조비	100,000		813,500	1,200,000	1,200,000
명절휴가비	50%, 2회	734,000	2,033,750	860,900	885,000
가계지원비	50%, 4~5회	1,468,000	189,583	2,152,250	2,212,500
부담금 (사학연금+건강보험비)				197,483	201,500
보험부담금		19,216			
국민연금		54,045			
고용보험		8,287			
산재		6,678			
퇴직금		100,083			
총월액		1,389,309	2,085,417	2,172,317	2,216,500

*주: 시간외 수당은 총월액에서 제외

4. 평가인증제 참여 확대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도입된 평가인증제가 실시되기 시작했으나 민간시설의 참여는 매우 저조하다. 이는 현재 평가인증제가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민간시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평가인증제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원칙적으로 평가인증제를 통한 ‘인증’ 자체가 인증제의 인센티브이나 인증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좀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증을 받은 시설에 한해서만 정부지원을 단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평가인증의 결과를 민간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제3절 서울시 중점추진과제

1. 보육예산 확대와 관리를 통한 공공성 강화

1) 민간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지원 방안 모색

현재 민간보육시설의 운영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시설보수비용과 차등보육료 차액에 의한 부담이다.

차등보육료 지원으로 많은 저소득층 부모들이 보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나라 보육정책에 있어서 매우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민간시설의 경우 정부지원시설의 보육료를 기준으로 한 차등보육료 지원액과 민간시설의 실 보육료 간의 차액을 민간시설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정부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수납하는 보육료에 대부분의 보육비용을 의존하고 있는 민간시설의 운영특성을 고려할 때 보육료 차액을 시설의 부담으로 떠안기는 것은 민간시설의 운영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뿐이다. 때문에 일부 시설들은 실제로 차등보육료지원의 차액을 부모로부터 수납하고 있으며 일관성 있는 지침이 부재한 실정이다. 궁극적으로는 이용시설의 유형과 상관없이 저소득층 부모들에 대한 지원과 보육비용은 동일하게 되어야 할 것이나 민간시설에서의 보육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민간시설에서의 차등보육료 차액 부담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따라서 차등보육료 차액을 중앙정부, 혹은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해 주거나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도록 일과성 있는 지침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평가인증제의 실시와 더불어 강화된 시설기준을 충족

시킴을 위해 시설의 개보수가 요구되는 민간시설들이 많으나 그 비용부담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시설 증, 개축 지원은 국공립법인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모범운영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서비스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평가인증제 참여를 조건으로 한 시설개선비의 일부지원을 통해 인증제 참여 유도와 시설지원의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시설개선비 지원, 교사 인건비 지원 등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는 민간시설이 정부지원시설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은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일정기준을 갖춘 보육시설에 제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다른 보육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공립, 민간의 구분 없이 동일한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시설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동일한 수준의 제도적 관리, 감독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민간시설의 예산관리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투명한 운영관리를 통한 신뢰감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민간시설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동시에 지적되고 있는 것이 운영의 자율성 확보의 문제이다. 특히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의 형식과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중복성과 비효율성이 지적되기도 하는데 특히 지원신청과 감독, 관리와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들이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지적이다. 이것은 원장이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담당해야 하는 소규모 시설일수록 그 어려움이 더하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일부 실무자들은 시설의 설비, 환경, 운영기본에 관한 기준들이 시설설치 시에 구체적으로 엄격히 명시되어 관리되고 이후에는 시설운영에 있어서 가능한 한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의 기준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기도 하였다.

2) 민간보육시설의 표준보육비용 현실화를 위한 추가지원 방안 모색

현재의 보육비용은 1999년 표준보육단가체계에 기초하고 있다. 표준보육비용은 1999년까지 보육사업지침에 제시되어 오다가 그 이후 표준보육단가의 고시는 각 시도에 위임되었고 기존의 표준보육단가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정부의 지원기준 보육료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표준보육단가가 실제의 보육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음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최근 발표된 표준보육단가(2005)는 현재 정부지원시설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설의 유형과 상관없이 일정수준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국공립시설과 민간보육시설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표준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국공립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생산을 위해 투입된 비용은 엄격히 다르다. 즉, 민간시설의 설치비용과 임대료가 포함되지 않은 표준보육비용은 실제 민간시설이 부담해야 하는 보육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임대율이 높은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국공립시설기준의 보육서비스 운영을 고려하여 책정된 보육료에서 임대료를 지불할 경우 정원초과와 같은 변칙운영이나 부실한 급식 등으로 보육서비스의 수준은 구조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시설의 규모, 위치에 따라 임대료 및 설치비 수준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반영한 표준보육비용 산정은 쉽지 않을 것이나 현실적인 보육비용 산정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민간시설의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은 국공립보육시설의 초기설치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민간보육시설들에게는 투자한 시설설치비용을 일정부분 국가가 보존해줌으로써 민간시설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보육시설의 시설투자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 혹은 임대료를 ‘시설설치 및 유지비’로서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가 민간자본으로 설립된 시설을 임대

함으로써 ‘정부지원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확대된 시설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기존의 정부지원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과 관리, 감독을 통해 정부지원시설로서의 서비스 수준을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정부의 지원을 받아들임으로써 정부지원시설의 범위로 들어온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관리 및 재무회계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국공립시설과 동일한 수준에서 시행함으로써 정부지원시설로서의 자격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인가시설인 경우 국공립시설과 민간법인 시설간의 보육료 지원에 차이가 없으며 민간시설에는 시설설치 투자분에 대하여 4.0%에서 12.0%의 가산분이 지원되고 있다 (草土文化, 2003).

물론 민간보육시설이 가지고 있는 ‘사적재산’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개인의 소유한 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투입은 명확한 법적근거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 민간시설의 역할과 기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큰 우리나라 보육현장의 특성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을 고려할 때 민간시설에 대한 적절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민간시설에서 제공되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보육의 질 향상

1) 평가인증제를 통한 보육의 질적 수준 관리

이제까지 보육현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은 정부지원시설인 국공립시설을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민간시설의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점검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어 왔다.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는 방안으로서 최근에 도입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시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민간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행정력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서비스 수준을 점검, 관리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평가인증제가 보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증제에 대한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선되어야 하나 현재 평가인증제가 도입된 시점에서 민간 시설들의 참여는 매우 저조하다. 본 조사에서도 평가인증제에 대해 74%가 평가인증제 신청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나 신청시기에 대해서는 90%이상이 신청시기를 늦추거나 향후 상황을 관망한 후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인증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인증신청 시설에 대한 소요비용 보조, 시설개보수비의 우선적인 지원 등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인센티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뿐 아니라 서비스의 이용자인 보육아동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필요하다. 평가인증제의 결과가 실제로 부모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시설의 입장에서 인증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 보육시설의 잠재적 수요자인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대한 홍보는 민간시설의 평가인증제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평가인증제와 더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 ‘보육내용’에 대한 점검과 지도이다. 평가인증을 통한 보육의 질 평가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평가인증제가 보육의 질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육아동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학대’와 같은 문제들은 평가인증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처럼 보육현장에서 매일매일 아동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보육활동, 보육내용을 ‘성인 중심’이 아닌 보육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아동 중심’으로

점점하고 지도할 수 있어야 효과적인 질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평가인 증제를 보완할 수 있는 보육내용 지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2) 보수교육 내실화 및 대체교사 지원체계 확립

보육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보육교사의 전문성이라는 점에 대해 많은 실무자, 전문가들은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수교육 실시는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롭게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정비된 보수교육제도는 보수교육 과정을 세분화하고 교육기간을 강화하였으며 보수교육 소요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보수교육 활성화의 큰 장애요인이었던 대체교사 지원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보육현장에서는 재정문제와는 별개로 적절한 대체교사를 확보하지 못해서 보수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보육정보센터에서 대체교사 인력 풀을 제공하고 있으나 일일고용의 형태로는 책임성이나 전문성을 가진 적절한 보육교사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대체교사 수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보육정보센터의 인력풀을 활성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대체교사의 경력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보육정보센터에서 일정수의 보육교사를 고용하여 필요한 기관에 파견하거나 보육교사 인턴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수교육이 실제로 보육교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개설된 보수교육프로그램은 횟수와 장소가 지역에 따라 제한적이어서 보수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

은 실정이다. 보육교사들이 보수교육에 참가하는 시간이 용이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현재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수교육 위탁기관의 유형을 다양화하여 지역보육정보센터와 지역사회 전문기관, 보육관련 협의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에의 접근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유희정, 김미화, 2004).

3. 보육행정 및 전달체계 개선

1) 보육정보센터 확충 및 기능 확대

자치구 단위의 보육정보센터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육정보센터의 고유의 기능 중의 하나인 보육시설지원기능을 확대하여 보육시설전문조력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내의 보육요구와 보육자원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보육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보육정보센터의 보육시설지원기능과 지역사회네트워크기능의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보육자원 공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규모 민간보육시설의 제한적인 보육자원을 보완함으로써 민간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효과적인 방식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먼저 몇 개의 구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후 효과적인 방식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물품이나 보육교구의 공동구매, 공동수업, 특별활동 교사 순회 프로그램, 장애아동 특수교사 순회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의 보육자원 공동확보 및 활용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일부 보육정보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는 보육교재, 교구의 대여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민간보육시설의 보육자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일부 구차원이나 연합회 차원에서 공동구매나 공동행사 등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는 높은 편이다. 지역사회 보육공동체의 구심점으로서의 보육정보센터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우선적으로 몇 개의 자치구 단위의 보육정보센터를 선정하여 지역사회보육네트워크 기능과 보육시설 전문조력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그 효과를 검증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지역보육네트워크 구성

보육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성,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보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현재 보육시설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보육자원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지역보육공동체 구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자치센터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의 하나는 센터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센터의 공간을 직접적으로 보육시설로 활용하거나 교사교육, 공동수업 등 지역사회 내의 보육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보육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육예산 결정, 평가 인증 과정 등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 지역사회 내의 욕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의 민간시설의 경우 개별적인 보육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보육공동체가 보육시설에 대한 감시, 지원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보육공동체는 지역사회 내의 활용 가능한 보육자원을 찾아내고 활용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특히 민간보육시

설의 부족한 보육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노인인력을 활용하거나 지역사회 내의 종교 시설, 사회단체 등이 가진 인적, 물적 자원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보육으로 보육의 개념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참 고 문 헌

기획예산처, 2005년 보육예산안

김승권 외, 2000, 「영유아 보육서비스 실태분석과 종합대책 수립연구」,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박금희, 2003, “보육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 「보육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 토
론회 자료, 보육단체연대회의

서문희, 2004, “최근 보육 제도 및 정책의 변화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제97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문희·이연희·임유경, 2003, 「보육료 지원제도 개선 방안」, 보건복지부·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서문희·이상현·임유경, 2000,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문희·임유경·박애리, 2002, 「200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 보건복지부·한
국보건사회연구원

서문희·김미숙·박세경·최은영·임정기, 2004, 「여성 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보육
환경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문희·백선희, 2004, 「보육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대안 연구」, 여성부

서울시, 2004, 2005, 보육통계

서울시, 2005, 보육사업안내

서울시 내부자료

유희정, 1998,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유희정·강정희, 2002, 「영유아보육서비스 다양화 및 보육인프라 확충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유희정 · 강정희, 2003,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유희정 외, 2004,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및 직무실태 분석」, 한국여성개발원
- 여성개발원 · 여성부(2001), 영국.프랑스의 보육시설 탐방 결과 보고서
- 여성부, 2005, 2004년 보육시설 실태조사 보고
- 여성부, 2004, “05년 보육예산안” 설명자료(2004. 9. 24 보도자료)
- 여성부, 2004년 보육통계
- 여성부, 「2005년도 보육사업안내」
- 여성가족부, 2005년 보육통계
- 이상헌, 1998, “보육서비스 재정에 관한 평가”, 「보건복지포럼」 제27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정심, 2004, “보육정책 발전방향”, 「보육, 우리 아동이 그 중심에 있는가?」, 2004 보육지원교수협의회 포럼 자료
- 정민자, 2002, “공보육을 위한 영유아보육사업의 재정 추계”, 2002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발표 자료집, 한국영유아보육학회
- 정병호 · 정진경 · 이부미, 2003, 「‘보육법인’ 모형 개발 연구」,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 여성부
- 한국여성개발원, 1990, 「도시영세지역 탁아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 2004,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범운영 공청회 자료”
-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03, 2003년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조세연구원, 2005, 「표준보육 · 교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 현진권, 2004, “보육재정의 확충과 시장규제”, 「재정포럼」 제98호, 조세연구원

<http://children.seoul.go.kr/>

<http://www.mogef.go.kr/>

<http://www.educare.or.kr/>

<http://www.nso.go.kr/>

부록

< 부록 1 : 조사표(시설장용) >

조사표 번호

--	--	--	--

서울시 민간보육시설 조사표 (시설장용)

서울시 정책연구기관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서울시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에서는 **서울시의 민간보육시설의 운영 및 보육서비스 실태를 파악**하여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는 익명으로 실시되며, 조사에 참여해 주신 개인이나 보육시설에 대한 내용은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조사결과는 통계처리를 거쳐 종합적으로 제시될 것입니다. 서울시 민간보육시설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조사방법

본 조사는 약 10-1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기타의 () 속에 자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을 마친 설문지는 반송봉투를 이용하여 **7월 30일까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김선자 (tel: 02-2149-1277, fax: 02-2149-1289, sunjakm@sdi.re.kr)

I. 응답자 일반 사항

1. 다음은 일반적 사항을 묻는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V표 해 주십시오.

1-1. 성 별	1) 여자	2) 남자
1-2. 연 령	만 _____ 세	
1-3. 최종학력	1) 고졸 2) 전문대학 졸(3년제 이하) 3) 대학교 재학(4년제 이상) 4) 대학교 졸(4년제 이상) 5) 대학원 재학 6) 대학원 졸	
1-4. 최종학교 전 공	1) 보육학 2) 유아교육학 3) 사회복지학 4) 아동(복지)학 5) 가정(관리)학 6) 간호학 7) 교육학 8) 영양학 9) 특수교육학 10) 기타()	
1-5. 자 격	1) 1급 보육교사(1, 2급 유치원 정교사 포함) 2) 2급 보육교사(보육교사교육원 수료자) 3) 1, 2급 유치원 정교사(보육교사 자격 미소지자) 4) 특수교사 5) 간호사 또는 양호교사(1급 보육교사) 6) 자격 없음 7) 기타()	
1-6. 자격 취득 경 로	1) 보육교사교육원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3)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 4) 대학원 관련학과 졸업 5) 기타 ()	
1-7. 경 력	1) 총 보육시설 근무 경력 ()년 ()개월 2) 시설장 경력 ()년 ()개월	

II. 보육시설 현황

2. 다음은 보육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V표 해 주십시오.

2-1. 설립년도	_____ 년
2-2. 보육대상별 시설유형	1) 일반 보육시설 2) 영아 전담 3) 장애아 전담 4) 장애아 통합 5) 방과후 전담 6) 방과후 통합 ※ 일반보육시설은 장애아·방과후 아동이 없는 경우임
2-3. 보육시설 주변의 생활수준	1) 상류층 2) 중상류층 3) 중류층 4) 중하류층 5) 저소득층
2-4. 건물 형태	1) 단독건물 2) 아파트 3) 주택 4) 상가건물 5) 종교단체 건물 6) 기타 ()
2-5. 임대 여부	1) 자가(임대 아님) 2) 건물전체 임대(전세) 3) 건물전체 임대(월세) 4) 건물일부 임대(전세) 5) 건물일부 임대(월세) 6) 아파트 임대(전세) 7) 아파트 임대(월세) 8) 기타 ()
2-6. 임대일 경우 임대료	전세인 경우: _____ 만원 월세인 경우: 월 _____ 만원

2-7. 보육실 층수	1) (반)지하 4) 3층	2) 1층 5) 4층 이상	3) 2층
2-8. 놀이터 유무	1) 실내놀이터 4) 인근 놀이터 활용	2) 실외놀이터 5) 활용가능한 놀이터 없음	3) 옥상놀이터
2-9. 2층 이상 보육실 비상대피시설 유무	1) 비상계단 3) 영유아용 미끄럼대(철제 소재) 4) 경사강하식 구조대, 완강기 등 기타 대피시설	2) 영유아용 미끄럼대(FRP 소재) 5) 미설치	
2-10. 시설동시 운영여부	1) 어린이집 4) 학원	2) 유치원 5) 선교원	3) 놀이방 6) 없음
2-11. 시설장과 대표자 와의 일치여부	1) 대표자가 시설장임 2) 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름		
2-12. 보험가입 유형	귀 시설은 다음 중 어떤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교 사: 1) 국민연금 2) 산재보험 3) 고용보험 4) 건강보험 5) 없음 6) 기타 ()		
	영유아: 1) 영유아관련종합보험 2) 없음 3) 기타 ()		
	시 설: 1) 학교배상책임보험 2) 화재보험 3) 가스보험 4) 차량보험 5) 없음 6) 기타 ()		

3. 귀 시설의 아동 현원과 정원을 적어주십시오.

아동정원: _____명 아동현원: _____명

4. 귀 시설에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의 수를 적어주십시오.

1) 차등보육료 지원	1층: _____명	2)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_____명
	2층: _____명	3)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_____명
	3층: _____명	
	4층: _____명	
		4)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_____명

5. 귀 시설의 종사자 수를 적어주십시오.

1) 보육교사 _____명	7) 치료사 _____명
2) 취사부 _____명	8) 운전기사 _____명
3) 영양사 _____명	9) 사무원 _____명
4) 간호사 _____명	10) 관리인력 _____명
5) 간호조무사 _____명	11) 기타인력 _____명
6) 특수교사 _____명	

6. 귀 시설에서는 종사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1) 한다 2) 하지 않는다 3) 해당없음

※ 초과근무수당은 종사자 1인의 실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지급하는 수당임

7. 귀 시설의 보육교사 월평균 보수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공제전 금액)

1) 60만원 미만	_____ 명	6) 140~159만원 이하	_____ 명
2) 60~79만원 이하	_____ 명	7) 160~179만원 이하	_____ 명
3) 80~99만원 이하	_____ 명	8) 180~199만원 이하	_____ 명
4) 100~119만원 이하	_____ 명	9) 200만원 이상	_____ 명
5) 120~139만원 이하	_____ 명		

8. 다음의 영양·건강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잘 이루어 지고 있다	다소 이루어지고 있다	다소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1) 급간식의 영양과 조리형태는 영유아에게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2) 영유아의 발달에 필요한 간식이 적절하게 제공된다	①	②	③	④
3) 보육교사와 영유아는 위생과 청결을 위해 자주 손을 씻는다	①	②	③	④
4) 영유아 이닦기를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5) 놀이감을 자주 세척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①	②	③	④
6) 전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보호자에게 알린다	①	②	③	④

9.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1) 재원아 전체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
- 2) 특정 아동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 (예: 저소득아동)
- 3) 개별적으로 검진 후 결과만 받음
- 4) 건강검진 실시하지 않음
- 5) 기타 ()

III. 시설운영

10. 시설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

- 1) 영유아
- 2) 보육교사
- 3) 부모
- 4) 이사장
- 5) 시설장
- 6) 기타 ()

11. 시설 운영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

- 1) 원아관리
- 2) 종사자 관리
- 3) 재정관리
- 4) 부모 및 지역사회 관계
- 5) 사무관리
- 6) 보육프로그램
- 7) 안전·건강·영양
- 8) 기타 ()

12. 시설 운영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 | | |
|---------------------------------|----------------|--------------|
| 1) 원아모집 문제 | 2) 안전문제 | 3) 급간식 문제 |
| 4) 보육 프로그램 관련문제 | 5) 시설설비 문제 | 6) 재정 관련 문제 |
| 7) 행정 관련 문제 | 8) 종사자 채용 및 관리 | 9) 학부모 관련 문제 |
| 10) 기타 () | | |

13. 귀 시설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 | | |
|--------------------|--------------------------------|------------------|
| 1) 시설·설비 개선 | 2) 보육프로그램 개발 | 3) 교재교구, 기자재 구입 |
| 4) 부모 교육 | 5) 종사자 보수교육 | 6) 교사 급여 및 처우 개선 |
| 7)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줄이기 | 8) 기타 () | |

14.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떤 재정적 지원을 해 주기를 가장 바라고 계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 | |
|--------------------------------|----------------------|
| 1) 보육환경개선비 | 2) 종사자 인건비 |
| 3) 교재교구, 기자재 구입비 | 4) 프로그램 운영비(현장학습비 등) |
| 5) 기타 운영비(급간식비, 차량유지비 등) | 6) 아동별 보육료 지원비 |
| 7) 기타 () | |

15.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행정적 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 | |
|-------------------------------------|--------------|
| 1) 지도감독의 다양화 | 2) 보육행정의 전산화 |
| 3) 교사보수교육 기회 확대 | 4) 학부모 교육 |
| 5) 유용한 정보, 자료 제공(운영관리 소프트웨어/교수자료 등) | |
| 6) 기타 () | |

16. 귀 시설에서는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나 지역주민과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의 무료 건강검진, 사립 동물병원 견학, 동네 놀이터 이용 등)

- | | |
|---------------|----------------|
| 1) 잘 이루어지고 있다 | 2) 다소 이루어지고 있다 |
| 3) 다소 부족하다 | 4) 매우 부족하다 |

16-1. 있다면, 어떤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16-2. 지역 내 어떤 시설과 연계가 가장 많습니까? (한가지만 선택)

- | | |
|-------------------------|--------------------------------|
| 1) 보건소 | 2) 소방서 |
| 3) 파출소 | 4) 도서관 |
| 5) 문화시설(박물관, 공연장, 공원 등) | 6) 민간시설이나 민간사업체 |
| 7) 연계 없음 | 8) 기타 () |

17. 지역 내 다른 보육시설들과 다음의 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실시여부		희망여부	
	실시함	실시하지 않음	희망함	희망하지 않음
1) 공동구매				
2) 공동행사(소풍·체육대회 등)				
3) 공동수업				
4) 공동 급·간식 제공				
5) 기타()				

18. 보육정보센터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고 계십니까?

- 1) 자주 이용한다
2) 가끔 이용한다
3) 거의 이용 안 한다
4) 이용한 적 없다



18-1. 보육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육 관련 정보가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1) 매우 도움이 된다
2) 대체로 도움이 된다
3)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9. 보육정보센터에서 수행하기를 희망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

- | | |
|--------------------------------|-------------------------|
| 1) 보육시설 관련 정보 제공 | 2) 보육관련 DB 구축 |
| 3)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교구 지원 | 4)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간의 연계망 구축 |
| 5) 보육교사 보수교육 실시 | 6) 보육교사 자격 및 경력 관리 |
| 7) 대체교사 수급 관리 | 8) 학부모 정보 제공 |
| 9) 기타 () | |

IV. 재정현황

20. 귀 시설에서는 보육료를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시·도 지사가 정한 상한액과 비교)

- 1) 기준으로 받고 있다
- 2) 기준보다 다소 많이 받고 있다

3) 기준보다 적게 받고 있다 →

20-1. 보육료를 기준보다 적게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보육시설간의 경쟁 때문에
- 2) 부모들이 비싸다고 생각해서
- 3) 부모들이 정상 보육료를 낼 형편이 못 되어서
- 4) 기타 ()

21. 귀 시설에서는 보육시설 이용시간에 따라 보육료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 1) 동일하게 받고 있다
- 2) 반일제의 경우 종일제보다 적게 받고 있다
- 3) 기준시간 연장 시 추가로 받고 있다.

22. 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닌 일반 아동의 경우, 보육료를 얼마 받고 계십니까?

	종일제	반일제
1) 만 2세 미만	_____ 원	_____ 원
2) 만 2세	_____ 원	_____ 원
3) 만 3세 이상	_____ 원	_____ 원

23. 2004년 지난 1년간 보육료를 내지 않은 아동이 있습니까?

1) 예 →

23-1. 보육료를 내지 않은 아동은 총 몇 명입니까?

영아: _____ 명 유아: _____ 명

23-2. 1년간 미납 총액은 얼마입니까? 총 _____ 만원

2) 아니오

24. 2004년도 1년간 실제로 수납한 총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항 목	금 액
부모 부담금	연간 _____ 만원
정부 지원금	연간 _____ 만원
기타 ()	연간 _____ 만원
총 계	연간 _____ 만원

25. 2004년도 1년간 실제로 지출한 총 지출은 얼마나 됩니까?

항 목	금 액
인건비	연간 _____만원
시설 운영비	연간 _____만원
기타 ()	연간 _____만원
총 계	연간 _____만원

26. 귀 시설이 임대료 및 초기투자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항 목	금 액
초기투자비용	부지 구입비용 _____만원
	시설 설치비용 _____만원 (건물구입비, 건축비 등 포함)
총 부채(현재 기준)	_____만원
부채에 대한 월 이자	월 _____만원

V. 보육정책

27. 보육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협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는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1) 설치하였다

2) 설치하고 있지 않다



- 27-1. 향후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 1) 즉시 설치하겠다
 - 2) 몇 년 내에 설치하겠다
 - 3) 설치하지 않겠다
 - 4) 모르겠다

28.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도가 실시되면 신청하시겠습니까?

1) 신청하겠다

2) 신청하지 않겠다.



- 28-1. 보육시설 평가 인증 점검을 받으신다면 언제 하시겠습니까?
- 1) 즉시 하겠다
 - 2) 1년 후 신청하겠다
 - 3) 2년 후 신청하겠다
 - 4) 3년 후 신청하겠다
 - 5) 기타()

29. 보육재정 지원 방식을 국공립 시설에 지원하던 방식을 줄이고 아동별 지원(보육료)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3) 잘 모르겠다

30. 보육료를 자율화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3) 잘 모르겠다

< 부록 2 : 조사표(보육교사용) >

조사표 번호

--	--	--	--

서울시 민간보육시설 조사표 (보육교사용)

서울시 정책연구기관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서울시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에서는 **서울시의 민간보육시설의 운영 및 보육서비스 실태를 파악**하여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는 익명으로 실시되며, 조사에 참여해 주신 개인이나 보육시설에 대한 내용은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조사결과는 통계처리를 거쳐 종합적으로 제시될 것입니다. 서울시 민간보육시설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조사방법

본 조사는 약 10-1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기타의 () 속에 자세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을 마친 설문지는 반송봉투를 이용하여 **7월 30일까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김선자 (tel: 02-2149-1277, fax: 02-2149-1289, sunjakm@sdi.re.kr)

I. 응답자 일반 사항

1. 다음은 일반적 사항을 묻는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V표 해 주십시오.

1-1. 성 별	1) 여자 2) 남자
1-2. 연 령	만 _____ 세
1-3. 최종학력	1) 고졸 2) 전문대학 졸(3년제 이하) 3) 대학교 재학(4년제 이상) 4) 대학교 졸(4년제 이상) 5) 대학원 재학 6) 대학원 졸
1-4. 최종학교 전 공	1) 보육학 2) 유아교육학 3) 사회복지학 4) 아동(복지)학 5) 가정(관리)학 6) 간호학 7) 교육학 8) 영양학 9) 특수교육학 10) 기타 ()
1-5. 자 격	1) 1급 보육교사(1, 2급 유치원 정교사 포함) 2) 2급 보육교사(보육교사교육원 수료자) 3) 1, 2급 유치원 정교사(보육교사 자격 미소지자) 4) 특수교사 5) 간호사 또는 양호교사(1급 보육교사) 6) 자격 없음 7) 기타 ()
1-6. 자격취득 경 로	1) 보육교사교육원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3)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 4) 대학원 관련학과 졸업 5) 기타 ()
1-7. 경 력	1) 총 보육시설 근무 경력 _____ 년 _____ 개월 2) 현 보육시설 근무 경력 _____ 년 _____ 개월

II. 근무환경

2. 현재 선생님께서 담당하고 있는 교실에 있는 교사수와 영유아수는 몇 명입니까? (본인포함)

총 교사수		총 영유아수	
일반교사	_____ 명	일반아	_____ 명
특수교사	_____ 명	장애아	_____ 명
보조교사	_____ 명		

2-1. 현재 담당하시는 교실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적합하다 2) 적합하지 않다

2-2. 정교사 이외에 보조교사가 있습니까?

1) 있다 —> 있다면 몇 명입니까? _____ 명

2) 없다

6. 귀 시설에는 교사의 근무시간, 보수, 휴가, 상벌 등을 다룬 복무규정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3) 모르겠다

7. 임용시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서면계약이나 구두계약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

7-1. 하신 적이 있다면 그 종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 1) 결혼이나 임신후 퇴직하겠다는 약속
2) 부당한 출퇴근 시간의 강요
3) 종교 문제
4) 중도 퇴직금지
5)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했거나 적게 주기로 함
6) 일정기간 동안 급여의 일부분만 받기로 함
7) 근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과실에 대해 보육교사가
부당하게 배상의 의무를 지도록 함
8) 기타 ()

2) 없다

8. 보육교사의 복지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1) 보수현실화 2) 초과근무수당 지급
3) 보수교육·출산휴가 등의 경우 대체교사 지원 4) 근로시간 단축
5) 보수교육 강화 6) 법정 휴가기간 준수
7) 기타 ()

9. 보육교사로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점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기타인 경우에는 옆의 빈칸에 적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1) 장시간 근무 2) 업무량에 비해 낮은 임금
3) 교사간 관계의 어려움 4) 시설장과 관계의 어려움
5) 보육교사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6) 학부모와의 관계의 어려움
7) 교사에 대한 자격관리의 미흡 8) 교사로서 전문성 향상 기회 부족
9) 지역사회와의 관계 10) 보육프로그램 준비 및 운영
11) 기타 ()

IV. 교사 교육

10. 연수나 보수교육을 받을 때 대체 교사를 활용하십니까?

- 1) 채용한다 2) 간혹 채용한다 3) 채용하지 않는다

구 분		기회유무			도움정도		
		있다	없다	매우 도움	약간 도움	별로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1) 보수교육이나 승급교육		①	②	①	②	③	④
2) 보수, 승급교육을 제외한 일반 강습회나 세미나		①	②	①	②	③	④
3) 보육시설내 자율 연수	① 아동 관찰일지 쓰고 토론 모임	①	②	①	②	③	④
	② 강사 초빙이나 동료교사를 통한 교육	①	②	①	②	③	④
	③ 전문서적 읽거나 세미나 참석 후 토론	①	②	①	②	③	④

1) 참가하지 않는다 2) 2년에 1회 3) 1년에 1회
4) 1년에 2회 5) 1년에 3회 이상

- 1)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 2) 대체교사를 구하기 어려워서
- 3) 연수내용이 맘에 들지 않아서
- 4) 일상적인 보육활동으로 너무 피곤해서
- 5) 낮 시간에 실시되는 교사연수에 참여할 시간을 내기 힘들므로
- 6) 교사 자신의 육아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 7) 기타 ()

1순위 () 2순위 () 3순위 ()

1) 보육정책	2) 세계의 보육동향
3) 보육시설 운영방법	4) 부모교육 및 상담
5) 영유아교수방법	6) 건강 및 영양관리
7) 안전교육	8) 환경교육
9) 영유아특별활동	10) 문제행동지도
11) 영아보육	12) 방과후 보육
13) 장애아 보육	14) 견학
15) 야간·24시간 운영	16) 기타 ()

V.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15. 민간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역		우수하다	보통이다	낮은편이다	모르겠다
1) 보육환경	보육시설환경	①	②	③	④
	보육활동자료	①	②	③	④
2) 운영관리	시설운영관리	①	②	③	④
	보육인력	①	②	③	④
3) 보육과정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	①	②	③	④
	보육활동	①	②	③	④
4) 상호작용	일상적 양육	①	②	③	④
	교사의 상호작용	①	②	③	④
5) 건강과 영양	청결과 위생	①	②	③	④
	질병관리	①	②	③	④
	급식과 간식	①	②	③	④
6) 안전	실내외 시설의 안전	①	②	③	④
	영유아의 안전보호	①	②	③	④
7)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가족과의 협력	①	②	③	④
	지역사회와의 협조	①	②	③	④

VI. 업무만족도

16. 다음은 보육교사로서 느끼는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에 V 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1) 급여수준	①	②	③	④
2) 휴가, 퇴직 등 복리후생 수준	①	②	③	④
3) 재교육 등 전문성 지원 수준	①	②	③	④
4) 근무시간	①	②	③	④
5) 담당 업무	①	②	③	④
6) 직업적 전망	①	②	③	④
7) 사회적 인정	①	②	③	④
8) 교사를 위한 물리적(근무)환경	①	②	③	④

1) 매우 보람을 느낀다 2) 다소 보람을 느낀다
3) 별로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 4) 전혀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

- 1) 자주 생각한다
- 2) 가끔 생각한다

1순위 () 2순위 ()

- 1) 적성에 맞지 않아서
- 2) 근무량에 비해 봉급이 너무 낮아서
- 3) 충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느끼고 있어서
- 4) 근무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휴가, 근무시간, 재교육의 기회 등)
- 5)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아서
- 6) 인간관계가 어려워서
- 7) 개인적인 문제로(결혼, 출산, 육아 등)
- 8)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해서
- 9) 기타 ()

3) 생각한 적 없다

- 1) 적성에 맞아서
- 2) 보육에 대한 보람과 사명감을 느끼기 때문에
- 3) 다른 일자리 찾기 어려워서
- 4)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에
- 5) 직장동료와의 인간관계가 만족스러워서
- 6) 근무환경이 만족스러워서
- 7) 기타 (

Improving Service Quality in Private Child Care Centers

<u>Project Number</u>	<u>SDI-05-R-36</u>
<u>Research Staff</u>	<u>Sunja Kim (in Charge)</u> <u>Chan-Dong Kim</u> <u>Juyoun Yang</u>

Since 1990, child care systems in Korea have been greatly expanded, which however have been largely focused on quantitative expansion rather than qualitative one due to the shortage of financial support and effective supervision from the central government. Recently qualitative service level enhancement of child care systems has been given salience. Also many changes in child care policies occur with the revision of Child Care Act in 2004 and transfer of child care service to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Gradual public service expansion including short and medium term support and intervention can minimize the side effects caused by transferring child care system from the private sector in order to enhance qualitative child care service based on strengthening public service responsibility for child care. Particularly qualitative enhancement could not be achieved without the service enhancement of private child care centers which occupy 89% of total child care centers in Korea. Considering this, it is urgent to provide appropriate support and direction for the private child care centers.

In case of Seoul, various support policies for the private centers concentrated on qualitative service enhancement have been provided, but for the further effective support and direction for the private child care centers we need to understand precise actual conditions. In this study problems that obstruct the qualitative service enhancement for the private child care centers have been examined through analyzing their management and service conditions. Based on this analysis, qualitative service enhancement policies for the private child care centers are suggested.

Surveys are conducted for the heads of the private centers and teachers to find out the management conditions and teachers working conditions. Also depth interview for the heads of private child care centers and public service personnel are carried in order to generate policy suggestions for service enhancement of the private child care centers.

The factors obstructing the service level enhancement of the private child care centers resulted in actual condition survey are summarized as ① inappropriate child care environment which can not provide stable child care services, ② difficulties to guarantee stable financial management, ③ inferior work environment for the child care teachers over work burden, ④ insufficient child care program no standardized and specialized child care program. In order to improve service quality in private care centers,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are provided.

- Effective financial support for the private child care centers
- Actualization of the standardized child care cost for the private child care centers
- Quality control through accreditation system of child care facilities
- Establishment of continuing education facilities and alternative teacher support system
- Support for the child care information center and expansion of its role.
- Establishment of community child care networks and utilization of the community resources for child care.

Table of Contents

Summary and Policy Recommendations

Chapter 1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Purpose
2. Scope and Method

Chapter 2 Background and Major Issues

1. Private Child Care Services in Korea
2. Current Issues in Private Child Care Services
3. Determining Factors of Child Care Quality

Chapter 3 Child Care Systems in Seoul

1. Child Care Facilities
2. Child Care Policies and Supports

Chapter 4 Characteristics of Private Child Care Centers

1. Overview
2. Characteristics of Private Child Care Centers
3. Difficulties and Demands of Private Child Care Center

Chapter 5 Policy Suggestions For Improving Service Qualities in Private Child Care Center

시정연구 2005-R-36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 방안 연구

발행인 강만수

발행일 2005년 10월 31일

발행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37-07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391번지

전화 (02)2149-1277 팩스 (02)2149-1289

값 8000원 ISBN 89-8052-431-5-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속합니다.